

2001년 가을호

언론중재



정기세미나

법정에 선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기 고

언론소송의 실무

연구논문

의사공시권에 대한 규범주의적 관점

언론중재

2001. 가을

차 례



계간/2001년 가을호 • 제21권 • 제3호/등록번호
 인쇄/2001년 9월 25일 • 발행/2001년 9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김 행 술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정화인쇄주식회사

정기서미

법정에 선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5 •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 윤재운
- 33 •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진원
- 46 • 종합토론

기 고

55 • 언론소송의 실무 • 함석천

연구

75 • 의사공시권에 대한 규범주의적 관점 • 이진구

언론보도의

94 •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인용과
 인격권 침해 • 김성규

위원칼럼

100 • 취재의 한계 - 놓쳐버린 이야기들 • 신동식

해외동향

102

자 료

- 108 • 언론중재신청사례
- 130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48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8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평

162 • 언론소송과 판결

위원회소

166

언론법제정

168

지상중

170 • On-Line 중재상담실

* 본지는 집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1년도 정기세미나

법정에 선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1. 8. 30 ~ 9. 1

언론중재위원회



때 : 2001. 8. 30(목)~9. 1(토)
 곳 : 호텔 현대(강릉 경포대)

· 발표자 (2)

윤재운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진원 (중앙일보 기자)

이중구 (경남신문 사회부 차장)
 이준삼 (한국방송 사회1부 차장)
 이희용 (연합뉴스 여론매체부 차장)
 정동우 (동아일보 사회부장 대우)
 최동열 (강원도민일보 영동본부 취재부장)
 황석순 (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김종식 (강원 중재위원)
 지규현 (강원 중재위원)
 우종인 (충북 중재위원)
 장공자 (충북 중재위원)
 임경숙 (경남 중재위원)

· 사회자 (1)

최선열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기타 (2)

심용식 (시대일보 사회부 서울취재팀장)
 강성규 (시대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사 (18)

김동찬 (강릉MBC 보도부장)
 김현철 (서울방송 사건팀장)
 박영순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박창근 (매일신문 논설위원)
 송정로 (인천일보 사회부장)
 신문석 (한국일보 법조팀장)
 안봉호 (전북일보 사회부장)
 왕정식 (경인일보 사회부 기자)
 우승룡 (강원일보 영동 취재부장)
 이기석 (대한매일 편집부국장)
 이익훈 (대전일보 사회부 차장)
 이정호 (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 중재위원 (17)

박영식 (위원장)
 송정재 (부위원장)
 김해도 (서울 중재위원)
 송선무 (서울 중재위원)
 최광일 (서울 중재위원)
 양삼승 (서울 중재위원)
 신동식 (서울 중재위원)
 김재덕 (서울 중재위원)
 박기성 (대구 중재위원)
 허광욱 (광주 중재위원)
 조균상 (대전 중재위원)
 한영달 (강원 중재위원)

· 사무처 (11)

이병훈 (사무총장)
 노항기 (전문위원)
 김동호 (전문위원)
 황정근 (중재심의1팀장)
 권우동 (조사연구팀장)
 정희성 (조사연구팀 차장)

외 직원 5명
 총 51명

〈제1주제〉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I. 글을 시작하며

1. 언론피해분쟁의 새로운 국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며, 즉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언론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 개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었고 언론피해분쟁의 형태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언론중재신청과 소송제기 등 피해분쟁이 급증하고 있어서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방향과 취재기법상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보인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언론피해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의 광속(光速)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통신, 취재, 편집 등 언론매체의 장비에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한편, 사회 기준질서와 가치관의 급격한 해체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정보의 가치도 무형적 재산으로서 중요시되고 있고, 분쟁에서도 단순한 정보의 오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전보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언론기관이 정보전달의 주체로서 엄청난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창되어 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언론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아울러 언론기관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취재보도의 신속함, 정보의 질, 정보의 양을 다투게 되면서 그 차이의 영향이 즉각 나타나고 경쟁에 따른 무리한 정보제공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성이 어느 때

윤 재 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졸업
- 마산지법 거창지원장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 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중재위원

보다도 높아진 형편이다.

셋째,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 등의 권리의식이 급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나 음성권 등 새로운 권리개념이 대두되는 한편,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즉시적인 권리행사를 행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과거에 높기만 하였던 언론장벽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도도 개인으로서는 큰 피해로 여기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 언론기관, 피해자의 세 방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서 언론피해분쟁의 바람직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2. 이 글의 전개방향

필자는 지난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 중재부에서 중재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언론중재기일에 직접 심리한 사례 중 전형적인 것을 선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언론보도에 관한 주요 관례나 이론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각종 간행물에서 이미 충분히 소개, 정리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제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으로 국한시켰고 관련된 이론소개는 꼭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하였다.

또한 일선 언론인들을 이 글의 주요 독자로 전제하고, 취재관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덧붙여 서울지방법원 언론사건 전담 합의재판부(민사 25부)의 최근 판

결을 분석하여 관련부분에서 소개하였다. 대법원판결 보다 사안이 훨씬 생생하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II. 언론보도의 침해법익: 인격권

1. 인격권의 개념

언론분쟁을 한 마디로 줄인다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앞서 본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격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격권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현실적 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사회의 모든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졌기 때문에 침해법익의 성격과 보호정도에 대한 이해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언론분쟁 판단의 첫 요건으로서 침해법익에 대한 검토가 실무상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찾는다. 또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민법상 불법행위규정,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 등이 인격권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개별적 인격권을 간단히 살펴본다.

2. 명예

최근들어 프라이버시나 음성권 등 새로운 권리 개념이 대두되는 한편,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권리 행사 경향이 높아져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라고 할 것이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보도 시에 특히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이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2항에서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 등을 제외하면 대개가 보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¹⁾

3. 초상권

비주얼 시대, 이미지의 중요성 등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초상권은 보도 내용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갖는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4. 성명권

성명권(Namensrecht)을 인격권의 하나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 실무상 성명권은 명예훼손의 내용 속에 용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독립하여 이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름을 잘못 인용하여 인격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고, 유명 연예인과 섭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출연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데 대하여 성명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5. 음성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말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의 없이 녹음한 전화 통화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 변조 처리 없이 방송하여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²⁾

6. 사생활의 비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부분은 인간적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으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프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 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2)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판결

라이버시의 문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7. 신용

형법 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고도 자본주의사회로 되면서 언론보도에 의한 신용훼손이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신용이란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 경제활동상 사람이나 법인의 채권 이행의무의 성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유형자산에 못지 않은 무형의 자산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신용은 넓은 의미의 명예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인격권과 성질이 다르고, 형법상 신용훼손죄의 보호범위는 재산적 성질 및 명예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므로 명예훼손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법학의 다수설이다.³⁾ 특히 이를 인격권에서 분리된 경제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중시할 때 언론피해법상 인격권의 보호와 다른 독자적인 구제원리를 개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III. 언론분쟁절차의 종류와 기본 요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본적인 분쟁절차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것은 사후적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피해

자가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즉 피해발생, 언론 보도의 위법성,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요건이다.

2. 정정보도청구

민법 764조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정보도청구이다. 그 외에도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소송판결이나 형사판결의 보도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규정은 인격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만에 인정되는 것이다.

3. 금지청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보통 가처분명령 형식으로 신속히 이루어진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즉 고도의 위법성이 있거나 공공이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가해자의 비방목적이 분명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실제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언론 측의 비판과 불만이 특히 높지만 인격권 보호에 필요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운영에서 공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

반론내용의 진실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3) 『주석형법』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p.597 이하

중재신청된 언론보도는 명백한 착오나
일방적인 취재, 사실확인 불충분으로
문제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언론법제 특유의 제도로서 민사상의 피해구제제도인 정정보도청구와 차이가 난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반박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V.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

1. 3가지 사실관계

1) 명백한 착오 사례 : 2001서울중재197

신청인은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 피신청인은 경제일간지.

피신청인은 “케이블TV 평가 제대로 하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블TV 시청률 조사가 표본조사 대상이 적고 오차가 크다면 신청인회사를 포함한 조사기관들이 별도 케이블TV패널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 지상파 방송 조사용 패널에 케이블 TV 시청가구를 추가해 기형적인 패널집단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별도의 케이블 TV 가입가구를 선정하고 10분 이상의 시청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엄격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청인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청률 조사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취재하고 신청인의 조사시스템에 대하여는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타격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

2) 일방적 취재 사례 : 2000서울중재310

스포츠 일간지인 피신청인은 ‘북으로 간 진

돛개 혈통 논란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시 선불한 진돛개들이 순종 진돛개가 아니라는 일부 진돛개 전문가의 주장을 크게 보도하였다. 즉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과 애견협회 심사위원장의 “위 개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진돛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진돛개전람회장 문전출입을 금지시켜야 마땅한 볼골”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으로 간 진돛개에 강한 의심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단지 마지막 부분에 진돛개가 크면 증명될 것이라는 취지의 짤막한 반론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신청인은 정부의 부탁으로 북으로 보낼 진돛개를 직접 선발한 국견협회(國犬協會) 회장이었는데 위 발언자들은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서 진돛개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3) 사실확인 불충분 사례 : 2001서울중재218

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논설위원 칼럼에서 “국사교육, 개혁인가 개악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역사교육 개편안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정부의 역사교육 개편안이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면서 결국 근현대사 교육이 약화된다는 것이 논평의 골자였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 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리 있는 논평이고 흥미할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실관계가 오류라고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논평 중 “고교 국사 교과서를 두 권으로 편찬, 1학년은 조선후기까지 필수로 가르치고 근현대사 부분은 2, 3학년이 선택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거나 배

우지 않아도 된다는 시책이다.”라는 부분이였다. 조사결과 개편안에 따르면 필수과목 국사에서도 근현대사가 포함되고 선택과목 국사에서는 이를 독립과목으로 하여 심화학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담당 논설위원은 일선 교사들로부터 필수과목에서 근현대사가 빠진다는 제보를 받아왔고 칼럼 작성 당시에도 교육부의 고위간부에게 전화로 문의까지 하였으나 정확한 사실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단지 그 간부가 명백한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믿고 논평을 한 것이었다.

2. 중재의 경위

1) 사례 : 중재기일에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가 명확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받아들여도 설득하여 정정보도하기로 중재 성립

2) 사례 : 중재결과 취재기자가 신청인은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사들을 주로 취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돗개 순종 여부를 둘러싸고 진돗개 관련 단체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가 있어서 이러한 취재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진돗개 관련활동에 대한 정정 내용의 보도를 2차례 해주고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였다.

3) 사례 : 중재결과 칼럼 중 문제부분의 착오가 밝혀져 정정보도하기로 중재성립

3. 분석

1) 명예훼손과 위법성조각사유

언론보도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므로 취재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갖기 어려울 때가 많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 대신에 취재원의 신빙성이나 부분적인 물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피해자가 입는 사회적, 심리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매체 자체의 책임도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소송실무에서는 일찍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성과 진실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유추 적용함과 아울러 보도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보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⁴⁾ 이는 언론보도의 공공성과 피해자의 보호 사이에서 양자를 균형 잡게 하는 기능을 하여 왔다.

따라서 명예훼손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하여는 ①보도 내용이 원칙적으로 실제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하다면 내용상 사소한 부분의 착오나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의 기술적 수식으로 인한 변형은 용인된다) ②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의 성격이 신속성을 요하는 것인지가
상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

2) 사실조사의 정도

취재시 사실조사를 어느 정도 하였을 때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문이나 추측 등에 기초하여 취재를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된다면 이는 위법하다. 그 판단 기준은 획일적으로 세울 수는 없고 보도매체의 성격(방송, 일간신문, 잡지 등), 보도의 시간적 한계(속보적 보도, 장기 기획물), 보도의 내용(일반적 사항,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대적 사항), 진실확인의 난이도(전화 등 간단한 확인 가능 여부, 고도의 기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면 보도의 성격이 신속을 요하는가 아닌가가 상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인에 대한 보도와 상당성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반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하였다. 1960. 3.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후원단체에서 뉴욕 타임즈에 남부 지역의 흑인탄압에 항의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문안에 기재된 내용 중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었다. 남부 도시의 시정위원인 설리반이 위 신문을 상대로 공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신문이 거부하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였다. 주 법원은 설리반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리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⁵⁾

“공직자의 공무행위에 대하여는 진실에 반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난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거나, 부주의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언론기관의 명예훼손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의 존재를 명예훼손을 당하는 공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부나 공직자를 비판할 경우 진실성의 입증을 요한다면 언론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비판적 기능이 위축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는데 필요한 숨쉴 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⁶⁾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아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이에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며,⁷⁾ 다만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 악의이론과 상당성이론은 실제 소송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전자는 현실적 악의의 존재를 공직자가 입증해야 함에 반하여 후자는 보도한 언론이 상당성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상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4) 의혹제기

이러한 상당성 판단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5)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법원행정처 간, 『2000년 법조출입기자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p.85에서 재인용

6) 현실적 악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미국법의 경향은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p.31 이하 및 p.105 이하 참조

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것 같다.

이론전개를 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을 하나 소개한다.⁸⁾

공적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의혹제기는 유형으로서 음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다음 항에서 자세히 다루고 아래에서는 위 판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였다.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하여 보도를 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만으로 확정적인 사실의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수집한 자료들 중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보도함으로써 의혹 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언론기관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실 보도만을 요구하고 진실성 입증에 부족하다 하여 책임을 지운다면 언론보도는 질과 양에 있어서 극도로 위축되어 언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 제기도 합리적인 균형을 갖출 경우에는 확정적인 사실 보도와 더불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의혹제기도 확정적 사실 보도 못지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허용범위와 조건도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강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

실을 암시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 된다. 즉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증거가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문제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사실보도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그 내용에 있어 진실하거나 언론기관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문제기보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다면 이는 언론기관이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실 자체를 보도한 경우와 그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과 같게 되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므로 의혹제기시의 증거수집은 확정사실보도의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가 단순히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강조하는 등으로 그 상반되는 사실을 암시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 보도로 보아 그에 따른 위법성 조각 요건을 따져야 함은 당연하다).

5) 이 사건들의 경우

앞서 예시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건은 취재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자가 있음에도 한쪽에만 치우쳐 취재함으로써 취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사건은 필자가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하였으나 수집한 자료에 뚜렷한 반대사실을 확보할

8) 서울지방법원 2001. 7. 25.선고, 2000가합51563 이는 언론사건 전문재판부(민사25부)의 판결이다.

의혹제기보도도 피해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최대한 보호되어야

수 없어서 그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화통화만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경솔하다. 최소한도 교과서개편내용에 대한 기본서류 정도는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4. 유사 참고사례

1)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1) 국세청장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 보도자료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보도기관의 책임이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선고, 91가합43911 판결).

(2)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사건을 다룬 방송 드라마는 시간이 경과되어 진실 여부 확인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의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조사보고서 등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2. 27.선고, 97다19038판결).

(3) 장애자들이 회비착복을 이유로 수사를 요구하며 농성하는 현장에서 장애자들의 주장을 듣고, 경찰관에게서도 장애자들의 진술을 들은 다음 착복혐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장애자들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1.선고, 82가합 4783판결).

2)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1) 월간잡지사가 악덕변호사로 표현하는 수기 형태의 글을 실은 경우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8.

10. 11.선고, 85다카29판결)

(2) 실명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서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않은 채 불명예스러운 내용의 드라마를 방송한 경우(대법원 1998. 5. 8.선고, 97다34563판결)

(3) “피해자가 신고 없이 사슴축사를 신축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제보자인 동네 이장의 말만 듣고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피해자의 상관인 면장이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기사 작성한 경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판결)

V. 범죄보도의 상당성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342 내지 344

피신청인 신문들은 놀이방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놀이방 원생인 3세의 유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하여 발바닥을 키퍼스로 45차례 찔렀고 이 일이 드러나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기사는 신청인을 “박모 씨(29, 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로 표시하였고 그 중 한 신문은 신청인이 경찰조사에서 “같이 일하던 보육교사 한 명이 한 달 전 그만뒀 일손이 부족한 데다 아이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화김에 실수했다”라고 신청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일으켰으나 수사한 결과 위 유아가 입은 상처는 아이들끼리 병원놀이를 하다가 잘못하여 바늘로 찔러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신청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전혀 없었고 신문보도는 완전히 허위로 밝혀졌다.

2. 중재의 경위

김철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각 신문은 정정보도를 하였고, 1개 신문은 별도로 자세한 사건 경위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를 취하하였다.

3. 분석

1) 수사 중 범죄보도의 한계

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법적인 한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첫째, 범죄 자체의 보도와 범죄혐의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범죄사건 자체의 보도는 공공성이 있지만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의 신원은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즉 범죄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되나 범인의 신분에 관한 보도는 공공성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익명성은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보도를 통하여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정도가 되면 안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⁹⁾

둘째, 수사기관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제공으로 취재보도한 경우 이것만으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취재관행상 수사담당자의 정보제공이나 확인 등이 주요한 취재방법이지만 이러한 것이 비공식적인 것인 한 이를 믿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형법상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헌법상 규정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의 판단은 형사정책 확정의 중간단계에서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지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은 취재의 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언론보도가 되면 언론의 권위에 의하여 독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게 되므로 불확정한 자료가 확정적인 것처럼 남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범죄수사발표를 그대로 보도할 때에는 책임이 없음은 당연하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로써 발표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전적인 책임을 부

9) 이런 의미에서 신문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부속의 신문윤리실천요강 7조에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유의하여 경정을 사용하고, 탄 정심이상자는 형사책임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익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본적으로 위법한 것이다. 정심이상자만이 아니라 모든 피의자가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익명을 사용함이 당연하다. 언론이 가진 언론의식의 현수소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의 성격이 신속성을 요하는 것인지가
상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

2) 사실조사의 정도

취재시 사실조사를 어느 정도 하였을 때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문이나 추측 등에 기초하여 취재를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된다면 이는 위법하다. 그 판단 기준은 확일적으로 세울 수는 없고 보도매체의 성격(방송, 일간신문, 잡지 등), 보도의 시간적 한계(속보적 보도, 장기 기획물), 보도의 내용(일반적 사항,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대적 사항), 진실확인의 난이도(전화 등 간단한 확인 가능 여부, 고도의 기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면 보도의 성격이 신속을 요하는가 아닌가가 상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인에 대한 보도와 상당성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반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하였다. 1960. 3.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후원단체에서 뉴욕 타임즈에 남부 지역의 흑인탄압에 항의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문안에 기재된 내용 중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었다. 남부 도시의 시정위원인 설리반이 위 신문을 상대로 공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신문이 거부하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였다. 주 법원은 설리반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리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⁵⁾

“공직자의 공부행위에 대하여는 진실에 반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난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거나, 부주의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언론기관의 명예훼손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의 존재를 명예훼손을 당하는 공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부나 공직자를 비판할 경우 진실성의 입증을 요한다면 언론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비판적 기능이 위축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는데 필요한 숨길 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⁶⁾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아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이에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며,⁷⁾ 다만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 악의이론과 상당성이론은 실제 소송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전자는 현실적 악의의 존재를 공직자가 입증해야 함에 반하여 후자는 보도한 언론이 상당성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상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4) 의혹제기

이러한 상당성 판단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5)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법원행정처 간, 『2000년 법조출입기자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p.85에서 재인용

6) 현실적 악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미국법의 경향은 표상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p.31 이하 및 p.105 이하 참조

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다수의 관례가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것 같다.

이론전개를 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을 하나 소개한다.⁸⁾

공적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의혹제기라는 유형으로서 음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다음 항에서 자세히 다루고 아래에서는 위 판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였다.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하여 보도를 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만으로 확정적인 사실의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수집한 자료들 중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보도함으로써 의혹 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언론기관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실 보도만을 요구하고 진실성 입증에 부족하다 하여 책임을 지운다면 언론보도는 질과 양에 있어서 극도로 위축되어 언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 제기도 합리적인 균형을 갖출 경우에는 확정적인 사실 보도와 더불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의혹제기도 확정적 사실 보도 못지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허용범위와 조건도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강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

실을 암시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 된다. 즉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증거가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문제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사실보도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그 내용에 있어 진실하거나 언론기관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문제기보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다면 이는 언론기관이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실 자체를 보도한 경우와 그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과 같게 되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므로 의혹제기시의 증거수집은 확정사실보도의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가 단순히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강조하는 등으로 그 상반되는 사실을 암시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 보도로 보아 그에 따른 위법성 조각 요건을 따져야 함은 당연하다).

5) 이 사건들의 경우

앞서 예시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건은 취재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자가 있음에도 한쪽에만 치우쳐 취재함으로써 취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사건은 필자가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하였으나 수집한 자료에 뚜렷한 반대사실을 확보할

8) 서울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가합51563 이는 언론사건 전문재판부(민사25부)의 판결이다.

의혹제기보도도 피해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최대한 보호되어야

수 없어서 그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화통화만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경솔하다. 최소한도 교과서개편내용에 대한 기본서류 정도는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4. 유사 참고사례

1)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1) 국세청장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 보도자료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보도기관의 책임이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선고, 91가합43911 판결).

(2)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사건을 다룬 방송 드라마는 시간이 경과되어 진실 여부 확인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의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조사보고서 등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2. 27.선고, 97다19038판결).

(3) 장애자들이 회비착복을 이유로 수사를 요구하며 농성하는 현장에서 장애자들의 주장을 듣고, 경찰관에게서도 장애자들의 진술을 들은 다음 착복혐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장애자들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1.선고, 82가합 4783판결).

2)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1) 월간잡지사가 악덕번호사로 표현하는 수기 형태의 글을 실은 경우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8.

10. 11.선고, 85다카29판결)

(2) 실명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서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않은 채 불명예스러운 내용의 드라마를 방송한 경우(대법원 1998. 5. 8.선고, 97다34563판결)

(3) "피해자가 신고 없이 사슴축사를 신축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제보자인 동네 이장의 말만 듣고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피해자의 상관인 면장이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기사 작성한 경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판결)

V. 범죄보도의 상당성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342 내지 344

피신청인 신문들은 놀이방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놀이방 원생인 3세의 유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하여 발바닥을 컴퍼스로 45차례 찔렀고 이 일이 드러나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기사는 신청인을 "박모 씨(29. 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로 표시하였고 그 중 한 신문은 신청인이 경찰조사에서 "같이 일하던 보육교사 한 명이 한 달 전 그만뒀 일손이 부족한 데다 아이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헛김에 실수했다"라고 신청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일으켰으나 수사한 결과 위 유아가 입은 상처는 아이들끼리 병원놀이를 하다가 잘못하여 바늘로 찔려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신청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전혀 없었고 신문보도는 완전히 허위로 밝혀졌다.

2. 중재의 경위

김철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각 신문은 정정보도를 하였고, 1개 신문은 별도로 자세한 사건 경위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를 취하하였다.

3. 분석

1) 수사 중 범죄보도의 한계

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법적인 한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첫째, 범죄 자체의 보도와 범죄혐의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범죄사건 자체의 보도는 공공성이 있지만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의 신원은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즉 범죄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되나 범인의 신분에 관한 보도는 공공성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익명성은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보도를 통하여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정도가 되면 안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⁹¹⁾

둘째, 수사기관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제공으로 취재보도한 경우 이것만으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취재관행상 수사담당자의 정보제공이나 확인 등이 주요한 취재방법이지만 이러한 것이 비공식적인 것인 한 이를 믿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형법상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헌법상 규정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의 판단은 형사정책 확정의 중간단계에서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지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은 취재의 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언론보도가 되면 언론의 권위에 의하여 독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게 되므로 불확정한 자료가 확정적인 것처럼 남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범죄수사발표를 그대로 보도할 때에는 책임이 없음은 당연하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로써 발표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전적인 책임을 부

91) 이런 의미에서 신문기자협회 등이 제정된 신문윤리강령 부속의 신문윤리실천요강 7조에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유의하여 경청을 사용하고, 단 정신이상자는 형사책임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익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본적으로 위법한 것이다. 정신이상자만이 아니라 모든 피의자가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익명을 사용함이 당연하다. 언론이 가진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범죄사건 보도는 그 자체로서 공공성이 있지만 반드시 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답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식적 발표는 사건에 대하여 공표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구별된 형식으로 기자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공식 발표라 하더라도 기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사실을 덧붙이면 책임을 진다. 특히 요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사전 공표행위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주로 후에 부죄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불법행위로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또는 언론기관과 국가를 공동피고로 삼고 있는 예도 많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확인이나 정보제공만에 의하여 보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겠다.¹⁰⁾

셋째, 수사기록의 접근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기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취재기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

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하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기자는 수사기록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인용하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¹¹⁾

2) 수사 중 범죄보도 3원칙

첫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재로서는 ‘범죄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더라도 제목이나 기사의 다른 부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독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기사를 접하는 것을 전제로 기사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하여 명예훼손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선 취재기자의 기사를 데스크에서 편집하면서 제목이나 내용 일부를 독자의 구미에 맞도록 ‘튀게’ 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한 면이 있다. 제목 하나로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이 바뀌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자의 항변이나 반론적 입장을 충

10)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형법 제126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표행위의 공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를 강하게 신뢰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결여하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17257 판결 참조

11) 형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상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와 방송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의 공개는 당사자에게의 공개는 물론 언론에의 공개도 포함한다고 하겠다. 다만 재판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보도도 금지되는 물론이다.

분히 소개하여야 한다. 혐의사실에 반대하는 점에 대하여 가능한 확인절차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반대주장에 대한 확인 여부 등 취재진의 성실한 태도는 상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대상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보통 사람들에 대하여는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표현하면 안된다. 익명성 판단 기준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생활상 주변 사람들이 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수사경찰관의 사실상의 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여서(자신의 놀이방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윤리적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취재기자들은 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각 기사를 보면 우선 제목이 “컴퍼스로 유아 찢른 놀이방주인 영장”, “댁의 자녀 놀이방은? 아이가 울음 안 그친다고 컴퍼스로 발바닥 44곳 찢러” 등으로 되어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인상이 신청인이 범인임을 단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의 신원도 근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한 신문은 더 나아가 신청인이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고까지 보도함으로써 명백한 허위보도를 하였다. 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부분을 밝히지 않고(나이는 범죄혐의보도의 기본사실로서 기재함이 허용될 것이다) 신청인이 위 범죄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정도로 그쳤어야 옳았을 것

이다. 구속영장 내용만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을 기억해야 한다.

4. 유사 참고사례

1) 서울지방법원 2001. 6. 13.선고, 2000가합 50546 사건

7개 일간지와 1개 방송사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빚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이 채무자로 하여금 원고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채무자에게 교통사고 등을 위장하여 자살을 하라고 강요하였다가 채무자의 신고로 원고들이 구속되었다면서 원고들의 실명, 나이, 거주지역을 특기함과 아울러 TV에서는 인터뷰장면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의 말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져 법원의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들이 취재할 때 수사경찰관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사기록까지 보여주는 등(수사기록 중 진술조서 부분이 화면에 방영되었다) 상당한 협조를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은 보험을 이용한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보도 필요성이 컸고 수사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 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언론 각 사가 원고들의 신원을 명시하고, 피고 방송사의 경우 원고가 조사

구속영장 내용만으로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를 받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한 이 사건 보도의 각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은 국가와 8개 언론사에 대하여 각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보도시에 피해자의 신원을 명백히 드러낸 책임이 주로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지방법원 2001. 4. 25.선고, 2000가합 64132사건

원고는 가수인데 경찰에 연행되어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양성반응이 나왔다. 원고는 당시 한약을 먹고 있어서 이는 한약성분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묵살되었다. 원고는 이전에도 4차례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수사경찰관에게서 이를 확인한 5개 일간지와 1개 방송사는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여 제목을 '가수 ○○○ 또 대마초 적발'로 하여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분석결과 대마초 성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들만에 원고가 석방되었다.

법원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보도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여 한 위 각 범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공공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보도의 상당성 여부에서 소변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수사경찰관의 사실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각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특히 한 신문사는 ‘한약을 복용해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원고의 항변사실을 함께 기사에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기사 전체를 살펴볼 때 역시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한 것과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가수이므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위 기사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죄심증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 혐의사실을 기정화한 잘못이 크고 특히 제목의 처리가 과장되었고 보인다. 기사의 일부에 피해자의 반론을 소개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더라도 전체적인 기사의 인상이 피해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서울지방법원 2001. 7. 25.선고, 2000가합 51563 사건

원고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의사로서 언청이 수술 분야에 있어 권위자인데 피고 방송사가 원고에 대하여 “웃돈 30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보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절박한 상태의 환자 부모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치료할 때마다 4~70만원, 4년간 합계 3,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기형 상태의 언청이 환자의 입 부근의 사진, 범죄일람표, 통장을 찍은 사진, 원고의 과거 제자와의 인터뷰 장면 등을 함께 방영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경찰은 그 후 원고를 수사한 결과 사기혐의

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어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재 기자는 원고 소속 대학의 성형외과 출신 개업의들이 원고의 처벌을 위하여 제출한 진정서, 원고의 일부 제자 및 환자 부모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여 금원의 추가지급사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편철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통장 등을 촬영하였다. 또한 원고와 직접 인터뷰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은 민들레회(언청이 관계자들의 친목모임)에 대한 성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위 보도는 저명한 의사인 원고가 정해진 치료비 외에 상당한 금액의 정당하지 못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병예의 훼손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②이 사건 보도는 저명한 의사가 정해진 치료비 외에 상당한 금액의 웃돈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돈의 수수 명목 및 사용처에 관하여도 의혹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③또한 환자부모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환자 부모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치료할 때마다 상당한 금액(4~70만원)의 정당하지 못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위 돈을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피고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보도하였고, 그 상반되는 주

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그 상반되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의문제기 보도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 보도 및 정당한 의문제기 보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하였다. 이 보도는 원고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증거 및 의혹 사이에 균형을 잡았다고 보여져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에 해당한다.

VI. 논평과 사실적시

1. 사실관계 : 2001서울중재247

피신청인은 시민단체에 의하여 언론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간신문사논설위원이 '또 하나의 권언유착(權言癒着)'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신청인은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로서 자신들은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위 칼럼 중 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 부분은 칼럼의 도입부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언론세부조사결과라는 것을 국세청이 발표하던 날 같은 시각에 (중략) 언론개혁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발표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이제 검찰이 나서서 비리언론사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도 포함

주를 구속하고 언론사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은 시각에 짜 맞춘 듯 벌이고 있는 이 두 개의 행사가 오늘 우리사회에서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새로운 권언 유착의 함축적 의미를 보여주는 듯했다.”

2. 중재의 경위

중재기일에 피신청인이 반론보도 수용의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도 이를 받아 들여서 정정보도 대신에 반론보도하기로 중재 성립

3. 분석

1) 사실보도와 논평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보도는 기자의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그가 싫다"는 식의 의견은 개인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져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이나 칼럼에서의 논평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한 비판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¹²⁾

따라서 칼럼에서 논평과 사실이 혼합되어 있을 때(대개의 논평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므로) 양자의 구분은 매우 어렵고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논평의 자유

그러나 논평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인한 명예훼손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 보도기사에서의 사실 판단보다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 주제가 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논평의 법리(fair comment rule)가 인정되고 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공중의 관심사인 사항에 대하여는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를 정당화할만한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그 결과로서 피논평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논평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에 명백한 허위가 있으면 그에 기초한 논평이 위법함은 당연하다.

미국연방법원은 O.J. 심슨사건을 변호한 코크란 변호사를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진실을 팔아서라도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일간신문의 칼럼에 대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의견표현으로서 명예훼손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¹³⁾

위 살인사건재판에서 교묘한 전술로 증거법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심슨을 무죄변론한 변호사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비판은 허용된다는

1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판결

13)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69호), p.84에 이 판결이 소개되어 있다.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칼럼의 주제는 언론개혁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착되었음을 비난하는 데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위논평의 전제로서 일응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과연 논평문에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느냐에 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입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위 유착관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구체적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논평의 전제 사실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사안의 성질상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사회여론으로 보아 이 정도의 의심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중대한 공적인 문제이므로 논평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사실주장은 용인될 수 있다는 입장도 가능하다.

사실적시 여부 판단은 독자가 보도를 보고 느끼게 되는 인상이 그 기준이 되는데,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¹⁴⁾

이 사건은 양자가 반론보도를 서로 수용함으로써 해결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참고로 사실 여부의 시비와 관련하여 이를 피해 가면서 이 칼럼과 동일한 논조를 편 글 한편을 소개한다.¹⁵⁾

“느닷없는 홍위병 논란도 연장선상에 있다. 설득노력을 생략해버리고 싶은 집권자의 욕구와 나름의 개혁에 목마른 시민단체의 요구가 우연이든 아니든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난 데 대한 신랄한 적유가 아니겠는가. 순수한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운동이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의 행보와 겹쳐 보일 때에는 정치적 반대자에 의한 오해가 무섭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요즘처럼 절감한 적도 없다.”

4. 유사 참고사례

1) 책임 인정

피고가 사설에서 불법감청을 비난하면서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을 은폐하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전제로 기술한 경우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0. 2. 2.선고, 99가합77460판결).

2) 책임 부정: 서울지방법원 2000. 9. 20. 선고, 99가합102724

14) 대법원 1997. 10. 28.선고, 96다38032판결

15) 조선일보 2001. 7. 26.자, 박인제 변호사, '실종된 법치주의'

논평에 있어서 사실적시 여부 판단은
독자가 보도를 보고 느끼게 되는
인상이 그 기준

피신청인(일간신문사)은 논설위원들의 고정 칼럼에 “4·3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제주 4·3 사건 수형자(受刑者) 명부가 최근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계기로 반세기 가 지난 지금까지도 위 사건에 대한 공식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부끄러운 자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위와 같은 논평의 전제로서 기재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1948년 4·3 사태 당시 남한의 치안 총책임자는 『전 섬(제주도)에 휘발유를 붓고 빨갱이는 모두 죽여도 좋다』고 부르짖었다고 한다.(중략) 4·3 사태는 특히 이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양민들이 당시의 민병대가 할 수 있는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주민의 10분의 1이 넘는 3만명이나 학살당했다.”

원고들은 1946.경 3·8선 이북 지역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결성하였던 ‘서북청년회’의 회원들로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우선 ①이 기사가 서북청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②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다음으로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는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도한 억측이라고 보아 진실성을 부정하였으나, ④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에 관하여 “제주 4·3 사건

당시 좌·우익 이념 대립의 와중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당시 우익청년 단체의 대표격이던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서 공산계 밀라 토벌에 앞장서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서북청년단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희생도 컸을 것이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논평 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였고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흠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사의 성격이 사실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니라 수필 형식의 간단한 논평기사인 점에 비추어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결국 이 기사는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됨으로써 피고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VII. 편집의 왜곡

1. 사실관계 : 2001서울중재11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의원이 공영방송은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신청인 방송사는 그 다음날 9시 뉴스에서 위 국회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뭘 노리나” 등의 4가지 아이টে을 5분 46초간 방송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언론개혁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신문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야당이 위 보도 전부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을 하였다.

가장 문제된 부분은 위 뉴스의 첫 부분에서 위 의원의 위 국회발언을 자막으로 보도하고 나서 그 의원이 그 후 피신청인 소속의 기자와 별도로 인터뷰한 화면을 방영한 것이었다(나머지 정정보도에 관한 사항은 이 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그 내용은 그 의원이 “야당의원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쓰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이는 국회에서 행한 자신의 발언이 야당의원으로서 할 수 없이 이루어진 듯한 태도를 보여 발언의 무게를 대폭 감쇄시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2. 중재의 경과

1차 중재기일에서 위 의원의 인터뷰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인터뷰시간이 16분 10초나 되었고 그 내용도 언론개혁과 관련된 공영방송의 역할에 관한 것이 밝혀졌다. “야당의원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쓰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라는 발언은 인터뷰 초반의 수사(修辭)적인 부분에 불과하였다. 중재부가 이를 지적한 결과 2차 중재기일에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신청인이 9시 뉴스에 2분 이상 반론적 보도를 하였다.

3. 분석

취재기자가 취재자료를 수집하여 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라 불리는 책임자의 주관 하에 편집 담당자가 내용을 가감, 정리한 후 이를 보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취재된 사실 중 보도방향에 맞추어 적합한 부분이 취사선택되는데 보도내용을 정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변경되면 편집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국회발언을 보도하면서 국회의원의 인터뷰 발언 중 국회의원의 발언 요지와 관련 없는 수사적 부분만을 발췌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다. 편집권은 편집자의 고유한 것으로 편집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편집은 취재한 자료 중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지 언론사가 자료의 취사선택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 국회의원과 인터뷰 시간이 16분 이상이나 되고, 그 내용도 국회발언과 관련된 언론개혁과 공영방송의 역할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그 실제적 내용은 제외하고 인터뷰 초반의 수사적인 부분만을, 그것도 공적 발언을 철회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말을 골라서 위 의원의 국회발언에 이어서 내보낸 것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회발언을 후에 완화 내지 취소하는 취지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편집권의 남용사례로서 인터뷰자료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VIII. 초상권 침해

1. 2가지 사실관계

1) 동의 받지 아니한 사례 : 2000서울중재 297, 302, 303

인터뷰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 보도하는 경우
전형적인 편집권 남용에 해당

2000. 9. 주식이 폭락하자 피신청인 신문(주간지 및 경제일간지)들은 일제히 “객장마다 오! 주여 비명”, “날아간 내 돈 망연자실”이라는 제목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중년 부부가 증권사 객장에 앉아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여의도 한 증권사 객장을 찾은 투자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위 사진의 대상인 신청인부부는 당시 1년만기 예수금을 찾아가라는 증권회사의 통지문을 받고 증권회사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중에 촬영을 당한 것일 뿐이고 주가폭락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었다. 사진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 보도후 신청인은 직장은 물론 금전 관계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하였다.

2) 명백한 착오 사례 : 2001서울중재260

피신청인 방송사가 9시 뉴스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확산’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면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몇몇 시민단체의 집회모습을 방송하였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모습 가운데 편집의 착오로 위 운동에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의 시위 사진을 보도하였다. 위 사진은 원래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상당히 큰 지면으로 보도하였던 것으로 이조시대 갑옷을 입은 청년이 언론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었다. 다만 9시 뉴스에서는 위 사진을 2, 3초간 흘끗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일반인이 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정도였다.

2. 중재의 경과

첫 번째 사건은 중재신청이 제기되자 3개 언론사가 즉시 정정보도를 게재하여 중재신청이 취하되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위 사진의 방영시간이 아주 짧고 기술적 차원의 실수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중재부가 위 방송은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정정보도를 하되 그 시간대를 저녁뉴스 시간으로 조정하라고 권유하여 중재성립되었다.

3. 분석

1) 초상권의 의의

현대는 이미지시대이다. 언론보도에 타인의 초상을 이용하는 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진 없는 보도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초상이 무단 촬영되어 공개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일도 많아져서 개인의 초상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법적 보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⁶⁾

이에는 자신의 초상에 대한 촬영·작성의 거절권, 촬영된 초상권이 공표·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 영리목적에 자

16)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8권, 1994, p.210.

신의 초상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초상영리권의 3가지가 포함된다.

2) 초상권 침해 보도의 위법성

(1) 초상 본인이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범죄혐의로 지명수배되거나 체포된 모습을 보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그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면 초상권 침해도 당연히 성립된다.

문제는 초상 본인이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당초 승낙한 촬영 목적을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면 이전에 행한 승낙의 효력은 상실된다. 포괄적 승낙이나 동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유명인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제한된다. 유명인에 대한 공적인 관심은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유명인은 촬영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명인 중에서도 정치인, 연예인, 예술가 등 절대적 유명인과 특정 사건으로 유명해진 상대적 유명인으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익명성 이익과 공중의 관심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¹⁷⁾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촬영의 대

상이 된다는 점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예컨대 시위에 앞장서거나 주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도는 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초상본인들의 사진을 게재하였으므로 명백히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만약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1)사건은 초상본인들이 가사 주식폭락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주식폭락이라는 사태에 더하여 초상본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는 바 이는 개인적인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유사 참고사례

(1) 월간지가 압구정동문화의 실체를 벗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압구정 거리를 걷는 미혼여성인 초상본인의 모습을 승낙 없이 촬영 게재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45판결).

(2) 세계적 시사주간지가 한국의 과소비실태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이화여대생 3명의 인물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판결).

17)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민사판례연구』21집, 1999, p.759 이하

프라이버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히려 그 피해가 커지는 특성이 있어

IX. 프라이버시의 침해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368

유명 힙합그룹의 멤버였던 가수가 1995. 사인 불명으로 돌연사하였다. 피신청인 방송사가 2000. 11.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대담프로에서 그 달에 죽은 연예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도 이 달에 죽었다”고 말하고 고인의 생전 모습 및 자막으로 “○○○, 약물중독으로 사망”이라고 방송하였다. 고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이 되어 고인이 결코 약물(마약)을 한 바가 없다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고인의 사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2. 중재의 경과

피신청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중재가 성립되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 및 유족들에게 사과표시방송을 하였다.

3. 분석

1) 프라이버시의 의미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와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¹⁸⁾

개인의 내밀한 부분은 인간적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무단공개는 그것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이성관계, 건강문제, 재산상 비밀, 전력 등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거나 알릴 필요가 없는 개인적인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

프라이버시는 명예와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명예훼손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즉 명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 프라이버시는 사람의 내적 비밀의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지만 프라이버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보도자가 면책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일수록 피해가 커지게 된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대부분 명예를 훼손하게 되므로 실무상 차이 없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프라이버시의 가치가 중요시될수록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 조각사유

개인의 사적 비밀은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 승낙 없이 보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프라이버시의 공개는 적법하고, 승낙에는 묵시적인 승낙도 가능하다. 오히려 사진촬영 허용, 인터뷰, 일기장이나 관련자료 제공 등 묵시적인 승낙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

1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도하면 위법하게 된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 공직자의 인격이나 개인적인 사항은 공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건강문제나 이성관계는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활동과 관계가 없는 이성관계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나 사건의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도 보도가 허용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원인이 약물중독이나 아니냐는 일단 개인적 내부문제에 속하므로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의 사망에 대하여 특정인이 살인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의 의문사가 사회에서 공지의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 자체의 침해는 없었다고 보인다. 다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것을 약물사로 단정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로 되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된다.

4. 유사 참고사례

유방확대수술을 한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보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주변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된 경우 유방확대수술은 여성의 비밀영역에 속하므로 친지 등으로부터 비밀사항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판결).

X. 반론보도청구권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19조, 방송법 91조).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분쟁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하여 가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분쟁수단에 비하여 권리발생요건이 단순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사건이 반론보도의 실행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언론중재절차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를 한 경우라도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란 점에서 반론보도로 갈음하여 분쟁의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 권리의 형식성

그런데 언론기관은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정정보도청구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제도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이 본질적으로 형식적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정정보도청구를 한 경우라도 사실입증의 어려움과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론보도로 갈음하여 분쟁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아

한다.¹⁹⁾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언론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즉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어도 가능하고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 여부나 신청인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것이다.²⁰⁾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인쇄매체를 제외한 방송매체에 대하여만 제

한적인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에서도 미국의 영향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론의 일부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의 원상회복 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는 대륙법계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²¹⁾

3.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와 역기능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라는 점은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은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성이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에는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보도내용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론문이나 반박문을 게재·방송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정된 신문지면이나 방송시간에 비추어보면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원래 약한 지위에

19)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다.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간불법상의 반론권은 비록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제한의 목적이나 적정성 등에 있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9.16선고, 89헌마165 결정

20)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프랑스 혁명 이후 무절제한 언론의 비방과 일신공격이 심해지자 프랑스의 1822년 출판법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한 것이 세계 최초의 입법례였다. 이러한 반론권은 독일로 전파되어 독일에서도 1831년 바덴 뷔르템부르크주의 언론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언론의 사실 또는 가치관담보로부터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에게 권리구제 수단으로 대등한 부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절대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박인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형평과 정의』 11집, 1997. 1., p.13.

21) 이진웅, "언론에 의한 범의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헌법문제와 재판(하) 재판자료』(제77집), p.185.

있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권력기관, 경제단체, 특정 목적의 집단 등 거대화된 사회세력에 의하여 남용됨으로써 공기로서의 언론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²⁾

따라서, 관련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일방, 평면적인 정보의 흐름을 수정하여 보다 진실되고 공익에 합치되는 정보의 흐름을 꾀하는 반론권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내지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지워야 할 것이다. 언론사는 반론보도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좀더 자유롭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한편 반론 보도청구의 심리에서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에 부당한 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

1) 이 권리의 적극적 요건

①대상이 '사실적 주장' 일 것, ②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는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결여된 경우, ④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경우, ⑤반론보도의 내용이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대상자는 적극적 요건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언론측이 소극적 요건을 입증하여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아래에서 각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본다.

2) 4가지 사실관계

(1) 평가관련 사례 : 2001서울중재138

진보적 성향의 피신청인(일간신문사)은 “내 맘속에 펄떡이는 극우사관(極右史觀)도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극우사관 해설 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본의 극우사관과 유사한 경향의 극우경향으로 보수적 문인 중심의 영웅사관(英雄史觀)과 단군조선 등의 실제 인정론을 내세운 민족주체사관을 지목한 것이다. 신청인은 단군상 보급운동 등 민족정신회복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었다.

“종교단체인 신청인은 고대상고사 복원을 통한 혈통적 순수성과 민족자존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족주체사관론은 유신시대인 70년대 정책적 지원 아래 태동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와 인연이 있다. (중략) 단군상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온 단학선원과 김지하 시인이 손을 잡으면서 국수주의 논쟁을 낳기도 했다”

신청인의 반론의 주요 논점은 신청인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점, 극우사관을 반대한다는 점이었는데 중심문제는 신청인 단체를 극우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였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극우나 극좌로 평하는 것은 사회적, 역사적 차원의 가치관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논자와 기준의 설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우분류가 특별히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에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반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중재부는 신

22) 성낙인,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2001년 봄호, p.72.

반론보도청구 심리에 있어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실상의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였다.

(2) 개별적 연관성 관련 사례 : 2001서울중재181 외 다수

대한항공 등 항공사노조 파업에 관하여 상당수의 언론이 항공기 조종사 등이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한다거나, 연대파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연맹이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수십건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연맹이 단체교섭결단을 항공사 노조에게서 위임받아 협상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보도에는 위 연맹은 거명되지 않았고 항공사 노조이름만 표시되었을 뿐이었다. 신청인이 위 보도와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였는데 위 보도상에는 신청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여 중재를 진행하였다. 상당수의 사건이 합의가 성립되어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고 일부 사건은 중재부가 보도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자 취하한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개별적 연관성 요건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은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

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²³⁾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가 있을 경우 단체 자체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에 단체와 개인 모두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었다라도 구체적인내용이 개인의 행태와 언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단체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영문 이니셜, 또는 성씨만 지칭된 경우에도 상당수의 독자나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를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을 때에는 연관성이 인정된다.

(3) 정당한 이익의 결여 관련 사례 : 2000서울중재334

피신청인 방송사는 TV보도프로그램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함정, 불법 다단계판매'라는 제목으로 다단계판매의 불법거래와 문제점을 보도하였다. 신청인회사는 다단계판매업 회사로서 위 보도는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은 다단계사업을 제목에서부터 불법으로 규정하여 신용을 훼손하였고 신청인회사의 캐릭터모습이 화면에 나와서 나쁜 인상을 주었으며 인터뷰한 사람들이 모두 신청인회사와의 거래에서 다툼이 있는 사람들로서 일방적인 진술을 하였다면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중재심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보도내용이 대부분 확인이 되었고 일부 미확인 부분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여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재부의 설명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정당한 이익이란 보도에 대응할 실질적 이

23) 대법원 2000. 2. 25.선고, 99다12840판결

익 내지 필요성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신용에 현저한 타격을 받을 정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기 인식이나 고유한 인격상 침해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문제부분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된 것과 언론이 사후에 종전의 보도에 대하여 충분한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그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²⁴⁾

(4) 명백한 허위사실 관련사례 : 2001서울중재115

신청인은 결핵백신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에서 위 백신이 효과가 없고 대신에 다른 종류의 백신이 좋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사실을 신청인이 생산하는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공급하는 단체(공영기관)에서 취재하였고, 위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도내용과 반대되는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쌍방 주장의 사실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밝혀지기 어렵다고 보여서 중재부에서 반론보도를 권유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중재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가 진실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이므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는 이 권리의 발생에 영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무리 즉각적인 반대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인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권리의 남

용에 해당한다. 문제는 허위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인데, 명백한 허위라는 것은 “반론보도문의 주장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 사실이나 기타 언론, 이미 공표된 연구결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⁵⁾ 반론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조사를 요하지 않는 허위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덧붙여 보도한 언론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졌을 경우에도 반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자료는 반론문의 허위성을 입증할만한 명백성이 없어서 이 사건은 반론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처럼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반론보도 시행상의 균형성

정기간행물법 제16조 제5항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문의 구성은 원문보도의 내용을 개

24)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판결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판결

정정보도청구를 한 경우라도 사실입증의 어려움과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론보도로 갈음하여 분쟁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아

한다.¹⁹⁾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언론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즉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어도 가능하고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 여부나 신청인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것이다.²⁰⁾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인쇄매체를 제외한 방송매체에 대하여만 제

한적인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에서도 미국의 영향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론의 일부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의 원상회복 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는 대륙법계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²¹⁾

3.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와 역기능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라는 점은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은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성이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에는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보도내용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론문이나 반박문을 게재·방송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정된 신문지면이나 방송시간에 비추어보면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원래 약한 지위에

19)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간물법상의 반론권은 비록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제한의 목적이나 적정성 등에 있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9.16선고, 89헌마165 결정

20)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프랑스 혁명 이후 부절제한 언론의 비방과 위신공격이 심해지자 프랑스의 1822년 출판법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한 것이 세계 최초의 입법례였다. 이러한 반론권은 독일로 전파되어 독일에서도 1831년 바덴 뷔르템부르크주의 언론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언론의 사실 또는 가치판단보도로부터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에게 권리구제 수단으로 대등한 무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절대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박인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형평과 정의』 11집, 1997. 1., p.13.

21) 이경운, "언론에 의한 법외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헌법문제와 재판(하) 재판자료』 제77집), p.185.

있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권력기관, 경제단체, 특정 목적의 집단 등 거대화된 사회세력에 의하여 남용됨으로써 공기로로서의 언론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²⁾

따라서, 관련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일방, 평면적인 정보의 흐름을 수정하여 보다 진실되고 공익에 합치되는 정보의 흐름을 피하는 반론권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내지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지워야 할 것이다. 언론사는 반론보도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좀더 자유롭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한편 반론 보도청구의 심리에서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에 부당한 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

1) 이 권리의 적극적 요건

①대상이 '사실적 주장'일 것, ②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는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결여된 경우, ④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경우, ⑤반론보도의 내용이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대상자는 적극적 요건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언론측이 소극적 요건을 입증하여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아래에서 각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본다.

2) 4가지 사실관계

(1) 평가관련 사례 : 2001서울중재138

진보적 성향의 피신청인(일간신문사)은 “내 맘속에 필떡이는 극우사관(極右史觀)도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극우사관 해설 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본의 극우사관과 유사한 경향의 극우경향으로 보수적 문인 중심의 영웅사관(英雄史觀)과 단군조선 등의 실제 인정론을 내세운 민족주체사관을 지목한 것이다. 신청인은 단군상 보급운동 등 민족정신회복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었다.

“종교단체인 신청인은 고대상고사 복원을 통한 혈통적 순수성과 민족자존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족주체사관론은 유신시대인 70년대 정책적 지원 아래 태동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와 인연이 있다. (중략) 단군상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온 단학선원과 김지하 시인이 손을 잡으면서 국수주의 논쟁을 낳기도 했다”

신청인의 반론의 주요 논점은 신청인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점, 극우사관을 반대한다는 점이었는데 중심문제는 신청인 단체를 극우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였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극우나 극좌로 평하는 것은 사회적, 역사적 차원의 가치관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논자와 기준의 설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우분류가 특별히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에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반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중재부는 신

22) 성낙인,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2001년 봄호, p.72.

반론보도청구 심리에 있어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실상의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였다.

(2) 개별적 연관성 관련 사례 : 2001서울중재181 외 다수

대한항공 등 항공사노조 파업에 관하여 상당수의 언론이 항공기 조종사 등이 '역대연봉'을 받으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한다거나, 연대파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연맹이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수십건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연맹이 단체교섭권한을 항공사 노조에게서 위임받아 협상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보도에는 위 연맹은 거명되지 않았고 항공사 노조이름만 표시되었을 뿐이었다. 신청인이 위 보도와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였는데 위 보도 상에는 신청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더라는 점에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여 중재를 진행하였다. 상당수의 사건이 합의가 성립되어 반론보도분이 게재되었고 일부 사건은 중재부가 보도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자 취하한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개별적 연관성 요건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은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

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²³⁾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가 있을 경우 단체 자체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에 단체와 개인 모두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었다도 구체적인내용이 개인의 행태와 언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단체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영문 이니셜, 또는 성씨만 지칭된 경우에도 상당수의 독자나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를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을 때에는 연관성이 인정된다.

(3) 정당한 이익의 결여 관련 사례 : 2000서울중재334

피신청인 방송사는 TV보도프로그램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함정, 불법 다단계판매'라는 제목으로 다단계판매의 불법거래와 문제점을 보도하였다. 신청인회사는 다단계판매업회사로서 위 보도는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은 다단계사업을 제목에서부터 불법으로 규정하여 신용을 훼손하였고 신청인회사의 캐릭터모습이 화면에 나와서 나쁜 인상을 주었으며 인터뷰한 사람들이 모두 신청인회사와의 거래에서 다툼이 있는 사람들로서 일방적인 진술을 하였다면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중재심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보도내용이 대부분 확인이 되었고 일부 미확인 부분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여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재부의 설명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정당한 이익이란 보도에 대응할 실질적 이

23) 대법원 2000. 2. 25.선고, 99나12840판결

익 내지 필요성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신용에 현저한 타격을 받을 정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기 인식이나 고유한 인격상 침해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문제부분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된 것과 언론이 사후에 종전의 보도에 대하여 충분한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다.²⁴⁾

(4) 명백한 허위사실 관련사례 : 2001서울 중재115

신청인은 결핵백신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에서 위 백신이 효과가 없고 대신에 다른 종류의 백신이 좋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사실을 신청인이 생산하는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공급하는 단체(공영기관)에서 취재하였고, 위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도내용과 반대되는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쌍방 주장의 사실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밝혀지기 어렵다고 보여서 중재부에서 반론보도를 권유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중재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가 진실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이므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는 이 권리의 발생에 영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무리 즉각적인 반대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인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권리의 남

용에 해당한다. 문제는 허위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인데, 명백한 허위라는 것은 "반론보도문의 주장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 사실이나 기타 언론, 이미 공표된 연구결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⁵⁾ 반론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조사를 요하지 않는 허위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덧붙여 보도한 언론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졌을 경우에도 반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자료는 반론문의 허위성을 입증할만한 명백성이 없어서 이 사건은 반론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처럼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반론보도 시행상의 균형성

정기간행물법 제16조 제5항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문의 구성은 원문보도의 내용을 개

24)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판결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판결

반론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언론사는 반론보도에 대해
긍정적·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괄적으로 표시하여 연관성을 표시하여야 하고 원문보도에 대한 반대사실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원문보도를 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반론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로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할 수도 있다. 반론보도문을 독자투고형식으로 게재할 것을 제안하는 언론사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정간물법 제16조 제5항). 이는 반론보도문이 원문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상 당연한 규정이다. 반론보도문에는 통상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이것 이외에 또는 이것 대신에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것도 허용될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편집 부문의 기사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현재 언론중재시 사용하는 반론보도문 형식은 다소 짧은 감이 있지만, 반대로 반론보도를 장황하게 할 경우 그 부작용도 많아서 효과적인 반론보도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경우에는 화면과 내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반론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예컨대 원보도가 9시뉴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보도의 보도정도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간대의 뉴스시간에 방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9시 뉴스에 보도된 시간이 몇 초 정도로 아주 짧거나 반론의 성격이 보충적일 경우 제한된 뉴스시간에 이에 대하여 반론문을 방영하게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만민교회 사건에 대한 반론

보도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MBC 피디수첩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만민중앙교회측은 무려 64건의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41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기각하였으나 23건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방송사측이 불필요한 보도를 거의 매 뉴스시간마다 방송함으로써 반론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잘못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주 원인이지만 방송매체의 특성과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법원에서 이와 같이 23건씩의 반론보도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은 의미할 가치가 있다.²⁶⁾

6.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언론사의 기본 대응원칙

첫째, 반론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이며 피해자의 즉시적인 피해 방지뿐 아니라 언론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인식 아래 긍정적,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그러나 그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건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하고 특히 반론보도문의 분량과 내용에 대하여 균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반론권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면 이러한 균형적 보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XI. 맺는 말 : 언론은 수술용 칼과 같다

이상에서 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26) 성낙인, 앞의 논문, p.73 이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언론은 외과의사의 '수술용 칼'과 같다는 것이 필자의 소감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칼로 환부를 도려내어야 한다. 그러나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엉뚱한 부분을 수술하거나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의 배를 가르다면 그 환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언론 없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지만 언론이 잘못하면 피해자도 사실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칼의 사용은 과감하되 신중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언론보도에 기본적으로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충분한 사실 확인과 공평한 취재라는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일방 관계자의 조사나 부분적인 조사만을 기초로 보도한 예가 많다. 이 글에서 다룬 사례 이외에도 이러한 사건이 적지 않았다.

둘째, 언론기관의 취재대상에 대한 인격권의 배려나 보호의식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상인이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취재기자는 대상자에 대하여 익명성의 원칙과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분쟁 판단의 기준점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언론분쟁 판단의 기준점이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²⁷⁾ 언론보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두 가지 법익이 팽팽하게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격권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언론의 자유가 공익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일진대 공익이란 것도 결국은 개개인의 기본권을 위하여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

2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

<제2주제>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 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I. 서 언

요즘 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도 직접 취재해 작성한 기사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 해당 기자는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못지 않게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중재위 단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를 해주고¹⁾,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일단락되면 대단히 양호하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정정보도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법정 비화되는 게 보통이다. 형사 고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동원되거나, 당사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언론사와의 본격적인 다툼에 돌입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소가 제기되면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기자는 중재 신청 단계에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²⁾ 대

- 1) 최근 들어 신문사 등 언론사의 정정보도는 이전에 비해 매우 관대해진 측면이 있다.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소명하면 곧바로 정정보도를 받아 내는 게 가능하다. 중재위의 중재단계에서도 당사자의 주장에 무리가 없으면 정정보도 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 2) 당사자들의 소 제기 동기 중엔 기자를 괴롭혀야겠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은 기자와 배상 능력이 있는 언론사를 함께 걸거나 언론사와 편집국 간부 또는 언론사만을 피고로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해당 기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소가 활성화될 경우 회사가 이를 언론사에 대한 손해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떠맡고 나서지 않는 한 기자로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 진 원

중앙일보 기자

-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졸업
- 중앙일보 정치부, 사회부, 전국부, 산업부 기자
- 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자

개 소속 언론사와 함께 공동 피고로 소가 제기돼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서는 게 보통이나 원인제공자의 위치에 있는 기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엄청난 심적·물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변호사를 도와 기일마다 재판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 불리한 판결에 대비한 당사자와의 화해 노력 등이 모두 해당 기자의 몫이다. 중간에 화해가 안돼 판결까지 가게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재판이 기자와 언론사의 패소로 끝나고 해당 기자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회사에 따라 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해당 기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³⁾

언론사로서도 손해소 피소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함은 물론 패소로 확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위자료 액수가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어 명예훼손 소송의 패소가 언론사에 지우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붙여가며 특별보험에 들고 있는 언론사도 점차 늘고 있다. 잦은 정정보도로 독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피고의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 언론사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기자와 언론사로서는 명예훼손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급선부라고 할 수 있다. 소가 제기된 후 정정보도 기사 게재 등을 조건으로 당사자와의 협상이 성사돼 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아예 소 제기의 발미를 없애는 게 상책이다.⁴⁾

다만 명예훼손을 예방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특종의 추구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어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좀 꺼림직하다 싶은 기사는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방이 아니라 기사의 포기라고 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보도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하에서는 취재 일선에서 특히 시비가 많은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를 중심으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 소송을 피해 가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 법원의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언론의 취재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범죄 혐의 보도는 관련 당사자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수사와 재판의 진전에 따라 나중에 혐의가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판결 중엔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경우도 많다.

3) 모 신문사 기자의 경우 패소 판결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한 후 언론사를 옮기기도 했다.

4) 기자의 당사자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고, 아무리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오묘로 인한 피해가 말끔히 자유된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의 예방이야말로 바라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에 상대적으로
명예훼손 시비가 많은 이유는
일종의 전문보도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

또 공공성·공익성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같은 사안임에도 기사의 표현 정도에 따라 언론사마다 책임의 경중이 다른 경우도 없지 않다. 무엇이 어떻게 문제돼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사례별로 따져보기로 한다.

II. 손해배상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주지하다시피 신문 또는 방송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⁵⁾ 이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보통의 여러 요건을 다 챙겨 보아야 하는데 특히 판례상 인정되는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보도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도 당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거의가 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해당 여부에 따라 결말지어진다고 보아도 된다.⁶⁾ 보도의 공공성·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명예

훼손으로 인한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판단 요소들인 것이다.

III. 전문(傳聞) 보도와 진실성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를 둘러싸고 명예훼손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전문보도의 형태로 이뤄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 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 관련 보도는 대개 “~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여기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체는 사실이나 그 혐의 내용이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 등으로 판가름날 경우 진실한 보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보다도 혐의 내용이 진실하여야 비로소 진실한 보도가 된다”며 원칙적으로 진실성을 부정한다.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질 일이지 진실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절도와 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모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도가

5)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의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빈번하게 동원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6)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굳어져 명예훼손에 관한 거의 모든 판결에서 이 법리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가려 나가고 있다.

7) 물론 진실한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혐의 보도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는 거의가 나중에 무죄 판결 등으로 결말이 나 혐의를 벗은 사건들이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원고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신문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며 진실성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⁸⁾ 다만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기사의 요지가 검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구속하였고, 그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방침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임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전문보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의 “한통 노조의 북한조종설” 발언 관련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인정,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한 것이 있다.⁹⁾

한국통신 노조와 집행부 간부 등이 박홍 전 총장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명동성당, 조계사에서 농성한 것이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 근거가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 박홍이 한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 중앙일보가 박홍이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요컨대 하급심에서는 전문 보도와 관련, 피전달 내용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인상과 인용 정도, 기사의 표현 방법 등을 따져 진실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없지 않으나 대법원은 범죄 혐의 보도에 있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성을 부정하고 상당성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지려는 태도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자들 중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아니냐는 생각에 수사 상황에 대한 보충 취재 없이 막연히 기사를 송고하고 데스크도 그대로 출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 주의가 요망된다.

IV. 상당성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논란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상당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적시된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¹⁰⁾

8) 대법원 97다10215, 97다10222(99. 1. 26)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7집, p.123.

9) 서울고법 97나23466(98. 1. 21)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265.

10) 대법원 96다36395(98. 5. 8)판결 등 상당성이 문제된 거의 모든 판결이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155.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만 몰두,
수사상황에 대한 보충취재 없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경우에 상당성이 있는지 한마디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와 인정된 경우로 사례를 나눠 법원의 판단과 취재 현실이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해 본다.

1. 부정된 경우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된 가수 조덕배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보도 관련 사건은 영장이 신청되기 전 긴급체포된 단계에서의 보도가 문제된 경우다.¹¹⁾

야근 기사로 보도됐으나 기사는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됐다는 평가가 많다. 때문에 조씨의 승소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계에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당황해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보면 실명이 적시돼 보도됐으나 공공성과 공익성은 인정됐다. “당사자인 조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 결과 조씨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대마초 흡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조씨는 긴급체포된 지 이틀 후 석방됐고, 1달 반 정도가 지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따라 진실하지 않은 보도가 돼 상당성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 됐는데, 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조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상당성을 부인한 법원의 논리는 기사의 내용에 비춰 취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1차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조씨가 한약 복용 사실을 주장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호텔 방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고 제보돼 같이 입건된 박모 씨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에선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은 점, 조씨의 동종 전력이 4차례나 된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조씨가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므로 이를 들추어 보도하려면 더욱 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담당경찰관과의 전화 통화로 기사 내용을 확인했으니 상당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비해 기사의 내용은 제목이 혐의를 단정짓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다 본문 중에 나오는 4차례의 동종 범죄 경력 소개 등이 맞물려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이번에도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란 인상을 독자들이 받을 것으로 보여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와 기사 작성, 편집 실태에 비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제목이다.¹²⁾

신문과 방송의 기사 제목은 취재기자가 써 온 기사를 보고 편집자가 내용을 압축해 독자의 주의를 끌만한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뽑

11) 서울지법 2000가합64132(2001. 4. 25)판결, 『언론중재』, 2001 여름호, p.128.

12)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매체가 “가수 조덕배 씨 또 대마초” 등의 단정적 표현으로 제목을 뽑고 있다.

는 게 현실이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말이다. 이어 제목의 강한 표현이 초래할 지 모르는 내용 예측의 일탈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취재기자가 신중한 표현으로 다듬어 쓴 기사 본문을 읽으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목이 초래할 지 모르는 오해의 우려를 본문이 해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조씨 관련 기사에 나타난 제목의 단정적 표현도 이런 메카니즘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소가 제기된 6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거의 비슷하게 뽀얀 게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본문은 한 매체를 빼면 혐의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곳이 없다. 긴급체포돼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일보는 영장 신청 방침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잘못 보도하긴 했으나 “한약을 복용해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조씨의 항변도 싣고 있다. 문화방송은 “이번 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조씨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조씨측 얘기를 덧붙이고 있다.

독자들 중에도 신문이나 방송 기사의 제목이 이런 과정을 거쳐 정해지고, 본문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되지 않을까. 법원은 또 동종 전력을 들춘 것을 문제삼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쓰면서 이 내용을 빼고 송고한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야말로 취재가 부족하다고 데스크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대목이다. 기사를 내용이 알차고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은 독자의 알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들춰 보도하려면 더욱 더 객관

적인 근거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그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연장선상에서 독자들이 조씨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란 인상을 받았을 것이란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목의 표현은 본문과 조화를 이뤄가며 뜻을 새기는 게 보통이라는 점과 독자들의 인식 수준 또한 재판부가 지적한 우려를 앞서 나갈 만큼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은 언론사마다 차등을 두었다. 본문에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쓴 A사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고 적시, 실행 전과는 한차례에 불과한 전력을 잘못 보도한 B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하고 중앙, 한국, 세계일보와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담당 경찰관의 요청으로 기자들이 공동으로 브리핑을 듣고, 배포된 보도자료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나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도 있다.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모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그렇다.¹³⁾

이 사건은 실명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공공성을 부정, 상당성을 따질 실익이 없었지만 서울고법은 상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공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마당에 상당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며 서울고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게 된 것은 서초경찰서

13) 대법원 96다17257(98. 7. 14)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200, 서울고법 95나24946(96. 2. 27)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4집, p.218.

기자들이 공동으로 담당 경찰의 브리핑을 듣고
배포된 보도자료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나 상당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어

의 담당 형사계장이 서초서를 담당하는 강남서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서초서는 기자들이 상주하지 않고 강남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담당한다.

기자들이 모이자 담당경찰관이 유씨의 살인 예비음모 피의사실과 수사 경위 등을 영장 신청 방침과 함께 설명했고,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와 수사기록을 열람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분명한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공식발표라 할 수 없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발표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사건의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공금증을 풀어 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이런 요청 때문에 경찰의 공보에 관한 규율은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는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경찰 등의 일선 취재 관행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분명한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 요청한 것이어서 공식발표라 할 수 없다고 한 대목이다. 공식발표의 경우에만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도 상당성이 약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공식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우 수사본부장이나 공보관이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속성상 해당 부서에서 그때 그때 자료를 내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꽤 된다. 설명 또는 발표 장소는 기자실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 방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선 해당 부서별로 범인 검거 보고서 등을 수시로 기자실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오히려 기획 수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후자가 보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언론에서 말 그대로 공보관 등이 공식발표한 경우와 차이를 두어 기사 비중 등을 달리 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둘 다 훌륭한 취재의 단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만 해도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가 담긴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나 재판부가 지적한 공식발표 때의 보도자료나 언론에선 똑같이 취급한다. 일선 경찰서엔 상시적으로 공보관이 있는 곳도 거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1개 경찰서가 있는 서울의 경우 경무과 소속으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긴 하나 이들의 역할은 기자들의 취재 지원과 보도 분석 등 총무 업무로 역할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은 해당 부서가 맡는 경우가 많다. 결재 문제도 지적됐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결과 설명 등에 관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부서별로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재 또는 위임 여부는 경찰 내부의 문제이지 기자가 책임

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동아·조선·한국일보 기사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2)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 법원은 경찰 단계에서 문제된 경우와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공소 제기 후엔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죄를 물을 수 없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경찰에서와는 사정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기자들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부장검사가 기자실을 찾아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발표한 데 대해 공식적인 의미를 부여, 그대로만 보도하였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참고인 조사만 받고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혐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¹⁴⁾인데, 2심과 1심을 맡은 서울고법·서울지법은 기사 내용이 과장됐다면 상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반대로 과장되지 않았다면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전제로 깔려 있다. 또 기자들의 요청으로 부장검사가 기자실을 찾아와 수사 내용을 설명한 것을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로 인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브로커 역할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부장검사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발표와는 달리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듯 보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발표 범위를 초과하여 과장 또는 단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점에서 피고가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특히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한 명의 이름을 대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부장검사가 담당검사에게 전화로 이를 파악해 알려 주었으나 기자들이 이 사람의 혐의를 임의로 못박아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기자들은 부장검사의 구두 발표 내용에 원고가 브로커라든가 원고에 대한 브로커 혐의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견 모델 진희경 씨가 문화일보와 해당 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¹⁵⁾은 엄밀히 말해 피의자의 혐의 내용에 관한 진실성과 상당성이 문제된 것은 아니다. 범죄 혐의 내용에서 제3의 사실을 찾아내 일반 보도기사로 게재됐으나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상당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고등법원에선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원고인 진희경 씨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대법원에서 상당성이 부정돼 고법 판결이 뒤집

14) 서울고법 96나7849(96. 9. 11)판결, 서울지법 94가합17753(95. 12. 22)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5집, p.164.

15) 대법원 96다36395(98. 5. 8)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155.

기자들의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담당 검사가
기자실을 찾아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공식발표로 인정

힌 것으로 유명하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문화일보에서 범조를 출입하는 한 기자가 사기죄로 기소된 박모 씨의 공소장을 열람하던 중 박씨에게 속은 술집 주인 등의 부탁을 받고 그를 접대한 여자들 중에 김혜선, 진희경, 최지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 취재에 나섰다. 담당검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 김혜선이 유명 탤런트인 김혜선과 동일 인물이고 진희경도 중견 모델이라는 확인을 받고 수사 기록을 열람했다. 그 결과 박씨가 자신을 접대한 이모 양은 예명이 '진희경'이라는 영화배우인데 영화잡지에 실린 원고 진희경씨의 사진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그녀를 소개해 준 음식점 주인 역시 그녀가 대한항공 청사에 세워진 광고탑 모델 3명 중 왼쪽에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박씨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박씨가 첨부된 원고의 사진을 지칭하며 원고가 자신을 접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또한 진술서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기자는 이를 토대로 "중견 모델 진모 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를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박씨를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진양은 문화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심리 결과 박씨를 접대한 이양의 예명이 진양의 이름과 우연히 일치해 이 같은 혼동이 생긴 것으로 드러나 기자가 이양이 진양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고법은 상당성을 인정, 문화일보와 기자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성을 인

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박씨 사기사건에선 접대부들의 신원이 초점이 되지 않아 박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 담당검사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들을 소개해 준 술집 주인 등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수사검사는 박씨의 진술을 근거로 기자에게 연예인들의 접대행위를 확인해 준 점, 기자는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자신이 열람한 수사 기록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아니함은 물론 박씨가 언급한 대한항공 광고탑 모델에 관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어 "기자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박씨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박씨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 할 수 없으므로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이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에 원고 등 관련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관련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광고탑 모델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박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점에서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 현실에 비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범죄 혐의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있어 수사 검사의 말 한마디는 그 자체가 실제적 진실에 가까

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열심히 검사실도 드나들고, 검사들과 스무고개하듯 신문답도 나눈다. 검사실이 기자들에게 항상 개방돼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검찰의 수사 기록을 열람한다는 것은 기사 거리가 듬뿍 담긴 잘 정리된 문서를 보는 것 이상으로 기자로서는 흥분할 일이다. 검사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하지 않는가. 이 점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문화일보 기자는 취재 수완이 대단하다고 할 만하다.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나무라는데 검찰 출입기자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최고 우선 순위 대상은 수사 검사라고 해야지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검사와 당사자의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대부분의 기자는 검사의 말을 앞세우고 당사자의 부인은 반론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요즈음 언론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받도록 하는 것도 사실확인보다는 기사의 균형 유지와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의 방어용인 측면이 강하다. 수사 검사의 확인과 수사기록만으로는 미흡하다며 당사자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사실을 확정된 후 기사를 쓰라는 주문이어서 일간신문 보도의 상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잣대로는 지나치지 않나 싶다. 서울고법은

기사 내용에 관한 취재원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상당성을 인정했다.

2. 인정한 경우

나중에 혐의를 벗은 범죄 혐의 보도 중 법원에서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법원의 태도가 경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상당성을 인정한 판결의 취지는 대개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각색하거나 덧붙임 없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용, 보도한 경우로 압축된다.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절도와 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모 씨 등 2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된 사건도 이 같은 이유로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다.¹⁶⁾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자. 조선일보는 이모 씨가 구속된 다음 날짜에 “회사기밀 유출 간부 구속”이라는 제목과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라는 소제목 아래 검찰이 이 씨를 구속하고 박모 씨를 불구속했다는 내용과 혐의 내용, 앞으로의 수사 방침 등을 사회면에 보도했다.¹⁷⁾ 또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취재 경위를 보면 취재기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사

16) 대법원 97다10215/97다10222(97. 1. 26)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7집, p.98.

17)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검 형사 4부 박성길 검사는 22일 자신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유력한 조건으로 스카우트되기 위해 자기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 상품기획부 차장 이영우 씨(34)를 구속하고 재무관리부 과장 박성욱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자신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마트와 주식회사 유공 등에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 유통업체에 뛰어들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작년 12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코리아 세븐 회사의 유통조직개요, 사업계획서, 물품 판촉일정표 등의 사본을 넘겨주고 그 밖의 회사 기밀사항을 구두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 검사의 확인과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확인까지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은 너무 지나쳐

본을 열람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 다른 기자들과 함께 이씨 등에 대한 피의사실이 요약, 정리된 자료를 배포받고 검사가 발표하는 수사경위를 들은 다음 이러한 취재 자료에 의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박씨가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이후는 이씨 혼자 법정 다툼을 계속했다.

이런 전제 아래 대법원은 “기사의 취재원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데다 사적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이씨는 구속되어 있어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점, 기사는 제목 등에 있어 이씨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나 본문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검사로부터 취재한 사건 경위와 수사의 방향 및 그로부터 배포받은 수사자료를 기초로 취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1심과 2심은 혐의가 벗겨졌더라도 기사는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진실성은 부정하되 상당성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의 판시 내용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판단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앞서 소개한 조벽 씨 사건에서 서울지법은 제목의 단정적인 표현을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본문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취재 내용이 수사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돼 있다”고 언론에 유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살인예비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부죄 판결을 받은 유모 씨 등 사건에선 기자들이 경찰의 요청으로 담당경찰관을 찾아가 보도자료와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설명을 들은 데 대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가 아니라며 상당성을 부정했으나 이 사건에선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인 반면 이 경우는 기자들이 담당검사에게 취재를 요청, 내용을 확인했다는 차이밖에 없다. 법원은 검사의 설명에 보다 높은 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판결은 나아가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진희경 씨가 문화일보와 기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확인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판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돼 손해 책임이 부정됐을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해 9월 19일에 나온 부산지법 판결이다.¹⁸⁾

18) 부산지법 99가합9588(2000. 9. 19)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8집, p.243.

부산지법은 간첩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서모 씨 등 5명과 그 가족이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당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신문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이들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는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돼 책임이 부정됐을 것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 즉 "서모 씨 등의 간첩혐의부분은 피고들 이외에도 한겨레신문·조선·동아·한국일보·국제신문에도 보도되었으나 이 신문들의 기사는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수사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서씨 등의 혐의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변호인과 가족들의 주장에 관하여도 소제목과 본문에 그 주장 내용을 실어 보도하였고, 기사의 분량이나 표현이 피고들 것보다 완화된 모습이다. 동아일보의 기사 중엔 검찰이 '아직까지 이들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까지 실고 있다"고 하고 있다.

수사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작성돼 있고, 변호인과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제목까지 뽑아가며 내용을 다뤄 균형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의 유보적인 태도를 기사에 포함시킨 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원고들은 이들 기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V. 공공성·공익성

위법성 조각사유 중 진실성이나 상당성보다도 법원 실무상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상당성과는 달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명으로 보도할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 보도와 관련, 익명보도의 원칙을 내세워 실명을 적시한 경우 공인이 아닌 이상 공공성·공익성을 부정하고 있다.

살인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유모 씨 등이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실명이 적시된 해당 기사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있다.¹⁹⁾ 또 "유씨 등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들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언론 각사가 유모 씨 등의 신원을 명시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초상을 보여주면서 한 각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야 법조계 등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서울지법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19) 대법원 96다17257(1998. 7. 14)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200.

법원의 판단기준이 언론의 관행에 비취
매우 높게 형성된 것이 현실이나
언론도 취재와 기사작성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의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김모 중사와 그 가족이 서울방송과 동아일보·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김씨의 실명과 사진을 적시하면서 한 피고들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돼 있던 점은 인정되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²⁰⁾

재판부는 “공인에 대한 평가자료로 제공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등의 사회에 대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이상은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에 중점이 놓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VI. 결 어

이상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기사를 쓰면 명예훼손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또 언론의 특성상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설령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공공성·공익성을 갖추고 진실한 내용을 다루거나 적어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만큼 취재를 충실히 하는 것이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면책될 공산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든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 취

재 현장에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없는 예방적인 기사를 쓰고 완벽한 취재로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법원의 언론에 대한 기대 수준이 워낙 높아 언론으로서 명예훼손을 피할 방법도 별로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사건마다 법원의 해석이 다르고 아직 통일돼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명예훼손 예방의 기준을 알고 싶은 언론으로서 혼동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또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포섭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취재 현실에 대한 이해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법원으로서 이러한 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다.

언론도 단순히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 등은 지양하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보도에 임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수사 단계를 앞서가지 않는 신중한 접근과 혐의 내용에 대해 더욱 중립적인 표현을 적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예단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각색, 과장하는 것은 물론 안된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언론의 관행에 비취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나 언론으로서의 거액의 손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기준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취재와 기사 작성 시스템의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못지 않게 언론의 입장에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예방 분야에 관한 연구가 법조계와 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20) 서울지법 99가합30768(2000. 8. 23)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8집, p.149.

종합토론

사회자 · 최 선 열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자 : 중재신청사건 분석을 통해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부장관사의 주제발표와 범죄보도를 중심으로 법원판결 경향을 정리한 김기자의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내용 가운데 법원이 언론에게 요구하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김기자의 주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해도(서울중재위원) : 주제발표 내용에 예시된 사례 중에는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입니다. 예시사실 중 모 가수 대마초 흡연 보도사건의 경우 보도내용이 잘못된 사실이 밝혀진 후 추후보도나 해명보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된 보도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곧바로 제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재운(발표자) : 추후보도가 가능하려면 부죄판결이 내려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발표자) : 추후보도 성격의 보도가 일부 신문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

도 대상이 되었던 이 가수는 긴급체포 후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가 나오자 바로 무혐의 처리되어, 일부 언론에서는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는 보도도 함께 한 것으로 하는데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것 같지 않습니다.

신윤석(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장) : 당시 취재현장에 있어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가수측의 청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성격의 후속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 가수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그 후 국과수의 소변검사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석방되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현철(서울방송 사건팀장) : 과연 언론인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언론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최근 언론과 법원간의 일종의 마찰로 인해 언론보도를 불신하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주제발표자의 발표내용에서도 언론을 외과의사의 수술용 칼로 비유한 것은 어린 아이에게 칼을 맡겨 놓은 듯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원은 기사의 상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인 면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사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자의 취재당시의 상황이 상당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론보도청구를 소송제기를 위한 전 단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 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과 법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론이 다루는 영역은 상식의 영역이고 법이 다루는 영역은 법질서가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법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사화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언론의 정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서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 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되는 사례도 있어

윤재윤(발표자) : 김진원 발표자의 주제논문을 접하고 나서 기자들이 갖는 취재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언론소송뿐만 아니라 의료소송, 건축소송 등 다양한 전문적인 소송에 대비해 판사들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흡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를 끊임없이 밝혀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내고 법률을 적용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사명을 위해서 법원의 기준을 낮출 수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언론보도의 면책사유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기준도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는데 이 공공의 이익이란 결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낮춘다면 결국 공공의 이익 또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언론보도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보도의 공공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중요성의 비율을 51 : 49로 볼지언정 개인의 인격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기사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철(서울방송 사건팀장) : 신뢰할 만한 취재원(reliable source)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보도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어디까지 면책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잘못 보도한 경우 언론매체만 책임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윤(발표자) :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했는데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된 경우 자료를 제공한 사람 또한 엄격한 책임이 따르겠지만 언론사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의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가공해서 기사를 작성하여 언론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원(발표자) : 한 실례로써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언론사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여,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나서 언론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법원은 그 배상책임을 나누는 데 있어 국가가 7, 언론사가 3의 비율로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공한 국가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적용하는데 있어 언론환경이나 현실을 잘 알아야 그 타당성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결들은 그 기준의 적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윤석(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장) : 언론계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 기자들의 사실확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선 기자들은 진실 접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법조계에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서울방송 사건팀장) :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를 하던 당시 경험했던 사안입니다. 보도에 거론되었던 사람이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부의 권유로 반론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왜 보도에 대한 진실여부를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는 데 있어 진실여부를 언론사가 입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석순(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 수사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검사의 수사발표를 접하고서도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자의 직분을 망

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공식 발표라는 이유로 이런 경우까지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의 자료라고 확인 취재도 없이 무조건 기사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윤재운(발표자)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비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비공식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가 잘못되었다면 언론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소를 준비하는 기관이지 확정력 있는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바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요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발표와 비공식적인 자료제공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확인취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보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기사작성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정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범죄보도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취재 대상자를 반드시 만나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반대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셋째, 공인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익명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기사작성시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어질 것이라 봅니다.

법조비리사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언론계에 팽배

정동우(동아일보 사회부장 대우) : 취재시스템이라든가 언론계의 입장에 대해 중재위원이나 사법부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언론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기사작성시 보도대상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역지사지의 자세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속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언론계 추세입니다. 윤재윤 부장판사가 범죄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난 한 사례로서 제시한 놀이방을 운영하던 신청인이 3세 유아를 컴파스로 찢었다는 보도내용을 일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윤부장판사는 신청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인용하였고 기사내용이 완전한 허위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지만, 이 기사는 취재기자가 10여 차례나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원장 선생님이 찢었다”라는 유아의 진술까지 확보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유아의 진술이라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사안에 있어, 사법부나 중재부는 언론매체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거의 예외없이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에 소개된 가칭 ‘언론포해구제법(안)’을 보더라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재위의 권한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론보도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며, 고발과 비판기능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소송판결 추세를 보면 사법부의 판

단은 더욱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기자실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화한 경우에 법원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온 듯 하나 김훈 중위 사건 보도관련 판결을 보면 최근 법원의 입장이 변화된 듯 합니다. 김훈 중위 사건 보도에 대해서 법원이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취재보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윤재윤 부장판사가 범죄혐의보도에 있어서 세 가지 준칙을 제시했지만, 이 준칙대로 기사를 작성해도 소송의 덫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익명으로 표현한다해도 타 언론사에서 당사자를 특정하여 보도함으로써 소송에 연루되어 익명표현이 무색케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이나 검찰 등 공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법부의 판단은 오히려 더 엄격한 듯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은 공직자와 관련한 보도의 경우 언론보도의 면책 범위를 넓혀 사회비판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비판기능을 소홀히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측에 불과하기 바라지만 의정부나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사법부가 언론에 대해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언론계에 팽배한 실정입니다.

윤재윤(발표자) :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판결내용 가운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정동우 부장은 김훈 중위 사건 보도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법원은 범죄의혹 사실의 당사자의 실명 및 사진을 공개하여 알릴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은 인정하나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보도라 할 수는 없다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언론매체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관계를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관계의 설정에 대해 굳이 말씀드리다면 저는 언론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이고 일반시민은 정보를 제공받는 객체라는 관계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강성기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여러분의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언론소송이 90년대 후반 들어 급증하였으나 언론소송과 관련된 판결이 아직 충분하게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판결이 보다 축적된다면 새로운 판례이론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은 법원의 판결경향을 타하기 앞서 최소한의 취재보도 준칙을 준수했는지 먼저 되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최근 언론소송과 법원의 판결경향을 바라보는 언론계의 정서를 많은 분들이 토로 하셨습니다. 법원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과소평가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 듯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역설하시는 언론계 참석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워터게이트사건 보도시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보도한 것은 얼마전 세상을 떠난 회장인 그레이엄 여사의 역할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계의 현실은 기자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언론사주나 언론사 내부에서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임경숙(경남중재위원) : 중재위원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각 중재부의 중재부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중재위원은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과 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언론인 어느 일방의 입장에 경도됨이 없이 화해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의 기능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분이 있었지만 제 소견으로는 지금처럼 언론소송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중재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취재일선에 계신 언론계 참석자들의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명예훼손소송으로 언론인 여러분이 상당히 위축된 듯 한데, 소송이 두려워 언론의 고유 기능을 포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 질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소신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보도에 임해주었으면 합니다.

언론소송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언론중재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박영순(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일선 기자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의 발표내용대로 기사화했으나 나중에 부혐의 처리되어 보도의 책임을 지운다면 어떻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기사화할 수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 기자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만을 가지고 보도한다면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문혀질 사건이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로 세상에 공개되어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모 차관이 집무실에서 현금을 도난

당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단순 도난 사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당사자를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했다면 이 차관의 비리를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하지만 진실에 접근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제도가 우리 언론의 풍토를 선진화시킨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제도가 강화되면서 비리관련 사건을 접하면서도 이를 기사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속, 불구속 여부가 죄의 유무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처리되면 당사자가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언론중재신청을 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중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정호(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의 기능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상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이 입법화되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건전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독 언론에 대해서만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기준이 강화된 것은 언론인이 반성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언론의 사회 감시기능이나 고발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왕정식(경인일보 사회부 기자)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도 법원이 요구하는 상당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윤재운 부장판사가 제시한 취재보도시 준칙사항은 현재 일선 기자가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작성시 소송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10건의 공공성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윤재운 (발표자) : 사법판단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죄인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부당하게 처벌되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엄격한 증거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침해의 즉각성, 광범위성, 치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10건의 공공성 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기해달라는 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언론계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보도준칙 세 가지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판결에 이른 문제된 보도를 보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불충분한 사회 전반적인 여건과 분리시켜 언론에게만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언론인의 항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언론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가지는 영향력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균상(대전중재위원) : 중재부에서는 다양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임해야겠지만 어떤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요구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재부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중재위원으로서 억울한 심정으로 토로하는 신청인의 입장과 언론의 자유를 견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등 중재부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단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일선기자들의 지적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나 언론인은 자신의 가족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신중한 보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덕(서울중재위원) :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역할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의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중재제도는 양당사자 모두에게 소송절차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선 기자들은 법원의 판단이 언론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민의 언론계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마저도 법원의 판결경향과 동일하게 여기는 언론계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소송에 대한 우려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위축되기를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언론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허광욱(광주중재위원) : 법원의 판단이 과연 엄격한 것이며 높은 수준의 상당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의문입니다. 상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사안도 많다

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에서는 취재보도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취재보도의 객관적 정황 등 언론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김진원(발표자) : 일선 취재기자들과 시각이 다른 중재위원의 견해를 접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는 듯 하여 말씀드립니다. 언론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 변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사내용 중 명백히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이 높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법리적인 부분, 예를 들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을 왜 수용하지 않느냐는 항변이 아니라 사법부가 언론계의 현실, 즉 취재보도의 객관적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의 경우, 과장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면 법원은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공식적인 발표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공보관이나 수사본부장이 발표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경찰이 여러 기자들을 상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관련 설명을 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토록 하여 기사화되는 경우 공식발표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이 법리 이전에 법원의 판단 내지 기준이 경직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 가수의 대마초 흡연 혐의 사건의 경우 아마도 제목에 ‘혐의’라는 표현만 덧붙였어도 판결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법원은 제목과 본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 가수 또 대마초”라는 다소 단정적인 제목으로 인해 당사자

의 반론까지 적극 수용한 보도내용을 함께 읽은 독자가 과연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하여 중앙일보와 서울방송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송예방을 위해서 취재매뉴얼 작성 등 취재보도의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 역시 취재매뉴얼 작성 경험이 있으나 법원이나 중재위 등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취재매뉴얼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경제계 등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의 소송 증가는 취재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신윤석(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장) : 이 자리에 참석한 일선 기자들의 중재위에 대한 비판이 중재제도가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중재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 동의하며 소송전치절차로서 그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고한 대다수 힘없는 시민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선 취재 기자들도 대단히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이며, 이와 관련한 중재위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아닌 권력을 가졌거나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탐사보도로 인해 소를 제기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회고발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뿐만 아니라 박종철 사건 보도도 전형적인 탐사보도로써 기자의 끈기와 용기가 민주화의 물꼬를 튼 의미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탐사보도에 대해 매년 풀리처상을 수여하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수가 엄

청나 우리보다 보도로 인한 언론사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학자로서 느끼는 점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자정신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사측에 요구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현철(서울방송 사건팀장) : 사내에서 특종상까지 수상한 보도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하게 되자, 담당 기자가 다시 감봉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 수사관과 동행하여 취재, 방영하여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지급을 명받은 판결입니다. 회사차원에서 어떻게 이중징대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자정신의 실종이나 용기의 부족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석순(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 저 역시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사내용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접하면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인의 입장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중재위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를 늦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매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우(동아일보 사회부장 대우) : 익명보도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소송제기가 두려워 인명뿐만 아니라 상품명도 이니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디다만 때로는 실명

보도를 해야 무수한 다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광일(서울중재위원) : 과거에는 어떤 기사를 써도 이에 대해 항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드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도된 내용으로 법정에 섰을 때 느끼는 무력감과 위축감을 언론계 선배로서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의 잣대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인 언론인도 보호하여 올바른 기사 작성을 유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정정보도가 곤란한 상황이면 반론보도라도 이끌어 법정에서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중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해도(서울중재위원) : 일선 기자들이 증가하는 소송과 손해배상의 고액화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었던 보도 이후 반론 내지 정정보도 등 후속보도를 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참작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윤재운(발표자) : 법원에서는 당연히 사후보도를 한 경우 손해배상액 결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언론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중재위원간의 언론소송에 대한 시각차를 엿볼 수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언론인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인데 법원이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의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에 의거 사법부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은 기자가 아닌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사전 판단을 하여 보도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기자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언론인이 수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원(발표자) : 이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 즉, 소송 후 대책이 아닌 예방의 차원으로 발걸음을 디디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소송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소송 후 대책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위원장 : 오랜 시간 동안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훌륭한 주제논문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주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한층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언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제기한 법원의 명예훼손소송 판결 경향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과 언론계의 현실에 대한 토로는 중재위원이나 법원이 언론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간극을 좁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상충된 권리의 해결점을 찾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열띤 토론으로 이끌어 주신 사회자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

언론소송의 실무

함 석 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목 차

- I. 서론
- II. 언론 소송의 개관
 - 1. 소장 접수 단계
 - 2. 재판의 진행 단계
 - 3. 사건의 종결 단계
- III. 심리 절차에서 문제되는 사항들
 - 1. 관할
 - 2. 명예의 개념
 - 3. 당사자
- IV. 사실 인정과 심리 절차의 진행 단계
- V. 위법성 조각 사유
 - 1. 총론
 - 2. 입증 책임
 - 3. 요건의 분설
 - 4.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 VI. 사건의 종결
 - 1. 판결
 - 2. 기타 방법에 의한 사건 종결
- VII. 결론

이 논문은 언론재판 전담부인 서울지법 민사25부 판사로 근무했던 필자가 2000년 9월 <전문법관 전문분야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로 게재한다. …………… 편집자 주

4. 사실 인정과 심리 절차의 진행 단계

1) 피해자의 특징¹⁰⁶⁾

(1) 법리

보도 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

한 경우, 약칭이나 애칭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 독자나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⁰⁷⁾

(2) 사례

대법원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①피해자의 딸인 10대 가출 소녀에 대한 기사에서 피해자의 딸과 사위의 이름과 혼인 신고지를 명시하

106) 이 부분은 이성룡, “언론과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방법과 손해배상 소송의 실무의 개관”, 『인권과 정의』 271호, 1999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 p.83 이하를 요약한 내용임.

10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공 1994, 1643].

고 피해자가 살던 마을 이름과 생활 환경, 피해자의 딸이 가출한 경위와 생활상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그 기사를 읽어본 사람 중 적어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였고,¹⁰⁸⁾ ②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 양이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아무개를 접대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방송, 모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⁹⁾

하급심 판결을 보면, ①월간 잡지 기자가 수기의 형식을 빌어 ‘일등 압박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의 수기’라는 제목의 글을 집필자를 익명으로 게재하였지만, 피해자의 아들이 그 무렵 아파트 15층의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었고, 수기에 나타난 필자의 주소, 나이, 가족 관계,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점이 피해자와 일치하며, 수기의 필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모두 교회에 다니는 점까지 일치하는 경우,¹¹⁰⁾ ② ‘프로 듀서연합회보 특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라고 표시한 경우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임은 다 알 수 있었던 경우,¹¹¹⁾ ③ 피해자의 성명, 소속 방송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없지만, ‘모 방송사 기자’라는 자막으로 직업을 특정하였고, 뉴스 앵커 경력이 있는 중견 방송인으로서 그 음성도 식별의 중요한 수단인데 음성은 변조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체격, 얼굴, 직업, 목소리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하면 다수가 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¹¹²⁾가 있었고, ④ ‘카톨릭인권위원회’, ‘무슨 무슨 사제단’이라고 일컬은 경우 ‘카톨릭’은 ‘천주교’와 같은 뜻이므로 전자는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사제단’이란 명칭의 시민 운동 단체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뿐이므로 후자는 이를 가리킨다고 본 사례¹¹³⁾가 있었으며, ⑤ 어느 사기 사건의 용의자라 하여 ‘박정희’라는 이름만 명시했으나 그 사건이 충주, 음성 지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히는 가운데 그의 근무지를 배경 화면으로 하여 적어도 일정 범위의 사람들은 위 호칭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였고,¹¹⁴⁾ ⑥ 최근에는 ‘K변호사’라는 성의 이니셜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편 이 기사(일간 신문)에는 주부 ‘L모 씨(34세, 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유산을 타기 위해서 계모 ‘H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K 변호사’가 수임하였으며 위 소송 위임과 관련하여 수임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경우 이 기사를 읽어본 독자 중 적어도 위 주부와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이니셜로 표기된 사람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와¹¹⁵⁾ ⑦ 병무 비리와 관련하여 군판사들에게 비리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하여 원고들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병무 비리 사건 재판에 관련

108) 위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109)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공1998상. 1572].

110)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2. 24. 선고 86가합3104 판결(『언론중재』, 1987년 여름호, p.174).

111) 서울지방법원 1996. 2. 15. 선고 95가합26099, 97978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p.251).

112) 서울지방법원 1996. 2. 15. 선고 95가합26099, 97978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p.251).

113)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114) 서울지방법원 1998. 11. 4. 선고 97가합37581 판결.

115) 서울지방법원 2000. 6. 21. 선고 2000가합1377 판결.

되어 있던 사람들로서는 위 기사들이 원고들에 대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한 사례¹¹⁶⁾가 있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보도와 그 이전의 상황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보도 이후의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하여 국가안전기획부가 외국 유학 시절 북한과 접촉한 혐의로 연행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라고만 보도하였으나, 다른 방송사가 같은 시간대에 방영한 방송에서는 그 신원을 명백히 밝혔고, 그 다음날 일간지에서 위 대학을 밝힌 경우 위 보도에서 지칭한 위 교수에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¹¹⁷⁾ 이 사례로 말미암아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 특정을 위해서 당해 보도만이 아닌 그 후에 이루어진 다른 언론사의 보도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¹¹⁸⁾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신청인 적격의 문제와 명예훼손 소송의 피해자 특정의 문제는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반론

보도청구권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라는 주관적인 측면 외에도 올바른 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한 객관적인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은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¹¹⁹⁾ 이러한 제도의 취지 때문에 반론 보도 신청인이 당해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신청인인 언론 기관이 그 보도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는 인정되는 것이다.¹²⁰⁾ 결국 위와 같은 판시는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¹²¹⁾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¹²²⁾

(1)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

116) 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9가합90005 판결.

11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공1997상. 489](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방송법이 적용된 사례였음). 그 사실 관계는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1995. 7. 12. 선고 95나11261 판결(『언론중재』, 1995년 가을호, p.155)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0. 선고 95카합3123 판결(『언론중재』, 1995년 여름호, p.172) 참조.

118) 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종서,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1998년 여름호, p.18 이하 참조.

119)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공1986. 417] 참조.

120) 한기택, "정정(반론) 보도 청구권 - 권리자 및 정정보도의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27호(96년 하반기 1997. 9.), p.376 이하 참조. 한편, 위 글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의 원심이 다른 매체의 실명 보도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신청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이론 구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위 글, p.378).

121)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칙으로는 보도 이후의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설시하고 있다.

122) 이 부분은 이성룡, 위 글, p.86 이하를 주로 참조하였음.

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¹²³⁾ 특히 이 부분에 관한 사실 인정과 판단 부분은 세심한 언어 선택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기준

언론사의 보도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근거를 밝히기 위해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은 독자나 시청자 등이 보도를 보고 느끼게 되는 '인상'이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문 기사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¹²⁴⁾

방송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

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¹²⁵⁾

(3) 사례

(가) 우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로는, ①기사 내용 전체는 피해자와 아무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그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기는 하나, '위자료 5억원을 받아내려 소송 남편에 청부 폭행'이라는 제목과 아울러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 폭행을", "유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아무개"라고 표현한 데 대하여 문법으로 볼 때나 일반 독자들이 받게 되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았으며,¹²⁶⁾ ② '피해자는 주사파'라는 기사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주사파'로 지목 당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고,¹²⁷⁾ ③작품이나 창작 활동에 대한 견해 표명 또는 비평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리프트 덕션 판화'를 '사후 판화'나 '오리지널 판화'인 것처럼 속여서 전시, 판매하고 있다고 이해

12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공1994. 1643] 참조.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로' 딸을 집에 가두었다」고 표현한 바는 없으나,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위와 독서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 내용이 그와 같은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124)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공1997하. 3625];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공1998하. 276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공1999상. 330] 참조.

12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공1999.11.15.(94), 229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참조.

12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공1998하. 2108].

127) 서울지방법원 1998. 9. 30. 선고 98가합18280 판결.

될 보도를 한 경우.¹²⁸⁾ ④기사에서 피해자가 직접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제목(“모 정당 운동원, 상대방 운동원 폭행 중상 입혀, 조직 폭력배 ○○과 개입 밝혀져”, “종로 선거에 조직 폭력배 개입”, “아무개 폭행한 모 정당 모 운동원은 ○○파”)과 본문의 전체 취지를 보면, 모 정당 종로지구당의 위원장이고 선거 운동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폭력배 ○○파를 동원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폭행을 가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 사례¹²⁹⁾가 있었고, ⑤“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멘트를 하면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기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촬영하여 방송한 경우¹³⁰⁾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최근에는 ⑥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회 저명 인사인 원고가 친일 행각을 하였다는 암시를 준 경우,¹³¹⁾ ⑦‘모 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 사회에 떠도는 소문을 과장, 윤색하여 사실인 것처럼 유폐시키는 자가 유명 앵커우먼의 이혼 배경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데 대하여 전국적인 배포망을 가진 피고 언론사 기사가 위 소문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 아래 위 신문사의 기사 성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모 신문사가 그런 내용을 보도하였다고만 지적하여 독자들이 그 소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한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았다.¹³²⁾

그밖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나) 전문 혹은 질문 형태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갑이 언론사에 을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을이 뇌물을 받았다고 갑이 폭로하였다.” 또는 “...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실은 경우,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나는 믿지 않지만”, “소문에 불과하지만”이라는 문구를 덧붙였을 경우에도, 적어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본다. 자신이 공표하는 형식이건 전문한 것을 공표하는 형식이건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점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¹³³⁾ 하급심 중에는 피고가 1997년 대선 직전에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사상 검증 대토론회(전국에 생중계됨)’에서 모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여 “일설에 의하면 모 단체(주로 시민운동 단체를 지칭하였음)가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돈을 굶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귀하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한 경우에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해당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

128) 서울지방법원 1998. 4. 22. 선고 96가합72242 판결.

129)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가합22315 판결.

130) 서울고등법원 1997. 9. 3. 선고 96나82966 판결(『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p.140).

131) 서울지방법원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267).

132)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284; 『언론중재』, 2000년 봄호, p.136).

13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공1985, 817].

한 사례¹³⁴⁾가 있었다.

그러나, 유명 대학 총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¹³⁵⁾가 있었다. 또한 수사 기관이나 청문회인 경우와 같이 그 질문이 행하여진 곳이 결과가 공개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곳이고, 또한 그 질문 내용이 주로 인터뷰 혹은 기자 질문에 참석한 자의 명예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¹³⁶⁾

(다) 논평 혹은 의견 표명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피해자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¹³⁷⁾

그러나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게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⁸⁾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은 이에 관한 구별 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 사례는

‘벗기기 위험 수위 ... 연극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당시 만연해 있던 연극 풍토를 비판하는 글이 논평이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었다 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예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였다.¹³⁹⁾

이에 관한 사례를 보면, ①“사설(社說)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

134)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135)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289쪽). “위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 그것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성당과 사찰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판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136) 한위수, 『사법논집』, p.434 참조.

137) 미국에서는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데, ‘fair comment rule’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박용상, 위 책, p.423 이하; 표성수, 위 책, p.129 이하; 미국 서적으로는 Dwight L. Teeter, Jr./Don R. LeDuc/Bill Loving, Law of Mass Communications - Freedom and Control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Ninth Ed.),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p.283-301 참조.

1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은 이에 관한 구별 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 사례는 ‘벗기기 위험 수위 ... 연극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당시 만연해 있던 연극 풍토를 비판하는 글이 논평이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었다 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었다.

13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한편, 논평·논설 등의 가치 평가나 의견 표시에 전제 또는 예시 등을 위하여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최근 사례로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참조.

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전체 사실을 간접, 묵시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각 사설은 비록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사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각 사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¹⁴⁰⁾가 있었고, ② 원고의 사상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디즘적 병리 현상의 증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 방법을 넘어 인신 공격에 해당하므로 의견 내지 논평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¹⁴¹⁾가 있었다.

반면, 대법원 판례 중에는 ①피해자가 제작한 누드 사진들이 일본의 주간지 ‘플래쉬(FLASH)’에 게재되자 한국의 두 월간 잡지에서 ‘한국 여대생, 연예인 누드 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또는 ‘사진 예술 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인용 게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은 ‘플래쉬’지에 우리 나라 사진 작가의 누드 사진이 실렸다는 것이고, 나아가 ‘플래쉬’지의 편집 저의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잡지의 상업성을 충족시키고자 한국 작가의 사진 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내용의 비평, 논평을 가한 것으로서, ‘플래쉬’지가 상업성의 충족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진 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비평이라고 본 사례¹⁴²⁾가 있었고, 하급

심 판례 중에는 ②기사 중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인’, ‘특권 향유에 여념이 없었던 속칭 선배, 원로 언론인들’, ‘언론 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된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다소간 침해하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사정 정책 자문 위원 위촉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증견 언론인으로서 공인인 피해자가 친정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판하기 위하여 위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¹⁴³⁾ ③“사실의 적시와의견의 표명으로 이루어진, 즉 평가를 포함한 보도인 평론이나 해설은 공공의 사항에 관한 공정한 평론인 한,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또한 이로써 피평론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며, 평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면서 김일성의 얼굴이 그려진 걸개 그림을 내건 의도나 위 걸개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뜻(언론 민주화, 민주 언론의 역할, 분단 극복과 통일 염원)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편파적인 견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의 의견으로 성립될 수 있는 사상의 표현이고 공정한 평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¹⁴⁴⁾ ④피해자가 국민학교 5학년의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문익환 목사의 방북 문제, 지하철 노조의 파업 사태, 남북음악회 개최 여부, 대통령에 관하여 토론을 시킨 것을 비판한 방송에 대하여, 피해자의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의

140)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

14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14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공보 1990. 2382].

14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5. 선고 98가합15397 판결(『언론중재』, 1990년 겨울호, p.167).

1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0. 10. 12. 선고 98가합15397 판결(『언론중재』, 1991년 봄호, p.161).

보도가, 비록 피해자의 입장과 교육 활동이 피해자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어떤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 기관의 평론의 자유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사례¹⁴⁵⁾가 있었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미국에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¹⁴⁶⁾ 이후 그들 판례에 확대 적용되어 온 이른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진실 등의)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 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위 법리가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¹⁴⁷⁾는 점이다.

(라) 만평 등

만평, 시사 만화, 캐리커처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¹⁴⁸⁾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한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 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 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사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¹⁴⁹⁾

희화적인 만화나 만담은 주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과장된 비판을 다루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비방만을 일삼을 목적 등이 엿보이지 않는 한은 비교적 넓게 면책 범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⁵⁰⁾

(마)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가 전체로서는 진실하여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표제(제목)가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줄 경우에 표제만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문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

14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2. 20. 선고 98가합15397 판결(『언론중재』, 1992년 여름호, p.161).

146) 376 U.S. 254(1964).

147) 위 New York Times 사건과 그 이후 미국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는 국내외에 수많은 글들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평을 담은 비교적 최근의 문헌으로는 T. Barton Carter 외 2인 공저, 위 책, pp.100-173 참조. 한편 미국에서의 '공인'의 개념에 관해서는 Dwight L. Teeter 외 2인 공저, 위 책, pp.243-255 참조.

148) 이러한 부분은 프라이버시 혹은 인격권 침해로서 논의 가치가 더 많을 것이다.

14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위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가 있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거나 독자들이 만평을 보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다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서울지방법원 1998. 8. 12. 선고 98가합15397 판결(『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 p.154) 참조.

150) 이 부분에 관한 독일의 입장에 대하여는 박용상, 위 책, 114쪽 이하 참조. 한편,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원고의 사진을 비하적인 문구와 함께 시사 만평에 게재한 경우에는 초상권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다. 민철평등법원 1997.12.5. 선고 21U3698 1997 판결 참조(10,000마르크 인용, 『언론중재』, 1999년 겨울호, pp.142-144 참조).

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 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 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고,¹⁵¹⁾ 하급심 중에도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장, 윤색된 제목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¹⁵²⁾가 있었다.

반면, 피고 발행의 일간 신문 기사에 ‘기사 날조’라고만 제목에 표시함으로써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 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 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 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¹⁵³⁾와 주간지에 대한 광고 중 ‘모 국회의원 재산가인가’라는 표제의 게재만으로는 그 국회의원이 재산가라는 인상을 심어 주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¹⁵⁴⁾가 있었다.

독자들은 우선 표제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 내용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표제부터 읽게 되는 결과 표제에서 일정한 인상을 얻은 뒤 그 인상을 기초로 본문 내용을

읽어나가게 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례들은 이 문제에 관한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사 편집 책임자가 제목을 선정하여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자가 특별히 요구하여 제목 선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언론사와 편집 책임자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사실 인정에 주의할 점들

(1) 당사자의 지위

우선 사실 인정의 첫머리에는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인정 부분은 원고에게는 피해자의 특정과 사회적 지위, 가족 관계 등 위자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고, 피고에게는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 보도의 관여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핵심이 된다.

(2) 보도내용의 첨부

이는 언론매체별로, 그리고 동일한 매체라 하더라도 보도 형태나, 사실이나 논설, 기고, 투고, 수기 형태나, 광고 형태나 등으로 그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소개한다.

(가) 주요 일간 신문의 경우

출판물 등 지면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매체는 그 내용을 담은 신문 기사나 인터넷 검색 자료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서증의 증거 조사 방법에 따라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된다. 따

15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공1998하, 2766].

152) 부산고등법원 1998. 7. 24. 선고 96나8789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6집, p.214).

153) 서울고등법원 1994. 1. 21. 선고 93나22236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3집, p.151).

15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4. 선고 91가합82923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2집, p.215)가 있었다.

라서 이에 대하여는 서증 인부 절차가 필요하다.

하나의 기사를 놓고 볼 때 대체로 제목(본문 내용의 핵심을 압축 표현하여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부분. 이를 대체목이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¹⁵⁵⁾¹⁵⁶⁾, 부제목(제목에서 부각된 내용을 조금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하는 부분), 소제목(본문이 독립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거나 복잡한 내용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제목을 붙인 부분) 및 본문,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 및 그 설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목과 부제목은 본문 내용 중에 부각시키고, 기사의 본문 내용은 분량이 많아 별지로 첨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신문 기사는 게재된 면(1면, 2면/정치면, 사회면/경제 섹션, 스포츠 섹션)과 그 면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이는 독자들이 그 기사로 받게 되는 인상이나 중요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아울러 정정보도를 명할 때 내용, 게재면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 역시 기사와 함께 시각을 자극하여 독자들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나) 방송의 경우

방송은 지면보다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이 녹취록의 형태로 현출되거나 인터넷에서 발췌한 보도 내용이 서증으로 제출되고, 더 나아가 세밀한 사실 인정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디오 테이프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 비디오 검증을 위해서는 그 내용을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녹취록을 준비시키는 것이 통상이다.

방송의 경우에는 영상, 음성, 자막과 배경 화면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입체적인 화면이 머리에 떠오르도록 사실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방송에서 사용되는 정도로 자세하게¹⁵⁷⁾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렇게 할 경우 불필요하게 판결의 지면을 차지하게 되고 사실 인정과 판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방송의 흐름에 따라 자막과 배경 화면은 간단히 설명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음성 부분은 실제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별지로 첨부하게 된다.

아울러, 방송 시간대와 보도가 전체 방송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방송된 순서도 상세히 실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역시 판단 부분, 특히 정정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취재 경위에 관한 사실 인정

명예훼손의 실체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기초 사실(진실성에 관한 상당한 이유)의 파악을 위해서는 취재원 혹은 정보원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그 취재 경우에 관하여도 심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개 재판으로 인하여 취재원이 드

155) 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에 나온 원심 판결 설시례 참조.

156) 기사 상단 좌우에 제목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 머릿글을 사용하기도 한다.

157) 이에 관하여는 윤재홍, 위 책, pp.304-315에 방송의 'cut-sheet' 형태를 참조하기 바람. 한편, 대전고등법원 1998. 8. 7. 선고 97가합8407 판결에서는 '구분(본방송, 송고 내용, 시작, 끝의 구분)', '배경 화면', '자막', '대사', '출연'으로 항목을 나눈 표를 사용하여 별지를 첨부하였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pp.95-96 참조).

러나는 경우 취재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어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¹⁵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보통 취재 기자 혹은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나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하거나, 기사 작성 경위에 관한 기자들의 인증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증거로 삼는다. 취재 경위, 특히 필요한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에 관하여는 취재 기자 등만이 아는 사실이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 조사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청 등을 통하여 비밀 녹음 혹은 녹화를 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경우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보도 후의 정황

명예훼손이 되는 보도가 있는 후 해당 언론사가 취한 보도 후의 정황은 위자료 산정 자료나 정정보도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보도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였는지, 자발적으로 반론 혹은 정정하는 취지의 보도를 다시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시기와 방송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실 인정이 필요할 것이다.

IV. 위법성 조각 사유

1. 총론

언론 사건에는 다른 민사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이 진행된다.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와 판례와 학설이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그것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자세하게 실시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¹⁵⁹⁾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가 민주 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158) 박용상, 위 책, pp.134-135에서는 취재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59) [공1988, 1392].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할 것이다.¹⁶⁰⁾

위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 사건은 '명예'의 개념부터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 즉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 사이의 이익 형량이라는 논리에 따라 법리와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실제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항변 사실의 입증에 관한 부분이 심리의 중심을 이루고, 판단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본다.

2. 입증 책임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¹⁶¹⁾

이러한 입증 책임의 원칙은 판례와 학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입증 책임의 분배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언론 사건에서는 앞서 본 두 가지 가치의 이익 형량을 고려하여 분배되어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과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주로 취재 과정에서 요구되는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에 관한 것으로 그 입증 사항이 언론기관의 지배 영역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요건은 비교적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요소로 보도 자체로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사유도 그 부존재를 피고인 언론기관이 입증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고 보면, 위와 같은 판례와 학설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진실'의 입증을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¹⁶²⁾

3. 요건의 분설

1)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1) 법리

위법성이 조각되면 명예훼손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의 표현이나 체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려 있으나,¹⁶³⁾ 판례는 대체로 ① '공공의 이익' 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¹⁶⁴⁾ 일

160)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는 비단 언론 기관에 대하여서만이 아니고, 국가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국가 기관에 대한 것으로는 판례로는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국제형 행정상 공표사안 등 참조).

16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공1998상. 1575];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162) 한위수, 『사법논집』, pp.423-424 참조.

163) 이들 견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광범, 위 글, p.145 이하 참조.

164) 이 표현은 우리 법문상 용어가 아니고, 일본 형법 제230조의 2 제1항과 이에 대한 일본 재판소의 해석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지적에 관하여는 이광범, 위 글, p.151 이하 참조.

것, ②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으로 나누고 있다.

대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⁶⁵⁾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작은 사회에 관한 사실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공표할 때에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¹⁶⁶⁾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로지'라는 요건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사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하여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¹⁶⁷⁾

(2) 사례¹⁶⁸⁾

(가) 긍정적인 사례

우선 대법원의 사례를 보면, 유명 여배우가 불법 유학을 알선하여 사기를 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한 사례¹⁶⁹⁾가 있었고, 하급심 판례를 보면, ①공영 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그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 지휘한 책임 프로듀서인 원고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 및 목적의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하였고,¹⁷⁰⁾ ②시민 단체들의 재원 조달 방법의 투명성에 관한 의문 제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했으며,¹⁷¹⁾ ③정당의 부총재겸 지구당 위원장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관련된 것이고, 그 내용도 그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정한 선거 운동을 해쳤다는 것인 경우,¹⁷²⁾ ④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 사회의 동향을 게재하면서 "피해자가 충성 서약을 했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 사후의 북한에

16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16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167) 이는 이미 형사 관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던 바이고, 학설 역시 거의 일치되어 있다. 민사 관례로는 위 각주 165에서 든 관례들 참조.

168) 이 부분은 이성룡, 위 글, 92쪽 이하를 요약한 것임.

169)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공1996하, 1973].

170) 서울지방법원 1998. 9. 30. 선고 98가합18280 판결.

171)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172)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가합22315 판결.

대한 전망과 북한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을 알게 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¹⁷³⁾ ⑤에당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비난받아야 할 행태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 제작된 것이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우연히 취재의 대상으로 포착된 것 뿐으로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가 공적 인물(방송사 중견 간부)인 경우,¹⁷⁴⁾ ⑥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중 일부(유명 대학의 총장)의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¹⁷⁵⁾ ⑦테이프나 교재의 판매업자들이 대학교 신입생들을 상대로 부정한 판매 수법을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일 때¹⁷⁶⁾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나) 부정한 사례

① 범죄 보도 관련

대법원은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경우 일반 국민들이 그 신원까지 알아야 할正当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

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익명 보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¹⁷⁷⁾ 이에 따라 원고 등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正当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등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正当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¹⁷⁸⁾

하급심 판례로는 ①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용의자’로 표현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가 있었고¹⁷⁹⁾, ②북한군 접촉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하여, 그 범죄 혐의를 확장하여 당시 의문사의 의혹이 제기되던 상관의 살해범으로까지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과 사진, 인터뷰 장면 등을 함께 실어 보도한 경우 공공성을 부인한 사례¹⁸⁰⁾가 있었다.

② 기타의 경우

대법원은 ①원고를 악덕 변호사로 표현한 수기 중에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 공격의 표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¹⁸¹⁾ ②10대 가출 소녀에 대한 기사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경우¹⁸²⁾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부정하였고, ③면접 여대생

173) 서울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6나39389 판결(『언론중재』, 1998년 봄호, p.142).

174) 서울고등법원 1997. 9. 3. 선고 96나82966 판결(『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p.140).

175) 서울지방법원 1997. 5. 2. 선고 95가합94047 판결(『언론중재』, 1997년 여름호, p.176).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98. 1. 21. 선고 97나23466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p.274).

176) 서울지방법원 1997. 4. 16. 선고 96가합23110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181쪽).

17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공1999상, 330]. 특히 위 두 판결에서는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178) 위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79) 서울지방법원 1998. 11. 4. 선고 97가합37581 판결.

180) 서울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30768 판결(확정).

18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18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공1994, 1643].

을 희롱하였다는 등의 보도로 변호사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한 사안에서, 그 보도 행위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¹⁸³⁾

하급심 중에는 ①원고의 남성 편력과 여성으로서의 부정한 생활 태도에 관한 기사가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만한 기사임은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라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¹⁸⁴⁾가 있었고, ②피해자의 과거 전력과 행적에 대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피해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 보도의 중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¹⁸⁵⁾에 이 요건을 부정하였다.

2) 보도의 진실성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 내용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릇 사건의 보도에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하거나 다소 과장하거나 복잡한 사실 관계를 알기 쉽게 단

순하게 만드는 예가 있는데, 이는 보도 관계자의 문필,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

3)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¹⁸⁶⁾

(1) 법리

앞서 본 대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르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¹⁸⁷⁾ 따라서 풍문이나 억측 따위에 터잡아 보도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실임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행위자가 누구인가(신문인가, 잡지인가, 일간인가, 월간인가), 기사의 성격(신속이 필요한 보도 기사인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기획 기사인가)이 어떠한가, 취재원이 믿을 만한가, 진실의 확인이 쉬운 사항인가, 피해자에게 확인하였는가(적어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

183)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18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가합52649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2집 p.147).

185)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720 판결.

186) 이 부분 역시 이성룡, 위 글, 96쪽 이하를 요약한 것임.

187) 이러한 경우에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와 동일하게 본다면 명예훼손이 횡행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항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운다면 언론사에 너무 가혹하여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대법원은 절충설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언론은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기사를 신개 마련이고, 기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또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취재 결과보다는 제3자에 대한 취재 결과를 기사로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 관례 이론 덕분에 언론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 점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사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오히려 허위임이 드러날 것이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여부는 바로 이 점의 유무에 달려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룡, 위 글, 96쪽 註 27 참조.

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¹⁸⁸⁾

그 판단 시점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하여야 한다.¹⁸⁹⁾

이 부분은 사안별로, 매체별로 매우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례 연구와 축적을 통하여 기준을 익혀 나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요건의 체계상 문제점에 관하여서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이 이 요건이 만사에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밝힌 이래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의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의 태도이다.¹⁹⁰⁾ 그러나, 위 상당성의 요건을 고의, 과실의 판단 문제로 보는 관례들이 있었다.¹⁹¹⁾ 상당성 판단이 주로 언론 기관이 필요한 확인 의무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도하였는지가 다투어지기 때문에 그 판단에 관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언론 기관의 고의, 과실의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원칙으

로는 이 문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 요건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¹⁹²⁾

(2) 사례

(가) 긍정적인 사례

관례를 보면, 언론 기관이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①일간 신문사 기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 사실을 알게 되자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다른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와 그 피의 사실이 요약·정리된 자료를 배포받고 검사가 발표하는 수사 경위를 들은 다음, 이러한 취재 자료에 기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했던 사안에서, 검사의 발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 사실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작성·게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¹⁹³⁾ ②일간지에서 국세청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188)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189)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공1996하, 2776].

190) 위 판결 후로도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공1996하, 197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공1996하, 329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공1997하, 3279] 등 참조.

19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공1995, 2496]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공1998상, 865]에서는 원심(서울고등법원 1997. 4. 16. 선고 96나36700 판결)이 “이는 위법성이 결여한 것이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한 데 대하여, “(상당성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을 실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상고이유는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판시하였다. 그밖에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공1998상, 1572]도 상당성 판단 부분을 고의, 과실의 문제로 보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상당성 문제를 고의, 과실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최고재판소 昭和41. 6. 23. 판결(民集20卷5 1118쪽) 이후의 관례 태도라 한다. 자세한 설명은 五十嵐清, 위 책, 33쪽 이하 참조.

192)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요건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재형, 위 글(註 78에서 인용), 650-651쪽 참조.

19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공1999상, 330].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자”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82명의 명단을 담아 배포한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사안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 기관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¹⁹⁴⁾가 있었으며, ③일간지에서 서울 경찰국의 보도 자료에 따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에 피해자가 전과 7범이라는 허위 사실이 들어 있었던 경우라도 언론 기관의 책임은 부정된 사례¹⁹⁵⁾가 있었다.

한편,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나 방송에 관하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을 다룬 방송 드라마가 단순히 억측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암살범 안두희의 시인, 국회 소위원회 조사 보고서,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기한 것이라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¹⁹⁶⁾

그밖에, ①김일성의 장례식과 피해자가 참석한 위로연에 참석한 사람에게서 위 사실을 취재한 점, 다른 면에서 그 취재원이 믿을만 하였던 점, 피해자의 발언이 북한에서 이루어진 점, 평소 피해자의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행태를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었고,¹⁹⁷⁾ ②신문사가 “피해자가 장애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회비를 착복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장애자 30여 명이 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하여 담당 경찰관 앞에서 장애자들 진술의 개략을 듣고 농성 현장에 찾아가 그 주장을 들은 후 피해자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장애자들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작성한 경우에, 일간 신문으로서 신속을 위하여 그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¹⁹⁸⁾가 있었다.

(나) 부정한 사례

주로 범죄 사건 보도에 관한 사례가 많았는데,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비공식으로 수사 당국을 취재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 관계자나 소문에 따라 독자적으로 취재 보도하면서 정확한 기사를 작성함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른 보도라도 발표를 오해하거나 과장, 각색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첨가하여 범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사례를 보면, ①10대 가출 소녀에 대한 기사인데, 피해자의 딸이 가출하여 동거 중 임신하게 되자 피해자가 ‘강제로’ 딸을 집에 데려가고 ‘일방적으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과 달리 표현한 사안에서, 담당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19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1가합43911 판결(하급심 관례집 1992년 1권, 172쪽), 상고심인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공1994, 194]에서는 국세청장 등의 주의 의무만이 문제되었다.

195)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4. 29. 선고 87가합3739 판결(『언론중재』, 1988년 가을호, p.187).

19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1998상, 865]. 이는 東京高裁 昭和 54. 3. 14. 高民集32卷1 33쪽(判例時報 918호 21쪽)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였다.

197) 서울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6나39389 판결(『언론중재』, 1998년 봄호, p.142).

198)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1. 선고 82가합4734 판결(『언론중재』, 1984년 여름호, p.174).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¹⁹⁹⁾ ②일간 신문사가 다른 언론의 보도 내용(‘여배우 불법 유학 관련 혐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불법 유학을 알선하여 사기를 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²⁰⁰⁾ ③지방 일간지에서 피해자들이 ‘김정일에게 남북간 교류성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를 보냈다고 왜곡하여 보도하였고, 통일원 관계자의 “통일원에서 이에 대하여 경고 결정을 하였다.”는 비공식의 말과 동료 기자들의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내사 중이다.”는 말만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달리 보강 수사를 계속하였다고 보도한 경우(이 사안에서는 피고들이 진정으로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검토 내지 결정’ 또는 ‘수사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점에 대한 입증조차도 부족하였던 경우였다.),²⁰¹⁾ ④보도 자료에는 폭행, 업무 방해, 감금 사실밖에 없고 수사 기록까지 열람하였으면서도, 일간지 기자가 ‘피해자가 춤바람이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보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확인도 아니한 채 수사 경찰관과 비공식으로 만나 고소장을 입수하여 “피해자가 춤바람이 나서 간통까지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다.”고 보도한 경우²⁰²⁾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범죄 보도 이외의 사안을 보면, ①월간 잡지사가 원고를 악덕 변호사로 표현하는 수기 형태의 글을 실어 보도한 사안에서, 잡지사의 경우 신속성의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의 일부만 수정한 경우,²⁰³⁾ ②“피해자가 신고 없이 사습 축사를 신축하였다.”고 보도하였는 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면장한테서 “고급 간부인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제보자인 동네 이장의 말만 듣고 보도하였고, 그 기사의 표현 형식도 일응 인용 보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기자가 실제로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지득,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당국에 모종의 조치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경우,²⁰⁴⁾ ③실명을 밝힌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는 일반 청취자들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방송에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 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충

19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공1994. 1643].

20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공1996하. 1973].

20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공1998하. 2766].

20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공1998하. 2108].

20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공1988. 1392].

20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공1997하. 3279].

분한 조사 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므로, 이러한 확인이나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면, 방송사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²⁰⁵⁾ ④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 양 접대 사실 보도 사건'이라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가명이 아닌 실제 신원을 검토할 수 있었고,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경우²⁰⁶⁾에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부인할 것은 통신사(현재 연합뉴스와 같이 기사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보도한 경우와 관련하여, 통신사와의 송수신 및 전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통신을 전제할 때에는 크레디트를 붙여 그 전제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크레디트를 붙이지 아니한 기사에는 보도 신문사가 책임지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제공받은 기사에 크레디트나 그 전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당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방 일간지 발행 회사가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보도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당성을 부인한 사례가 있었다.²⁰⁷⁾

4.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 행위의 원칙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외에 불법행위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예를 들면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정에서의 발언 등 업무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보도 행위 등에 관한 이론도 그대로 적용된다.²⁰⁸⁾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가치가 충돌한 경우, 어떠한 가치를 더 우선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만한 사례가 있었다.

1)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²⁰⁹⁾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 기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2]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중

205)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공1998상, 1575].

206)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공1998상, 1572].

207) 서울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95나41965 판결(『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 p.181).

208)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한위수, 위 글, p.431 이하 참조.

209) [공1996하, 2983].

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

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²¹⁰⁾

종교와 관련된 보도에 관하여서는 위 관례를 반드시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참고로 하고 싶은 말은 헌법 제22조는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문·예술의 자유에 관한 논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경우에도 위 관례가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²¹¹⁾ 앞으로의 판례가 기대된다. □

21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공1997하. 2882]에서도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

211) 특히, 학설이 분분하고 격한 논쟁이 오간 학문에 관한 잡지나 방송상의 표현 행위에 대하여 위 관례를 참고하자면 비교적 넓은 범위의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의사공시권에 대한 규범주의적 관점

I. 서론

모든 기본권적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근원적 자유가 바로 의사공시의 자유이다. 때문에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의사공시의 자유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더욱이 의사공시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됨으로써 바로 기본권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적 의사공시의 자유는 이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된다. 실제로 헌법을 운용하는 국가권력에 따라 의사공시의 자유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공시의 자유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수반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헌법에서 기본권적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 의사공시권이 헌법관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규범주의적 헌법관을 중심으로 의사공시권의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사공시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의사의 공시적인 성격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헌법에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이론적 배경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특징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핵심인, 헌법에서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의미를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하여 석명(釋明)하고자 한다.

이진구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중앙대 신문학과, 동 대학원 졸업
- 독일 뮌스터대 언론학과 박사
- 현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저술 : 『정보사회와 매스컴』, 『세계방송의 역사』 등 다수

II. 의사의 공시성(公示性)

의사공시권(意思公示權)이란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유(öffentliche Äußerungsfreiheit)를 기본권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보사회에 생존하고 있는 인간에게 이러한 의사공시권은 공기의 필요성과 같이 필수적으로 향유하여야 하는 기본권적 자유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공시권은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공기의 특성과는 달리 오히려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향유의 가치를 갖게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의사공시권은 상대적 관계를 규범하고 있는 사회적 약속인 헌법에 의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구현되는 자유권에 속한다.

헌법에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의미가 상이한 헌법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공시권을 이루는데 핵심개념이 되는 의사(Meinung)의 공시성(öffentlichkeitscharakter)을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사가 공시적인 성격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의사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의사가 공시성을 갖고 있음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생래적 욕구인 구지욕과 확산욕 간의 상보적 순환성 때문에, 의사가 공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파악한다. 둘째,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에서 공권적 주관성이 자아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의사가 공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파악한다. 의사의 공시성에 대한 이러한 파악은 곧 의사공시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

1. 생래욕(生來慾)의 상보적 순환성 (相補的 循環性)

의사(意思)가 공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인간의 구지욕(Wissensdurst)과 확산욕(Verbreitungsdurst)이 천성적으로 드러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구지욕(求知慾)과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확산욕(擴散慾)이 생래적인 욕구로 양립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본래 의사란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견해를 갖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판정하고, 입지를 결정하고, 관점을 갖는 정신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과정적 결과이다.¹⁾ 즉 의사란 자신의 마음밭에 세우고 간직하려는 뜻을 능동적으로 가꾸는 정신 내적인 활동이 결집된 무형적 생동체이다.²⁾ 이러한 정신 내적 활동은 인간의 구지욕과 확산욕의 천성적인 발로에 의해 부단히 상보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비록 의사가 개인의 정신 내적 활동의 소산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의사는 정적이거나 고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크게 내적 의사(innerliche Meinung)와 공적 의사(öffentliche Meinung)로 나뉠 수 있다. 내적 의사(內的 意思)는 자신 이외로 공표되기 직전의 개인적인 의사로, 이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신 내적 활동의 전개로 그칠 뿐, 자신 이외의 대상에게 자신의 정신 내적 활동의 내용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의 의사를 말한다. 이와 반면에, 공적 의사(公的 意思)는 자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의사로, 이는 자신 내에서 전개된 정신 내적 활동의 내용을 자신 이외의 또 다른 개인들과 공유하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의사를 말한다.

1) von Mangoldt/Klein(1985): Das Bonner Grundgesetz, S 238. / BVerfGE 30, 33, 336.

2) 이진규, "의사공시자유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고찰", 『동아논총』제29집, 동아대학교, 1992, p.127.

그렇다고 단순히 의사의 성격을 내적 의사는 정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에 공적의사는 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무형이지만, 그는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적 결과로서의 생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의사는 완결된 형태로 규정화되거나 영원불멸의 내용으로 고착화될 수 없다. 항상 의사는 또 다른 실존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생동적인 정신활동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비록 의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형성될지라도, 그 의사형성은 이미 동적인 성격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공개성(öffentlichkeit)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의사 그 자체는 부단히 형성되어 가는 생동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사가 공시성을 갖고 있음을 논증하기 위하여, 생래적 욕구인 구지욕과 확산욕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사상, 그리고 이론에서 어떤 연관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의 천성적인 구지욕 때문에, 의사가 공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토니스(Ferdinand Tönnies)는 인간을 다른 동물에 비하여 월등히 주위환경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천성을 가진 구지욕의 동물로 이해했다. 이 같은 인간의 구지욕은 이미 기원전 2세기 경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화자(話者/Adressanten), 내용(Inhalt), 청자(聽者/Adressaten)의 단계로 나누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Rhetoric)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발신자, 내용, 미디어, 수용자의 단계로 나누는 매스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요기능인

감시기능, 지도기능, 사회화기능, 오락기능 등도 역시 주위환경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인간의 천성적 구지욕이 전제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화자(話者)에 대한 관심은 스피치의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최고의 화술을 발휘시키는 데 집중한다. 이 때 화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연설이나 웅변이다. 화자의 연설과 웅변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위환경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청자(聽者)의 구지욕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내용에 대한 관심은 정확하고 세련된 표현기법을 연마시키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내용구성에 대한 노력은 청자가 바라는 구지욕의 내용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청자(聽者)에 대한 관심은 숙련된 화술로 최적의 내용을 전달하여 최상의 효과를 성취하는 데 집중된다. 효과성취에 대한 기대는 청자의 구지욕이 발동할 때만이 극대화될 수 있을 뿐이다. 청자의 구지욕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청자의 효과는 발생될 수 없다.

이렇게 기원전에 발전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도 인간의 구지욕은 수사학의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화자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라도 그 같은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청자의 욕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공허한 일방적 작위에 불과할 뿐이다. 즉 인간의 구지욕이 전제되지 않는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한낱 무의미한 단계적 진행에 불과할 뿐, 결코 그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도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지욕은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즉 발신자(커뮤니케이터), 내용(메시지), 매체(미디어), 수용자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인간의 천성적인 구지욕이 전제되지 않거나 수반되지 않으면, 그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한낱 생명력 없이 진행되는 단순한 기계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될 뿐이다. 따라서 내용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전달되는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서의 미디어, 기대적 효과의 대상인 수용자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생동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구지욕이 그들 간의 추동적 요인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생물체간의 의미전달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통현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커뮤니케이터가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완벽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수용의 주체인 인간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을 알고자 하는 구지욕을 원천적으로 갖지 않는다면, 그 과정은 감정이입의 반향이 전혀 기대될 수 없는 무생물과의 기계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살아있는 인간의 생래적인 구지욕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의미도 생명력을 갖게 될 뿐이다.

다음은, 인간의 천성적인 확산욕 때문에, 의사가 공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사람은 아

직 기존의 의미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천부적인 전달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신 이외의 대상에게 표명하고자 한다. 말과 글 또는 미디어와 같은 전달수단을 구사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는 최소한의 전달방법인 울음과 웃음 또는 몸짓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다. 이러한 갓난아이의 의사표현이 비록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이지만, 바로 그와 같은 표명과정에서 인간의 천성적인 확산욕(Verbreitungsdurst)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인간의 확산욕은 기존의 의미전달체계에 대한 인지와 적응이 없어도 자신의 생존적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생물체로서의 생존적 의미를 갖게 하는 인간의 확산욕은 밀턴(John Milton)의 의사공시의 자유에 대한 사상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다. 즉 밀턴은 자신의 의사공시의 자유관을 피력한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³⁾ 의사공시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은 사상의 공개시장(The open market place of ideas)과 자율교정과정(self righting process)이 제대로 기능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주창했다. 바로 그러한 사상의 공개시장과 자율교정과정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확산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인간의 천성적인 확산욕이 발동되어야만 비로소 사상을 피력할 공개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형성된 공개시장에서 만이 사상 그 자체가 자유롭게 취사선택될 수 있고, 그 같은 취사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율적인 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의 어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파구스(Areopagus)라는 언덕 위의 최고재판소를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되었고, 일반적으로 대법관의 의미를 갖는다. 밀턴(John Milton)이 국회에 제출한 의사공시의 자유에 대한 의견서의 표지명으로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를 사용한 이후, 지금은 아레오파지티카는 곧 의사공시자유 의 수호자라는 의미로 통용 되고 있다.

수용자와 발신자간의 위상치환의 잠재성을 설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인간의 확산욕이 의사의 공시성을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마스크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수용자(Adressaten)가 곧 잠재적 발신자(potentielle Adressanten)이고, 동시에 발신자(Adressanten)가 곧 잠재적 수용자(potentielle Adressaten)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즉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항상 수용자적 입장에만 있지 않고,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반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발신자의 입장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크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발신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고착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간에 치환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비로소 그 스스로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즉 발신자와 수용자는 항상 잠재적으로 서로가 상대적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는 상대적 관계를 갖고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청자(聽者)와 마스크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용자가 갖는 현재적 구지욕을 반대로 화자(話者)와 발신자가 갖는 잠재적 확산욕으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청자와 수용자의 구지욕은 곧 화자와 발신자로서의 확산욕을 실현하기 위한 잠재적 욕구가 된다는 사실이다.

수용자와 발신자간의 위상치환의 잠재성은 고전적 미디어효과이론인 "2단계 유통이론(the Two-step Flow Theory)"⁴⁾과 "침묵의 나선이론

(Schweigespirale Theorie)"⁵⁾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우선 한정효과이론에 속하는 "2단계 유통이론"에서 수용자와 발신자간의 위상치환의 잠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단계 유통이론의 핵심적인 관점은 마스크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최초의 정보원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여 발생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그 최초의 정보원을 접한 영향력 있는 수용자가 발신자가 되어 그 동일한 메시지의 내용을 또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할 때 훨씬 강력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1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1차의 메시지를 수용한 1차의 수용자가 2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1차의 메시지를 1차의 수용자가 2차의 발신자가 되어 2차의 수용자에게 전달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어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2차의 발신자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견지도자들이며, 이러한 의견지도자와 접촉하는 대중은 원자화된 수용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2단계로 유통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1단계의 수용자가 2단계의 발신자로 역할할 수 있는 위상치환의 잠재성 그 자체에서 확산욕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 확산욕의 내용을 구성하는 의사는 공식적인 성격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수용자와 발신자간의 위상치환의 잠재성은 최근에 강효과이론으로 각광받는 노엘레-노이만(Elisabeth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이론"에서도 역시 파악된다. 즉 여론형성 과정에서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가 미디어에 의해

4) Burkart, Roland(1995): Kommunikationswissenschaft, Grundlagen und Problemfelder, Wien/Köln/Weimar: Böhlau Verlag, pp. 199-206. / Burkart, Roland(Hg.)(1992): Wirkung der Massenkommunikation, Theoretische Ansätze und empirische Ergebnisse, 3. Auflage, Wien: Braumüller, <Renckstorf, Karsten: Zur Hypothese des "Two-step Flow" der Massenkommunikation.> pp. 40-56.

5) Noelle-Neumann, Elisabeth, Die Schweigespirale, öffentliche Meinung - unsere soziale Haut, Frankfurt a. M.: Ullstein, 1982, pp.13-22, 84-95.

지지되지 않는 분위기를 인지하면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의사가 미디어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분위기를 인지하면 그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가 지지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면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마치 빨고동의 공기 안쪽으로 움추려 들어가듯이 한없이 찾아들어 침묵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가 지지되고 있음을 인지하면 마치 빨고동의 입구 바깥쪽으로 자신의 의사를 갑자기 강력하게 표명하게 된다. 바로 이 같은 상반된 나선으로의 입장이동이 침묵하고 있는 수용자를 강력하게 표명할 수 있는 잠재적 발신자로 뒤바뀌 놓는다. 더욱이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언급되는 침묵(Schweigen)이란 결코 생명력 없이 지속되는 정적인 침묵(dead silence)이 아니고 오히려 곧 일어날 표명행위를 내포한 동적인 침묵(lebendiges Schweigen)을 뜻한다. 즉 동적인 침묵을 감내하고 있는 과정 그 자체는 의사표명의 동적인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잠재적 과정이 된다. 이렇게 침묵의 나선이론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역시 현재의 침묵적 수용자가 미래의 강력표명적 발신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상치환의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확산욕의 내용을 구성하는 의사는 공시적인 성격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의사의 공시성을 밝혀내기 위하여, 인간의 구지욕과 확산욕을 수사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학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연계시켜 보았고, 아레오파지티카적 의사공시의 자유에 대한 관점 그리고 2단계유통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에서는 발신자와 수용자간에

일어나는 위상치환의 잠재성과 연계시켜 보았다. 그 결과, 의사는 생동적인 공시성을 갖고 있으며, 그 생동적인 공시성은 주위환경에 대한 인간의 구지욕과 확산욕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이러한 구지욕과 확산욕은 서로간에 상호보적 순환의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의사는 생래욕으로서의 구지욕과 확산욕 간에 상호보적 순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동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의사 그 자체는 본래부터 공시성(öffentlichkeitscharakter)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

의사의 공시성은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에서 요구되는 공권적 주관성에서도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공권적 주관성은 학교 또는 언론매체와 같은 영조물(Anstalt)이 갖는 핵심적인 특성이다. 영조물(營造物)은 본래 공익목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인 수단이 총체화된 공적 주체이다.⁶⁾ 학교와 언론매체는 이러한 영조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에게서 사적인 주관성이 작동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와 언론매체는 그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주관성이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왕성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독특한 영조물이다.⁷⁾ 특히 언론매체는 구성원 각자의 의사공시행위가 결집되어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주관성이 어느 영조물에서 보다도 크게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언론매체는 조직과 기능의 특성상 사적인 주관성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즉 언론매체는 공적인 성격을 토대로 주관성을 갖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생동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

6)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I, 1969, p.269.

7) 이진구, "방송 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제16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pp. 143-144.

라서 언론매체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취재·편집·편성·제작 등과 같은 일련의 매체공시행위(미디어커뮤니케이션)는 공권적 주관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권적 주관성은 곧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성격임과 동시에 권리의 내용이기도 하다.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은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를 주도하는 주체와 그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성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매체공시행위의 주관성은 인권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의미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헌법에서 매체공시행위의 주체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일반적인 “모든 국민”⁸⁾ 또는 “모든 사람”⁹⁾이 될 뿐이지, 결코 출신·신분·종교·인생관 등에 의해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 동시에 그 같은 주체에 의해 주도되는 매체공시행위의 내용은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전적으로 구성될 뿐이지, 결코 주위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거나 특정한 가치를 내포해야 할 의무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매체공시행위에서 주체의 형성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권평등을 전제로 하고, 내용의 구성은 개인의 절대적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주체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매체공시행위는 자연히 주관성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성은 바로 그와 같은 매체공시행위의 주체와 내용 스스로가 갖는 주관성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헌법에서 보장되는 매체공시행위의 주체란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개인일 뿐이지, 결코 모든 법적 제한을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주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매체공시행위의 내용은 또 다른 사실적 의사공시를 전개시킬 수 있는 객관적 내용으로 구성될 뿐이지, 결코 매체공시행위를 주도하는 주체에 의한 자의적 내용(willkürlicher Inhalt)으로 구성될 수 없다. 이렇게 매체공시행위의 주체와 내용이 갖는 주관성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체질서와 상대적 입장이 중시되는 차원에서 비로소 찾아질 뿐이다. 따라서 공권성이 간과된 매체공시행위의 주관성은 성립될 수 없다. 결국 매체공시행위가 그와 같은 공권적 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는 다른 영조물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자생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은 개인의 인격전개(Persönlichkeitsentfaltung)를 실현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인격전개를 실현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존가치(Daseinswert)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 때문에 인격전개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매체공시행위는 기본권적 자유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다.¹⁰⁾

개인의 독창성을 전제로 하는 취재·편집·편성·제작·기획 등이 인격전개의 실현을 위한 주관적인 매체공시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주관적인 매체공시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인격을 전개시키기 위한 절대적

8) <우리 나라 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9) <독일 기본법 제5조1항>: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

10) Vgl. 독일 기본법 제2조1항: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전개할 권리를 갖는다.” <Art. 2, Abs. 1 GG>: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권리로만 요구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는 항상 상대적 권리와 관계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즉 매체공시행위의 주관성은 그 주관적 매체공시행위에 대한 상대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인지가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주관적 매체공시행위에 의해 실현되는 행위자의 인격전개는 사실상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인지적 수용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동시에 이들 매체공시행위의 당사적 주체와 그 매체공시행위에 대한 인지적 수용의 상대적 주체 그 모두는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와 조직에 의해 비쳐지는 공권적 효력의 대상들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전개를 실현하기 위한 주관적 매체공시행위는 결국 공권적 효력의 대상인 상대방과의 조화의 차원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제한적 상호관계 때문에, 매체공시행위의 생명력은 절대적 주관성보다는 오히려 공권적 주관성의 토대 위에서 더욱 왕성하여 진다. 이렇게 인격전개가 실현되는 매체공시행위에서의 공권적 주관성은 결코 상충적 갈등의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상보적 조화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¹¹⁾ 매체공시행위 그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공권적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은 방송사의 현실적인 위상과 기능의 측면에서도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에서 파악한 영조물(Anstalt)의 관점에서와 같이, 본래 방송사는 공조적체인데, 그는 주관적인 매체공시행위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인체인 방송사는 오히려 주관적인 매체공시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

정받게 된다.¹²⁾ 즉 공조적이며 유기적 복합체인 방송사는 구성원의 주관적인 매체공시행위의 자유권을 옹호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위상이 독창적 역동체로 존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적 기능인 공과업(öffentliche Aufgabe)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 같은 매체공시행위의 주관성에 의해 오히려 방송사의 공권성이 더욱 제고된다. 예를 들면, 방송제작의 토대인 프로그램자주권은 매체공시행위의 주관성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호된다. 즉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제작자 개인의 독창성을 높이기 위한 주관성이 보장되어야만 공조적체인 방송사가 일상적으로 조우하게 되는 국가권력에 의한 여론조작의 위협에 또는 사주에 의한 내적 통제에 맞설 수 있는 자생적 방어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매체공시행위의 주관성이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절대적 주관성은 마치 쇠를 먹는 녹처럼 오히려 긍정적인 주관성까지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방송인 개인의 인격전개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송의 내용, 수준, 표현기법, 제작방식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결코 외부의 사전적 규제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매체공시행위에서 보장되는 주관성이 곧 매체공시행위에 대한 사후적 책임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의사공시의 자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송에서 매체공시행위의 주관성은 오히려 공권성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은 결코 방송사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하거나

11) 이진근, "의사공시 자유권의 기속적 기여성", 『사회과학논집』 제13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pp.382-393.
 12) Hesse, Konrad(1995),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age, Heidelberg, Rn. 286. / Bethge, Herbert(1979), Grundrechtsträgerschaft juristischer Personen, Zu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AÖR 104, p. 54ff., 265ff.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고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의사의 공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특히 언론매체의 영조물적 성격을 중심으로, 매체공시행위의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인격전개의 실현을 중심으로, 그리고 방송매체의 현실적 위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각각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매체공시행위는 그 자체에 요구되는 공권적 주관성 때문에, 오히려 진작되고 생동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매체공시행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공권적 주관성은 의사의 공시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의사는 결국 공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의사의 공시성에 대한 이상과 같은 논증들은 지극히 제한된 관점들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렇게 제한된 관점들을 도입해서도 의사의 공시성이 충분히 논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의 공시성은 더욱 분명하여 지게 된다. 특히 이 장에서 가장 가치 있게 규명해 낸 결과 중에 하나는 의사의 공시성 그 자체가 또 다른 의사의 공시성을 생성시킬 수 있는 동인적 성격(lebendiger Charakter)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의사를 생애적인 구지육과 확산육 간의 상보적 순환성과 연계시켜서, 그리고 매체공시행위의 공권적 주관성과 연계시켜서 파악한 결과, 의사의 공시성은 지속적으로 또다른 의사의 공시성을 생성시킬 수

있는 동인적인 성격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이와 같은 의사의 공시성이 갖는 특성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의사공시권은 당연히 헌법에 의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III. 법질서 속의 자유권

앞 장에서, 의사가 개인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공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파악했다. 바로 이 같은 의사의 특성 때문에,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의사공시권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기본권으로 보장된 의사공시권은 헌법에 대한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독일의 초기 헌법학자 크라베(Hugo Krabbe), 켈젠(Hans Kelsen),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법사상에 의해 제기된 규범주의적 헌법관(Normativismus)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¹³⁾ 즉 헌법에서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규범주의적 헌법관을 토대로 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헌법에 대한 규범주의적 관점(Normativismus)의 핵심은 헌법을 국가의 법적인 기질서(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의 규범성(Normativität)을 중시한 크라베의 법주권론(Lehre von der Rechtssouveränität)¹⁴⁾과 켈젠의 순수법학이론(Reine Rechtslehre) 그리고 옐리네크의 법실증주의(Rechtspositivismus) 이

13)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대한 고찰은 허영 교수의 저서 『헌법이론과 헌법』(상,중)에 전적으로 의존함. 참고문헌은 재 인용함.

14) 법주권론은 진재군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정헌법의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를 곧 규범의 통치(Herrschaft von Normen)로 이해했다./Krabbe, Hugo(1919): Die moderne Staatsidee. Haag, p. 2, 9, 39ff.

론에 뒷받침되어 발전했다.

본래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전제군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실정헌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등장했다. 따라서 헌법 이상의 합법화를 요구할 수 없는 헌법의 최고성과 주권성이 확립하게 되었다. 즉 규범주의적 관점에서의 헌법은 일단 제정된 이후에는 제정자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경직성(Rigidität)과 더불어 다른 어떠한 법률보다 최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헌법의 경직성과 우선적 효력은 법주권론과 순수법학이론과 같은 고전적 헌법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현대의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규범주의적 헌법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 국민, 자유에 대한 규범주의적 관점을 우선 켈젠의 순수법학이론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어서 그를 엘리네크의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의거하여 반추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고찰은 곧 헌법에서 보장된 의사공시권이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의거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논증의 토대가 된다.

우선 켈젠의 순수법학이론¹⁵⁾은 헌법의 주권성(Souveränität)을 국가와 헌법과의 관계속에서 설명한 법사상이다. 켈젠의 순수법학이론은 크게 세가지의 핵심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국가는 곧 법질서(Rechtsordnung)이다. 둘째, 이 법질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규범의 계층구조(Normenhierarchie)로 이루어진다. 셋째, 그 같은 헌법의 근본규범성 때문에, 헌법은 더 이상의 합법화(Legali-

sierung)가 요구될 수 없는 주권성(Souveränität)을 갖게 된다. 즉 헌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 최고성을 갖는다.¹⁶⁾

켈젠에 의해 제기된 순수법학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Sein(존재성/현실상태)과 Sollen(당위성/당위적 규범)을 서로간의 단절관계로 보는 신칸트철학에 그의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켈젠은 국가(Staat)나 법질서(Rechtsordnung) 그 자체를 전적으로 Sollen(당위적 규범)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Sein(현실상태)을 구성하는 철학, 자연관, 도덕, 역사, 정치 등을 개입시켜 국가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켈젠적 국가는 당연히 법질서와 동일시되고, 그 법질서는 자기목적(Selbstzweck)인 법목적(Rechtzweck)을 갖게 되고, 이 법 목적을 실현하는 것 그 자체가 곧 국가목적(Staatszweck)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위, 힘, 수단을 최대한 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곧 강제질서 또는 힘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¹⁷⁾이 때의 강제질서와 힘의 조직은 실정법질서에 의해 뒷받침되어 국가질서로 존속되기 때문에, 강제질서는 곧 실정법 질서이고 동시에 그 실정법 질서(positive Rechtsordnung)가 곧 국가(Staat)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정법질서 속에는 이미 정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질서인 국가를 단지 Sollen(당위성)의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법질서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능이자 유일한 권능으로서의 국가주권(Staatssoveränität)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에

15) Vgl. Kelsen, Hans(1960): Reine Rechtslehre, 2. Auflage, Nachdruck, Wien.

16) Kelsen, Hans(1925/1966): Allgemeine Staatslehre, Nachdruck, Berlin, p. 16f, 250. / Kelsen, Hans(1923): 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 Tübingen, p. XV, XIV.

17) Kelsen, Hans(1925/1966): a. a. O. p.40, 43.

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리가 성립하게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가란 결국 자기목적적인 법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독립된 완성물이기 때문에, 그가 국민이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국가권력은 가질 수 있으며 결코 국민이나 자유에 의해 제약될 수는 없다. 더우기 국가목적에는 이미 법목적, 힘의 목적, 문화목적, 자유목적이 내포되어 국가라는 일원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¹⁸⁾ 국민의 위상과 국민의 자유는 당연히 그 국가의 범주 내에서만 향유되어질 뿐이다.

국가에 대한 위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국민(Staatsvolk)이란 결국 국가라는 법질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법적 크기(juristische Größe)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법적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¹⁹⁾ 이러한 법적 개념으로서의 국민은 당연히 법질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규범적 일원체로서의 존재임과 동시에 그 법질서와는 자연히 수동적 관계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국민은 동일한 법질서(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형성되는 순수한 규범적 일원체로서의 국가내 백성(Staatsvolk)일 뿐이다.²⁰⁾ 때문에 국민이 국가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이 존속하고 있는 국가가 반드시 민주주의에 의해 영위되어야 할 당위성도 없게 된다.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 제기되는 자유(Freiheit)에 대한 관점은 자연히 위와 같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점과 조화를 이룰 수밖

에 없다. 즉 국가를 법질서로 그리고 국민을 그 법질서의 규제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당연히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그 제한적 내용의 자유란 국민은 오직 국가가 베푸는 은혜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또는 국가가 자신의 강제질서를 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반사효과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만을 뜻한다.²¹⁾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결코 인간의 자연법적 자유가 아니다. 더욱이 국가목적이 곧 자유목적이고, 자유 그 자체는 가치의 규범법칙(Normgesetzlichkeit der Werte)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범질서로서의 국가만이 오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연법적 자유와 권리에 의해서 이 같은 국가의 권능이 제약될 수는 없다.²²⁾ 또 국가로부터의 자유(Freiheit vom Staat)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의 부작위(Unterlassung des Staates)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법적 권리는 아예 형성될 수 없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자유권은 다만 법률유보를 전제로 하여 보장될 뿐이다. 이렇게 이미 국민의 자유권이 입법기관에 의해 침해되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의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진정한 주관적 공권(subjektiv - öffentliches Recht)은 성립될 수 없다.

켈젠의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엘리네크에 의해 제기된 법실증주의 사상(Rechtspositivismus)

18) Kelsen, Hans(1925/1966): a. a. O. p.42ff.

19) Kelsen, Hans(1925/1966): a. a. O. p. 150.

20) 국가내 백성(Staatsvolk)은 자연현실인 생물학적, 인종학적, 혈통적, 언어적, 풍습 및 전통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Sein(현실상태)적 국민을 뜻하지 않고, 인위적인 법질서에 의해 형성되는 Sollen(규범적 당위성)적 국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Staatsvolk를 국가내 국민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필자는 국가내 백성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민 그 자체는 다양한 사람의 집합인 백성으로 국가의 틀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1992, p.10.

22) Kelsen, Hans(1925/1966): a. a. O. p.44.

을 통하여 더욱 공고해졌다.²³⁾ 엘리네크는 “사실의 규범적 효력(normative Kraft des Faktischen)”에 관한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규범주의적 헌법관을 구체적으로 전개했다.²⁴⁾ 특히 힘의 국가론에 대한 견해에서 엘리네크는 힘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범질서가 곧 국가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 경우의 힘(Macht)은 켈젠이 제시한 관권적 강제력과는 달리 다만 규범적 효력을 가진 완성된 사실(vollendete Tatsache)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실력으로서의 힘을 뜻한다. 따라서 불법적 절차에 의해서 성립된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력적 힘에 의해 완성된 사실의 경우에는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사실(Faktum)이 된다.²⁵⁾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면, 힘이 사실을 만들고, 그 사실은 곧 규범이 되고, 그 규범질서에 의해 힘의 조직인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적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엘리네크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를 복종의부(Unterwerfungspflicht)를 수반한 수동적 지위(passiver Status)로 이해했다. 더우기 엘리네크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복종과 의무이행의 정도 그 자체가 국력을 결정한다는 극단적인 국가우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엘리네크는 이 경우의 국민을 노예집단이 아닌 자유인간으로 존속함을 원칙으로 했고, 동시에 그러한 자유인

간에게 필요한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의 부작위(Unterlassung)를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권(Freiheitsrechte)을 인정했다. 이 같은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인정이 곧 국가에 일정한 급부로서의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subjektiv-öffentliches Recht)을 인정한 셈이다.²⁶⁾ 비록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엘리네크가 지위이론(Statustheorie)의 관점에서²⁷⁾ 국민의 자유권을 인정한 입장이 켈젠이 관계이론(Beziehungstheorie)의 관점에서²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절대종속적 지위관계를 정당화하는 입장과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네크의 법사상의 원류에는 역시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할 수 있고, 국민은 다만 그 국가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국가우선주의가 압도적으로 흐르고 있는 점에서 이미 켈젠의 법사상과 깊게 합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의사공시권의 의미에 대한 규범주의적 석명

위의 장에서 우선 의사공시권이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의사의 공

23) 엘리네크와 켈젠은 규범주의적 법철학을 기반으로 헌법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엘리네크는 자신의 근본적 법철학의 원류를 Sein과 Sollen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철학적 실증주의(philosophische Positivismus)에 두고 있는 점에서, 자연법(Naturrecht)을 부인하지 않는 점에서, 그리고 주관적 공권(subjektiv-öffentliches Recht)을 인정하는 점에서 켈젠의 헌법관과는 상이하다.

24) Vgl. Jellinek, Georg(1914/1976) : Allgemeine Staatslehre, 3. Auflage, Nachdruck, Bad Homburg, p.337ff.

25) Vgl. Jellinek, Georg(1914/1976) : a. a. O, p. 362.

26) 주관적 공권(subjektiv-öffentliches Recht)은 국민이 국가권력에 가지는 일정한 법상의 힘 (Rechtsmacht)이다. 독일의 국법학자 엘리네크(Georg Jellinek)는 주관적 공권을 세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국가로 부터의 자유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자유권이라 하고, 둘째, 국가의 일정한 작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수익권(受益權)이라 하고, 셋째,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참정권이라고 했다.(Jellinek, Georg(1905) :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2. Auflage, Tübingen, pp. 263-265.)

27) Vgl. Jellinek, Georg(1905) : a. a. O, p. 94ff, 114ff. / Vgl. Jellinek, Georg(1928/1976) : a. a. O, pp. 420-421.

28) Vgl. Kelsen, Hans(1925/1966) : a. a. O, p. 150ff, 158, 160.

시성에서 찾았고, 이어서 크라베, 켈젠, 엘리네크에 의해 구축된 규범주의적 헌법관(Normativismus)의 특징을 고찰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들 두 고찰의 내용을 상호연계시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실질적인 의미를 특히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하여 석명(釋明)하고자 한다.

1. 비생동적 의사공시권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Staat)와 법질서(Rechtsordnung)를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그 법질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구조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그 헌법은 주권성을 갖는다. 그러한 실정법질서(positive Rechtsordnung)에 의해 영위되는 국가는 그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요소들 보다 최우선적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와 지위는 단순한 지배객체이며 구성요소일 뿐이다. 즉 국민은 국가라는 법질서 내에서 형성되는 단순한 법적 크기일 뿐이지 결코 국가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아니다. 때문에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자유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적인 자유이며 반사효과적인 자유일 뿐이다.

그러나 국민 각자의 의사는 생존적 의미로서의 공시성을 갖는다. 즉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에게는 천성적으로 주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구지욕과 주위에 알리고자 하는 확산욕간의 상보적 순환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볼 때,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의 실현을 위해 공권적 주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의사는 본래부터 생동적인 공시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의사공시권은 인간의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생래적 권리로서의 의사공시권은 당연히 자연법적 자유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 같은 자연법적 자유로서의 의사공시권은 오로지 자주적인 국민에 의해 향유되어질 뿐이다. 그 같은 자주적인 국민에 의해 향유되어지는 의사공시권은 당연히 그러한 자유와 국민을 위해 존속하여야 하는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공시권은 결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적 또는 반사효과적인 자유가 아니며, 국가와 동일시되는 법질서에 의해 형성되는 법적 크기로서의 국민에 의해서만이 향유될 수 있는 자유는 더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비생동적인 자유권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법질서로서의 국가가 항상 최우선적 지위를 갖는 데에는 헌법이 정점의 역할을 한다. 때문에 그러한 헌법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의 의사공시권은 당연히 국가의 권능을 초월하여 실현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동시에 국민은 이러한 국가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와 동일한 법질서 내에서만 형성되는 단순한 법적 크기로서의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 대한 복종의무를 갖는 수동적 지위에 머물게 되고, 국가의 지배객체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국민은 당연히 의사공시권의 양과 질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법적 크기로서의 국민은 오직 법적으로 정해지는 의사공시권의 크기만을 수동적으로 향유할 뿐이지 결코 자주적 판단에 의해 향유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자유로서의 의사공시권은 오로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적인 자유이며 반사효과적인 자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결국 모든 자유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의 공시성이 거세된 비생동적인 기본권을 뜻하게 될 뿐이다.

2. 현실상태적(Sein) 의사공시권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또다른 커다란 특징은 법개념의 모순성에 자승자박되어 법실증주의적 해석의 오류를 자초하고 있는 점이다. 법개념의 모순성에서 비롯되는 해석의 오류는 의사공시권에 대한 규범주의적 관점의 성립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는 법질서가 극단적으로 중시되기 때문에, 실정법이 무엇이며 어떠한가에 대한 존재의 상태(Sein)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그 실정법이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Sollen) 그 자체를 소홀히 했다.²⁹⁾ 따라서 단순히 법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현실상태(Sein) 그 자체를 당위적 규범(Sollen)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 같은 관점 때문에, 실정법(positives Gesetz)과 정의법(gerechtes Recht)이 동일시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즉 악법도 법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법리가 성립된다. 또 악법에 의해 창출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통제할지라도 그것을 현실적인 통치내용으로 감수할 뿐이지, 결코 그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의 국민은 한낱 법적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정당하지 못한 실정법에 의해 형성된 법적 크기로서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 법적 크기는 절대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국민은 사실상 무의미한 법적 크기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그 같은 무

의미한 법적 크기를 형성시키는 법질서는 당연히 자신이 존재하여야 할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법질서인 국가는 자신의 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될 뿐만 아니라, 그는 국민에 대한 자신의 최우선적 지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범 목적을 상실한 국가는 지배객체로서의 국민에게 은혜적이고 반사회과적인 자유를 베풀 수 있는 우월적 지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는 현실적 법질서 그 자체만이 절대시될 뿐, 그 법질서에 의해 형성된 국민과 자유권이 국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질서의 정점인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한낱 통치구조를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된다.³⁰⁾ 따라서 법질서와 동일시되는 국가의 권능, 그리고 법질서에 의해 주어지는 국민의 지위, 그리고 법질서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권 간의 상호적 관계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질서에 대한 법개념이 잘못 정립됨에 따라 실정법의 현실상태(Sein)만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어지는 나머지 악법도 법이 되고 실정법과 정의법이 동일시되는 법리가 타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보장하고 국가의 존재 목적을 실현시키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의미는 상실되고 그의 기능은 무력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는 의사공시권의 의미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헌법에 규정된 의사공시권의 내용이 단순히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was und wie das Recht ist)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뿐이다.

29) Coing, Helmut(1976): Grundz ge der Rechtsphilosophie, 3. Auflage, p. 65. <“Die Reine Rechtslehre versucht, die Frage zu beantworten, was und wie das Recht ist, nicht aber die Frage, wie es sein oder gemacht werden soll.”>

30) 역사적인 사실로,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 매우 우세했던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의 뒤에 배치되었고, 더욱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Wesensgehaltsgarantie) 조항은 아예 규정되지 않았다.

결코 헌법에서 의사공시권이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규정되어야 하는냐(wie es sein oder gemacht werden soll)가 중시되지 않는다. 즉 의사공시권은 본래 인간의 생존유지를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자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규정되어야 하는냐(Sollen)가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헌법에 규정된 의사공시권의 현실상태(Sein) 그 자체만이 중시될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단순히 통치구조를 위한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에서만 찾아질 뿐이지, 결코 또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적 기능에서는 찾아질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의사공시권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비록 악법적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사공시자유에 대한 기본권적 규정 그 자체는 현실상태의 당위적 규범으로 감수되어야 한다. 즉 의사공시권에 대한 규정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실정법(positives Gesetz)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결코 그 실정법을 정의법(gerechtes Recht)과 대비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악법에 의해 정당화된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공시권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는 법질서를 절대시하고, 그 법질서를 이루고 있는 실정법의 현실적 규범성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의사공시권은 자신의 내용이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규정되어야 하는냐(wie es sein oder gemacht werden soll)를 중시하는 정의법(gerechtes Recht)에서 크게 일탈된 의미를 갖는다. 즉 헌법에서 보장되는 의사공시권은

의사의 공시성을 중시하는 Sollen적(당위적) 기본권이 아니고, 오로지 실정법으로 규정된 내용 그 자체만을 중시하는 소위 Sein적(현실상태적) 기본권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결국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의 의사공시권은 의사의 생동성이 거세된 정적이고 생명력없는 기본권적 자유에 불과하게 될 뿐이다.

3. 권위주의 이론적 의사공시권

의사공시권의 의미에 대한 관점은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권위주의이론에서 일맥상통한다. 매스커뮤니케이션학에서 권위주의이론(The Authoritarian Theory of the Press)은 매체 공시현상을 정치사상적 및 정치제도적 차원에서 설명한 고전적 관점이다.³¹⁾

특히 권위주의이론은 인간의 본성과 정치발전과정을 이론전개의 중심배경으로 삼았고, 동시에 그 배경에 입각하여 매스미디어의 존재형태와 기능을 파악한 관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권위주의이론은 자유주의이론, 소비에트 공산주의이론, 사회책임이론을 후속적으로 전개시키는 데 토대적 관점으로 기여하는 고전적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에 속한다. 이러한 고전적 이론들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철학적 명제와 연계시켜야 비로소 그 이론들의 의미가 적절하게 반추될 수 있는 논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한 시대를 풍미하는 관념의 조류가 어떠한가에 따라 의사공시권의 의미에 대한 관점 또한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본래 권위주의이론은 플라톤, 마키야벨리,

31) Siebert, Fred S./Peterson, Theodore/ Schramm, Wilbur(1956/1963): Four Theories of the Pres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Siebert, Fred S.: The Authoritarian Theory of the Press.) pp.9-37.

홉스, 헤겔 등이 주장한 국가지상주의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제기된 관점이다. 국가지상주의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본질을 비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관점에 있다. 즉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유지와 능력발휘는 국가와 같은 테두리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선존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당연히 개인보다 우선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국가는 개인을 의존시킬 수 있는 최고의 표현형태가 된다. 더욱이 국가의 존재목적은 진실과 진리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진리와 진실은 사회구성원을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이고, 현자와 철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산물이다. 본래 현인과 일반대중 간에는 정신적인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현인이 자신의 정신적 산물을 통하여 일반대중을 통솔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만 누려질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테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그를 통제할 수 있으며, 그 같은 통제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국가지상주의는 법과 질서의 가치를 최초로 제안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에 의해 제창된 이상적 귀족정치 사상에서 더욱 극명하여 진다. 즉 플라톤에 의하면, 국가는 본래 도덕적 권위에 의해 지배받는 소수의 현자에 의해 통치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이기주의적 욕망으로 가득차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이러한 개인이 집합된 대중은 지적으로 무능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교육적으로 방종하기 쉬워 스스로 타락될 가능성을 본래부터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법철학자 홉스(Thomas Hobbes)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

하여 절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사회 전체와 개인간의 투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헤겔(Georg Hegel)은 국가를 형체화된 하나의 도덕으로 이해했다. 즉 헤겔은 국가를 인간의 도덕적 이념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되어지는 곳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당연히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향유되어질 뿐이며, 특히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는 결코 다수적 통치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

국가지상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기능은 자연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국가지상주의적 관점에 의거하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자연히 하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치자나 국가정책은 그러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지되어 지게 된다. 또 국가권력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미디어가 지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미디어에 대한 검열권한과 허가권을 용이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는 현자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권력의 존속을 위해 기여하여야 하는 하부구조적 노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국가지상주의 사상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연계시켜 본 결과, 국가지상주의 사상을 토대로 제기된 권위주의이론하의 의사공시권은 규범주의적 헌법관하의 의사공시권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의 생동적 공시성을 거세하고, 의사공시권을 벽속의 그림과 같은 기본권으로만 보장하려는 입장에서 국가지상주의를 우월적 가치로 내세우는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 법질서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규범주의적 헌법관이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공시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모태로서의 국가, 그리고 의사공시권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주체로서의 국민, 그리고 의사공시권을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서의 자유, 그 모두가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민과 자유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국가의 권능적 의지 표현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그 국민은 무능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이해될 뿐이고, 또 그 국민이 향유하는 자유권으로서의 의사공시권은 당연히 국가의 목적이나 테두리를 이탈하여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사공시권의 요구는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국가란 진리와 진실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최고의 도덕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국민보다 그리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보다 상위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공시권의 향유는 국민을 통솔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 내에서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국가지상주의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중시되는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에 의거하면, 의사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인 공시성(öffentlichkeit-scharakter)이 무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은 자연히 상실되어 진다. 즉 국가를 진실과 진리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도덕체로 간주하고, 국민을 그 같은 국가의 권능적 의지에 의해 통치되는 단순한 수동체로 인식하고, 자유를 그 같은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만 향유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는 국가지상주의를 토대로 제기된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에

서는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인 의사공시권이 절대로 그리고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은 결국 국가를 정당한 범위를 실현시키는 범절서로 간주하고, 국민을 그 같은 범절서에 의해 형성된 법적 크기로 인식하고, 자유를 국가권력이 자체됨으로써 은혜적이고 반사효과적으로 배풀어지는 제한된 권리로 인정하는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일치한다. 이렇게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의사공시권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가장 역기능적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 동일한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하여 의사공시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곧 또다른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공시권의 효모적 특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악법적 의사공시권을 정의법적 의사공시권으로 시행하고 준수하게 하는 국가권력의 의지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만을 야기시킬 뿐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정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또 다른 헌법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도 의사공시권에 관한 조항을 헌법의 앞 부분에 열거하여 기본권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더욱이 기본권의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과 “자유와 권리가 경시될 수 없음”에 관한 조항을 성분화시켜 의사공시권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²⁾ 이와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의사공시권에 대한 고의적 침해를 질책

3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히 차단하기 위하여 헌법에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현대 헌법의 이념을 존중하고 있다.³³⁾

V. 결 론

이상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의사(Meinung)는 어느 현상에 대한 관점을 이루어 내는 과정적 결과이며 무형적 생동체이다. 의사가 갖는 이러한 개념적 특징은 의사의 공시성(öffentlichkeit-scharakter)을 형성하는데 토대적 의미로 작용한다. 사실상 의사공시권이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이유도 의사가 공시성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의 공시성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시키는 생래적인 구지욕과 확산욕간의 상보적 순환성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의 공권적 주관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공시권은 현대 헌법에서 예외 없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이 같은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헌법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의거하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의사공시권의 의미를 규명했다. 그 결과,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에 대한 보장의 의미가 현대의 헌법이념과 정보사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헌법에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오로지 실정법 그 자체만을 절대시하는 차원

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법질서가 최고의 가치이며, 그 법질서와 국가는 동일시되고, 국민은 그 법질서에 의해 형성되는 법적 크기이며, 그러한 국민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자제에 의해 은혜적이고 반사이익적으로 베풀어지는 제한된 권리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국가지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그 때문에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곧 국가지상주의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도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따른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이 결코 법질서인 국가보다 우위적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만이 스스로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의사공시권이 법질서의 최고 정점인 헌법에서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은 단지 의사의 공시성이 배제된 비생동적인 의사공시권에 불과하며, 실정법적 내용 그 자체만을 중시하는 나머지 악법도 법으로 인정하는 Sein적(현실상태적) 의사공시권일 뿐이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 기능을 철저히 거세한 권위주의이론적 의사공시권과 일치한다. 이 때문에,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의 의사공시권은 그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정의법으로서의 의미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주의적 관점에 따른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결국 또 다른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모적 생동성이 거세된 한낱 벽속의 그림과 같은 기본권을

33) 헌법 제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비교: 독일 기본법 제19조2항: “In keinem Falle darf ein Grundrecht in seinem Wesensgehalt angetastet werden.”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결코 헌법에서 의사공시권이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규정되어져야 하느냐(wie es sein oder gemacht werden soll)가 중시되지 않는다. 즉 의사공시권은 본래 인간의 생존유지를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자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규정되어져야 하느냐(Sollen)가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헌법에 규정된 의사공시권의 현실상태(Sein) 그 자체만이 중시될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단순히 통치구조를 위한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에서만 찾아질 뿐이지, 결코 또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적 기능에서는 찾아질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의사공시권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비록 악법적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사공시자유에 대한 기본권적 규정 그 자체는 현실상태의 당위적 규범으로 감수되어야 한다. 즉 의사공시권에 대한 규정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실정법(positives Gesetz)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결코 그 실정법을 정의법(gerechtes Recht)과 대비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악법에 의해 정당화된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공시권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는 법질서를 절대시하고, 그 법질서를 이루고 있는 실정법의 현실적 규범성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의사공시권은 자신의 내용이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규정되어져야 하느냐(wie es sein oder gemacht werden soll)를 중시하는 정의법(gerechtes Recht)에서 크게 이탈된 의미를 갖는다. 즉 헌법에서 보장되는 의사공시권은

의사의 공시성을 중시하는 Sollen적(당위적) 기본권이 아니고, 오로지 실정법으로 규정된 내용 그 자체만을 중시하는 소위 Sein적(현실상태적) 기본권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결국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의 의사공시권은 의사의 생동성이 거세된 정적이고 생명력없는 기본권적 자유에 불과하게 될 뿐이다.

3. 권위주의 이론적 의사공시권

의사공시권의 의미에 대한 관점은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권위주의이론에서 일맥상통한다. 매스커뮤니케이션학에서 권위주의이론(The Authoritarian Theory of the Press)은 매체 공시현상을 정치사상적 및 정치제도적 차원에서 설명한 고전적 관점이다.³¹⁾

특히 권위주의이론은 인간의 본성과 정치발전과정을 이론전개의 중심배경으로 삼았고, 동시에 그 배경에 입각하여 매스미디어의 존재 형태와 기능을 파악한 관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권위주의이론은 자유주의이론, 소비에트 공산주의이론, 사회책임이론을 후속적으로 전개시키는데 토대적 관점으로 기여하는 고전적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에 속한다. 이러한 고전적 이론들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철학적 명제와 연계시켜야 비로소 그 이론들의 의미가 적절하게 반추될 수 있는 논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한 시대를 풍미하는 관념의 조류가 어떠한가에 따라 의사공시권의 의미에 대한 관점 또한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본래 권위주의이론은 플라톤, 마키아벨리,

31) Siebert, Fred S./Peterson, Theodore/ Schramm, Wilbur(1956/1963): Four Theories of the Pres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Siebert, Fred S.: The Authoritarian Theory of the Press.> pp.9-37.

홉스, 헤겔 등이 주창한 국가지상주의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제기된 관점이다. 국가지상주의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본질을 비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관점에 있다. 즉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유지와 능력발휘는 국가와 같은 테두리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선존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당연히 개인보다 우선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국가는 개인을 의존시킬 수 있는 최고의 표현형태가 된다. 더욱이 국가의 존재목적은 진실과 진리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진리와 진실은 사회구성원을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이고, 현자와 철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산물이다. 본래 현인과 일반대중 간에는 정신적인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현인이 자신의 정신적 산물을 통하여 일반대중을 통솔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만 누려질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테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그를 통제할 수 있으며, 그 같은 통제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국가지상주의는 법과 질서의 가치를 최초로 제안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에 의해 제창된 이상적 귀족정치 사상에서 더욱 극명하여 진다. 즉 플라톤에 의하면, 국가는 본래 도덕적 권위에 의해 지배받는 소수의 현자에 의해 통치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이기주의적 욕망으로 가득차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이러한 개인이 집합된 대중은 지적으로 무능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교육적으로 방종하기 쉬워 스스로 타락될 가능성을 본래부터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법철학자 홉스(Thomas Hobbes)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

하여 절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사회 전체와 개인간의 투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헤겔(Georg Hegel)은 국가를 형체화된 하나의 도덕으로 이해했다. 즉 헤겔은 국가를 인간의 도덕적 이념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되어지는 곳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당연히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향유되어질 뿐이며, 특히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는 결코 다수적 통치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

국가지상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기능은 자연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국가지상주의적 관점에 의거하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자연히 하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치자나 국가정책은 그러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지되어 지게 된다. 또 국가권력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미디어가 지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미디어에 대한 검열권한과 허가권을 용이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는 현자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권력의 존속을 위해 기여하여야 하는 하부구조적 노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국가지상주의 사상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연계시켜 본 결과, 국가지상주의 사상을 토대로 제기된 권위주의이론하의 의사공시권은 규범주의적 헌법관하의 의사공시권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의 생동적 공시성을 거세하고, 의사공시권을 벽속의 그림과 같은 기본권으로만 보장하려는 입장에서 국가지상주의를 우월적 가치로 내세우는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 법질서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규범주의적 헌법관이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공시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모태로서의 국가, 그리고 의사공시권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주체로서의 국민, 그리고 의사공시권을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서의 자유, 그 모두가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민과 자유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국가의 권능적 의지 표현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그 국민은 무능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이해될 뿐이고, 또 그 국민이 향유하는 자유권으로서의 의사공시권은 당연히 국가의 목적이나 태두리를 이탈하여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태두리를 벗어난 의사공시권의 요구는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국가란 진리와 진실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최고의 도덕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국민보다 그리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보다 상위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공시권의 향유는 국민을 통솔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 내에서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국가지상주의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중시되는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에 의거하면, 의사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인 공시성(öffentlichkeit-scharakter)이 무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은 당연히 상실되어 진다. 즉 국가를 진실과 진리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도덕체로 간주하고, 국민을 그 같은 국가의 권능적 의지에 의해 통치되는 단순한 수동체로 인식하고, 자유를 그 같은 국가의 태두리 내에서만 향유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는 국가지상주의를 토대로 제기된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에

서는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인 의사공시권이 절대로 그리고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권위주의이론의 관점은 결국 국가를 정당한 법질서를 실현시키는 법질서로 간주하고, 국법을 그 같은 법질서에 의해 형성된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자유를 국가권력이 자재됨으로써 운해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배설어지는 제한된 권리로 인정하는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일치한다. 이렇게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의사공시권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가장 역기능적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위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 동일한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하여 의사공시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곧 또다른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공시권의 효모적 특성이 제기된 뿐만 아니라, 악법적 의사공시권을 정의법적 의사공시권으로 시행하고 준수하게 하는 국가권력의 의지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만을 야기시킬 뿐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정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또 다른 헌법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도 의사공시권에 관한 조항을 헌법의 앞 부분에 열거하여 기본권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더욱이 기본권의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과 “자유와 권리가 경시될 수 없음”에 관한 조항을 성분화시켜 의사공시권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²⁾ 이와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의사공시권에 대한 고의적 침해는 질적

3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히 차단하기 위하여 헌법에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에 관한 조항을 둬으로써 현대 헌법의 이념을 존중하고 있다.³³⁾

V. 결론

이상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의사(Meinung)는 어느 현상에 대한 관점을 이루어 내는 과정적 결과이며 무형적 생동체이다. 의사가 갖는 이러한 개념적 특징은 의사의 공시성(Öffentlichkeit-scharakter)을 형성하는데 토대적 의미로 작용한다. 사실상 의사공시권이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이유도 의사가 공시성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의 공시성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시키는 생래적인 구지욕과 확산욕간의 상보적 순환성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의 공권적 주관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공시권은 현대 헌법에서 예외 없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이 같은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헌법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의거하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의사공시권의 의미를 규명했다. 그 결과,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에 대한 보장의 의미가 현대의 헌법이념과 정보사회의 마스크커뮤니케이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헌법에 보장된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오로지 실정법 그 자체만을 절대시하는 차원

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법질서가 최고의 가치이며, 그 법질서와 국가는 동일시되고, 국민은 그 법질서에 의해 형성되는 법적 크기이며, 그러한 국민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자제에 의해 은혜적이고 반사이익적으로 베풀어지는 제한된 권리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국가지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그 때문에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곧 국가지상주의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 마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위주의이론의 관점과도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따른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이 결코 법질서인 국가보다 우위적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만이 스스로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의사공시권이 법질서의 최고 정점인 헌법에서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은 단지 의사의 공시성이 배제된 비생동적인 의사공시권에 불과하며, 실정법적 내용 그 자체만을 중시하는 나머지 악법도 법으로 인정하는 Sein적(현실상태적) 의사공시권일 뿐이며, 마스크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 기능을 철저히 거세한 권위주의이론적 의사공시권과 일치한다. 이 때문에, 규범주의적 헌법관에서의 의사공시권은 그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정의범으로서의 의미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주의적 관점에 따른 의사공시권의 의미는 결국 또 다른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모적 생동성이 거세된 한낱 벽속의 그림과 같은 기본권을

33) 헌법 제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비교: 독일 기본법 제19조2항: “In keinem Falle darf ein Grundrecht in seinem Wesensgehalt angetastet werden.”: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뜻할 뿐이다. 즉 헌법에 보장된 의사공시권은 한낱 통치질서를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하며, 악법적 의사공시권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상의 정당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코 악법적 형태로 보장된 의사공시권을 부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비록 악법에 의해 출현한 국가권력에 의해 의사공시권이 악의적으로 해석되고 보장된다 할지라도,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한 의사공시권에 대한 보장의 의미는 항상 정당성을 가질 뿐이다.

마치 들은 바대로 그렇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존재하듯이(Cogito, ergo sum), 규범주의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렇게 규범주의적인 의사공시권만이 정당하게 존재할 뿐이다. □

참고문헌

Bethge, Herbert(1979), "Grundrechtsträgerschaft juristischer Personen, Zur Rechts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öR 104, p.54ff., 265ff.

Burkart, Roland(Hg.)(1992), Wirkung der Massenkommunikation, Theoretische Ansätze und empirische Ergebnisse, 3. Auflage, Wien: Braumüller, Renckstorf, Karsten: Zur Hypothese des "Two-step Flow" der Massenkommunikation, pp. 40-56.

Burkart, Roland(1995), Kommunikationswissenschaft, Grundlagen und Problemfelder, Wien/Köln/Weimar: Böhlau Verlag.

Coing, Helmut(1950/1976), Grundzüge der Rechtsphilosophie, 3. Auflage, Berlin.

Hesse, Konrad(1995),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age, Heidelberg.

Jellinek, Georg(1905),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2. Auflage, Tübingen.

Jellinek, Georg(1914/1976), Allgemeine Staatslehre, 3. Auflage, Nachdruck, Bad Homburg.

Kelsen, Hans(1923), 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 Tübingen.

Kelsen, Hans(1960), Reine Rechtslehre, 2. Auflage, Nachdruck, Wien.

Kelsen, Hans(1925/1966), Allgemeine Staatslehre, Nachdruck, Berlin.

Krabbe, Hugo(1919), Die moderne Staatsidee, Haag, von Mangoldt/Klein(1985): Das Bonner Grundgesetz.

Mayer, Otto(1969),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I.

Noelle-Neumann, Elisabeth(1982), Die Schweigespirale, öffentliche Meinung unsere soziale Haut, Frankfurt a. M.: Ullstein.

Siebert, Fred S./Peterson, Theodore/Schramm, Wilbur(1956/1963), Four Theories of the Pres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상,중), 박영사, 1992.

이진구, "의사공시자유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고찰", 『동아논총』 제29집, 동아대학교, 1992, pp.115-141.

이진구, "의사공시 자유권의 기속적 기여성", 『사회과학논집』 제13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pp. 377-398.

이진구, "방송 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제16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pp.133-148.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인용과 인격권 침해

김 성 규
변 호 사

언론기관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취재원으로 개인보다는 정부기관과 같은 공적인 취재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기자가 어떤 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정부기관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한 정보는 신뢰할 만하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면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론기관은 면책되는가? 즉 언론기관이 공공기관의 발표내용을 인용 보도하는 것은 표현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특수한 경우 즉, 허위사실에 대한 보도 일지라도 면책되는 '진실이

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보도한 경우 그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기타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취재원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보도의 신속성 요구, 언론기관의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제목을 붙였다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표내용에 포함된 인물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 사인이라면 그 신원을 밝히거나 사생활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발표는 주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피의사실) 공표와 행정기관의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언론기관이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수사자료를 인용, 보도하여 그 결과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언론기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최근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언론기관과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과 이 경우 언론사와 국가의 손해배상 분담액을

정한 하급심판결(서울지법 2001. 7. 26. 선고 2001가단 42356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2건의 판결은 범죄 피의 사실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음에도 한 신문사는 변책된 반면, 다른 한 신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면책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비율로 분담하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의 점에 관한 사실 관계는, A신문사의 기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 사실을 알게되자 담당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다른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이 요약 정리된 자료를 배포받고 검사가 발표하는 수사경위를 들은 다음, 이런 취재자료에 의하여 문제가 된 기사를 작성·보도한 반면, B신문사의 기자는 위 A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는 A신문사에 대하여는 위 기사의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공공기관의 발표내용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제목을
붙였다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절차에 의한 발표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사건 당사자인 원고는 구속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던 점, 위 기사는 그 제목 등에 있어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나 본문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위 검사로부터 취재한 사건경위와 수사의 방향 및 그로부터 배포 받은 수사자료를 기초로 취

재내용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B신문사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점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법령에 위배하여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그 피의 사실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고, 신문에 위와 같은 신문기사가 보도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당하게 하였으므로 공무원인 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신문기자가 다른 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를 읽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외에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신문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각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어느 일방의 출개로 공동 면책된 경우 다른 일방은 타방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자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국가와 신문사의 책임분담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이 사건의 경위와 경과, 특히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고 기자들에게 수사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에의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을 기사화 하

여 보도한 다른 신문사는 검사로부터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데, 기자가 검사에게 직접 위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기사내용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은 특히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공표 내용의 공공성), ②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③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공표 목적의 공공성), ④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공표의 절차 및 형식), ⑤유죄를 숙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언론기관은 수사 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도 감안하고 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발표내용을 인용 보도한 경우인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경찰서 형사계장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경찰출입기자들이 모여 있는 경찰서 출입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굵직한 사

건을 해결하였으니 취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취재한 언론 각사 기자들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수사담당 공무원의 사용자)와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1998. 7. 14.선고 96다

최근 수사기관의 발표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피의사실을 공표한 국가의 책임분담비율을 3:7로 결정한 판례나와

17257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전제 한 다음, 형법 제126조가 검

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27조 제4항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



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역경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므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범죄자체에 관한 보도와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즉 범죄피의자들이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언론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바로 그 피의자들과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가수 J씨의 대마초 흡인혐의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신문사 기자가 해당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그 보도기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였으므로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언론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2000가합64132 판결)

국세청장이 '토지 거래허가 대상 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82명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공표하였고, 각 일간 신문은 그에 의해 원고가 위장증여 등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실제 매매를 하였을 뿐 위장증여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위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원고를 부동산투기자로 보도한 신문에 대하여는 공식 발표를 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1993.11.26.선고 93다18389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경우 상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 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범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 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 없이 제조자의 직접 공급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지 외관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동막걸리'에서 유해물질(관련규정상 주류에는 첨가할 수 없는 '사카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사안에서, 공표의 기초가 된 시료가 원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 내용의 진실성을 오신한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다만, 이 사건은 언론사가 피소되지 않은 경우이다).

언론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보도목적의 공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내용

사인의 범죄사실 보도의 경우 익명보도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언론보도에 관한 우리나라 관례의 기본입장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성이 없어 편채된다는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를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원칙으로 확립하면서, 다른 한편 언론보도의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기관에 원칙적으로 진실확인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 후보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전과 등 사적인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보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반면, 일반 사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익명보도원칙을 준수하도록 천명하는 등 인격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법원의 태도는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무책임한 보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거운 책임을 물어 언론기관이 국민의 인격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

취재의 한계 - 놓쳐버린 이야기들

신 동 식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늦주밭이 상에 오르던 때에 은 주밭을 싸들고 온 부인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영감을 다독이고 타일러 본가에 돌려보냈지요.”

“또 한 번은 철철이 본건 옷감이며 패물을 선물하는 부인도 만났구요.”

“나는 마음이 약해서 이런 부인을 만나면 물러서고 정을 땔 수밖에 없었어요.”

시립 양로원이 구기동 산골짜기 조용한 개울가에 있던 시절, 그곳에서 만난 눈매 서늘한 미인 할머니는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좋은 영감님들과 헤어지게 된 경위도 말해 주었다. 해방 후 평양에서 함께 월남했던 영감님과는 정식으로 들어앉아 살림했었는데 영감님이 먼저 가게 되어 이곳에 왔다고 했다. 본가 자손과 친척들은 돈도 있고, 제법 높은 관직에 있기도 했지만 짐이 되기 싫었다고 한다.

한 번은 울며 사정사정 하는 부인도 만났고, 아들 딸 앞세우고 소리치며 으름장 놓고 가는 본처도 보았지만 이들보다 좋은 얼굴로 당부만 하던 부인들이 더 무서웠다고 한다. 할머니는 부인들이 시앗을 보았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도를 언저시 알려준 것이기도 하다.

60년대 초 시립 양로원도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노인들은 한 방에 5, 6명씩 제법 깔끔하게 기거하고 있었다. 문제는 할머니들 거의가 기력이 쇠한데다 치매 기미가 보이는 분들이 한 둘씩 있게 되는 것. 종일 가지고 온 보따리를 끌렀다 썼다하며 버선 쥘레를 세어보다 티격태격 다투어 댈다. 아침에 세어 보았을 때는 다섯 쥘레 짝이 맞았었는데 저녁때 다시 풀어 세어보니 한 쥘레가 없어졌거나 짝이 맞지 않다는 것. 옆 사람에게 물어보다 결국은 싸워댄다. 날마다 한두 방에서 되풀이되는 소동에도 양로원 원장은 도가 터서 버선짜이 다시 맞을 때까지 내버려둔다.

양로원 입소 할머니들은 이력이 천차만별. 젊어서부터 떠돌아다니던 사람, 편한 노릇만 하던 사람, 매사를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 사람 등. 자연 이 눈매 서늘한 평양 할머니처럼 조용히 지내려는 노인들은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시립양로원을 찾게 된 것은 사회면에 연재하게 된 노인문제 취재 길이었다

“나물이나 뭐나 안노인들 것을 사. 한줌을 쥐도 더 집어 주지.”

북적대는 동대문시장 난전에서 만난 나물 파는 할머니는 여자들이 매사에 더 너그럽다는 설명을 한다. 아침마다 나물 시세를 물으며 가까워진 할머니다. 처음에는 “사지도 않고 묻기만 하나”며 통을 주던 분인데 매일 찾는 모습이 딱했던지 얼마 지나서 부터는 오늘은 콩나물 한 근에 얼마고, 시금치 한 근은 얼마야... 등 신문 불가표에 올라가는 야채시세를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때
취재의 한계에 대한 경계선 긋기가 힘들어

순서대로 말해주는데 까지 이르렀다. 어느 날은 아침 1판(석간) 마감하고, 이른 점심을 이 할머니와 시장통 팔죽 파는 목노에서 때우려고 갔었다. 할머니는 그때 이 난전에 10여 년째. 시장에서 겪은 이야기 끝머리에 "남정네들은 나이 들수록 속이 좁아지고 잘아진다."는 평도 했다.

92년 여름 서구 사회복지정책 취재 길, 아일랜드에서도 안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더블린 시 집시거주지역에 살고있는 칠순 집시 할머니였다. 풍채가 대단한 이 노인은 3대 10여 명의 대식솔을 거느린 여장부였다. 더블린시 사회복지 담당관 연결로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동양여자에게 호탕한 웃음과 시원스런 말투로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이 도시 저소득 지역 을씨년스런 길가에 늘어선 주거 차량이 이들의 집. 차량 앞 판매대에 수공품을 늘어놓고 푼돈을 벌고, 기본 식비와 의료, 아이들 교육문제는 시에서 주는 사회복지비로 해결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주방과 침실을 보여주며 웃던 모습은 서울 동대문 시장 채소 할머니 모습과 너무도 흡사해 정이 갔다. 여자는 늙어가며 매사에 너그러워진다는 말이 집시 속담에도 있다고 했다.

조선조 23대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 외증손녀 윤백영 할머니는 60년대 초 궁중관련 문화재 고증, 보전 활동에 소리 없이 공헌한 분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충기가 대단하고, 눈이 밝아 문화재관련 취재 때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

윤씨는 덕온공주가 직접 입었던 당의를 보관해 오다가 복식학자 석주선 교수에게 기증했고, 단국대에 석주선 박물관이 개관되며 이곳에 소장케 한 분이다. 이 분이 어렸을 때 집 안에서 명성황후를 뵈 어른들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명성황후는 얼굴이 가름하고, 콧날이 오뚝하고, 입매가 야무지고, 눈이 가늘고, 살비들이 흰 분이었는데 단지 눈동자에 실핏줄이 서 있어 '언짢은 상'으로 어른들이 걱정했다고 한다. 제 명예 못 갈 흠이라는 말이 돌았다는 것이다.

엉뚱하게 안노인들 이야기를 쓴 것은 이들이 모두 훌륭한 인물 르포 감이었는데 그때 지나치고만 것에 대한 회한 때문이다. 사회부 스트레이트 기사 몇 건 더 쓸려고 해매기 보다 이런 인물 전기를 준비했어야 하는데...하는 아쉬움이 크다.

요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갖가지 명예훼손관련 반론, 정정보도 신청 건들을 대하며 그때 르포하다가 잘못하면 명예훼손건도 만들 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된다. 하지만 르포, 심층 보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인권 등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취재의 한계에 대한 경계선 긋기가 어려울 것 같다. □

방송법에 근거, 정정보도를 명한 첫 판결 내려져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학원을 경영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이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다고 NHK방송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 제20민사부는 2001년 7월 18일 “원고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오보를 함으로써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판단.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1998년 11월)을 변경하여 NHK에 방송법 제4조에 따른 정정보도와 130만엔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방송법에 근거한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은 이것이 처음이다.

판결에 의하면 NHK는 1996년 6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처로부터의 절연장(絶縁狀)”이라는 소재목으로 원고가 결혼 21년만에 사소한 이유를 내세워 갑자기 이혼을 선언했다는 전 남편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했다.

원고는 “이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시청자에게 주었으며, 전 남편의 얼굴을 방영했기 때문에 자신도 특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K는 “프로그램은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것이 아니며, 전 남편의 심경을 취급한 것에 불과하고 중년과 노년부부의 이혼이라는 사회일반의 관심사를 취급한 공공성이 있는 내용으로 프라이버시의 공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위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전 남편이 이혼의 경위나 원인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시청자에게는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며, 이혼이라는 사적인 사항을 방송할 때에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관계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취재하여 진실 파악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NHK는 7월 31일 상고했다.

(『新聞協會報』, 2001. 8. 14) □

일본 신문사들의 잇단 사내 기사심사 기구 설치는 타율규제를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

일본신문협회 심사실이 회원 신문사와 통신사를 대상으로 2001년 4월 1일 현재 ‘지면심사기구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답을 보내온 103사 중 64개사에서 지면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4월 이후에도 지면심사기구를 설치하는 신문사가 잇따르고 있어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9월 중순까지는 90개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10월 마이니찌신문사의 “‘열린 신문’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2001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식 옴부즈맨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제3자 심사기관을 설치하는 신문사도 계속 늘어 6월 26일 현재 14개사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토신문사 미다니 시게루(三谷茂) 지면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보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인권구제기관의 설치 움직임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도규제로 연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기관 스스로가 인권을 배려한 보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이 일련의 일본식 옴부즈맨 기구 설치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언론사가 설치하고 있는 사내 기구는 보도에 의한 명예, 프라이버시 피해자들의 불만이나 의견에 대해 사외의 제3자 의견을 듣고 보도내용을 검증, 지면에 반영하는데 설치목적은 두고 있으나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신문사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독자에 대한 눈가림이 아니냐”는 등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사심사기구의 소속은 64사 중 58%인 37사가 편집국장 소속, 약 30%인 19사가 사장직속, 임원실 소속이 4사, 기타 4사로 분류되었다.

(『新聞研究』, 2001년 8월호) □

영국 고등법원, PCC 결정 번복을 청구한 사건 기각

영국고등법원은 뉴스 아나운서인 Anna Ford 씨가 스페인 해변에서의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았다고 평결한 PCC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 소송을 기각했다.

PCC는 Ford씨의 청구가 기각되자 활기

에 차있다. Ford씨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다(해당 PCC평결,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pp.152-153에 소개).

법률심사를 맡은 Siiber판사는 PCC의 평결이 법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PCC 위원장 Wakeham경은 “자율규제와 PCC의 역할에 대한 훌륭한 판단”이라며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했다.

또한 PCC 관계자는 Press Gazette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결정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우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PCC의 결정이 법원에서 보호받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문제의 기사내용은 Ford씨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그녀의 전 애인인 David Scott씨와 마조르카 해변에서 같이 있는 장면을 사진기자들이 망원렌즈로 촬영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이 사진은 Daily Mail지와 OK!지에 실렸다. 판사는 청구인을 위로했지만 논쟁이 될만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Ford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사적인 장소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PCC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PCC 위원들은 Ford씨와 관련된 사진이 공공 장소인 해변에서 촬영된 것으로 주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이며, 성수기의 휴가기간인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PCC는 평결한 것이다. 사진은

청구인과 그녀의 애인간 친밀한 관계를 침범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지도 않았다.

(Press Gazette, 2001. 8. 3., p.4.) □

미 대법원, 신문이나 잡지 게재용으로 작성한 기사를 허락없이 인터넷 등 다른 매체에 사용하는 것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1년 6월 25일 전미(全美)작가협회 회장 등 6명이 신문, 잡지 게재용으로 작성된 기사가 허락없이 인터넷이나 CD-ROM 등의 전자데이터베이스에 재사용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뉴욕타임즈', '뉴스테이', '타임' 등 3사를 제소한 재판에서 찬성 7, 반대 2의 다수결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재판에서는 신문, 잡지 등의 전자판(電子版)이 출판매체로부터 단순히 옮겨실은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판시했다. 마이크로필름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각사는 대상 기사를 삭제해야 하는데 1993년 12월의 제소 이후 많은 매체들은 디지털판(版)에도 2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해 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로 보여지며, 서평이나 예술, 오락, 여행란의 기사는 대부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新聞研究』, 2001년 8월호) □

일본 NTV, 취재·방송규범 마련

일본 NTV는 2001년 7월 9일 "NTV 취재·방송 규범"을 마련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방송의 자율을 확보하기 위해 취재·방송의 책부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봉사", "인권의 존중", "객관성의 확보", "사회적 영향력의 자각" 등 4개항을 채택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을 기술했다.

이 규범의 "인권의 존중" 조항에서는 ①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심정을 최대한 배려, ②집단취재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재로 피해자나 가족을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③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의 자각" 조항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배려한다고 규정을 담고 있다. 동사에서는 이 규범을 관계자 전원이 지참하도록 하였다.

(『新聞研究』, 2001년 8월호) □

범죄혐의자를 익명으로 보도했다라도 소속 학교나 연령을 밝혀 당사자가 추정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은 잘못

-일본 도쿄지방법판소 판결-

동경·메구로(目黒)에서 토막시체가 발견된 사건에 관해 산케이신문이 2000년 2월 23일자 조간에서 "부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남자가 동경시 메구로구에서 발생한 중국 남성의 토막살인 사건의 혐의자로

지목되어 경시청 매구로 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보도된 남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도쿄지방법판소는 2001년 5월 30일 산케이신문사에 2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케이신문사측은 “익명으로 보도했고 대다수 독자에게 원고에 관한 기사라고 추측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연령이나 소속 학교의 기재를 들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여 산케이신문사는 항고했다.

(『新聞研究』, 2001년 7월호) □

회, 영국의 로이터통신, 미국의 AP통신을 포함한 보도 각사에 보내졌다.

검찰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①경찰관이 회담 첫날인 7월 20일 이태리인 활동가를 총격, 사망하게 한 장면, ②반(反)글로벌단체 거점을 수색하면서 체포된 자를 구타하는 등 경찰측의 ‘위법행위’, ③과격파가 상점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파손하는 장면의 사진과 필름 등이다.

항의대모가 폭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회담 기간 중에 외국에서 불러온 과격파 등 수백명이 체포되었으며 부상자는 보도진, 경찰관을 포함 2백여 명에 달했다.

(『新聞協會報』, 2001년 8월 7일자) □

이태리 검찰, 언론사에 취재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토록 명령하여, 언론계 반발

이태리 제노바 검찰당국은 지난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수뇌회담에 항의하는 반(反)글로벌단체와 경찰대와의 충돌장면 등을 촬영한 TV방송보도 필름과 사진을 증거품으로 제출하도록 국내외 보도기관에 명했다.

사법관계자에 따르면 이태리 법률에서는 보도기관이라 하더라도 증거제출명령에 항변권이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제저널리스트연맹(IFJ), 유럽저널리스트연맹 등은 항의성명을 발표하는등 반발하고 있어 국제문제화 되고 있다.

제출명령은 수차에 걸쳐 국영이태리방송협

중국당국, 신문규제 한층 더 강화

홍콩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화운동 뉴스센터는 중국당국이 지난 7월 3, 4일 北京시에 전국의 신문사 간부들을 소집,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보도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신문은 즉각 발행정지처분을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3회 받을 경우 발행정지처분을 했던 지금까지의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금년 5월 이후 광둥성(廣東省)의 ‘南方週末’, 하남성(河南省)의 ‘大河報’ 등 많은 신문이 발행정지 또는 편집간부의 교체 처분 등을 받았으며 자유화 경향을 보이는 신문에 대한 규제가 현저히 강화되었다고 한다.

(『新聞協會報』, 2001년 8월 7일자) □

사회복귀가 허용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도를 금지시키자 영국 언론계 반발

영국 내무성은 리버풀에서 1993년 2월, 2세의 남자 어린이를 유괴, 살해한 남성 2명(현재 18세 :사건 당시 10세)에 대해 가석방위원회가 이들이 새로운 이름과 가공의 경력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6월 2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국 중부의 지방지가 이들 2명의 새로운 주소 등의 정보를 지면이나 인터넷에 보도했기 때문에 법무당국은 법원의 금지명령 위반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내무성도 "언론매체에 이 두 남자가 특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00년 10월 "두 사람은 사회의 위협이 될만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소를 결정했다. 올해 1월에는 피해자의 유족에 의한 복수나 주민들로부터의 가해 우려가 있으므로, 출소 후에 새로운 이름이나 가공의 경력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인정,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보도도 금지했다.

심사위원회가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 두 사람의 출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곧 출소될 예정으로 있다.

생활권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자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변신, 출소시켜 익명성을 평생 지키도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영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최근의 사진이나 새로운 이름 등을 일체 보도할 수 없게 된 언론매체로부터는 '보도에 대한 사법권력의 개입'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新聞協會報』, 2001. 7. 3.)

□

일본 외상, 국회 내에서의 과잉취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중·참의원 사무총장에게 요청서 제출

일본 언론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제출, 보도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권구제기관 설치 움직임이 보도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田中眞紀子 외상이 국회 내의 취재 규제를 들고 나와 언론계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田中外상은 지난 6월 13일 대리인인 竹田眞一郎 변호사를 통해 "원내에 있어서의 보도기관의 과잉 취재행위를 규제할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중의원과 참의원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요청서에서는, 외상 취임 이후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다수의 보도기관에 의한 과잉 취재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도관계자의 의도는 "개인적인 일거일동을 사진, 영상에 수록하는데 있다"고 지적, "과잉취재가 공공연히 행하여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와 더불어 집요하게 매달리는 취재나 면전에서 근접 촬영 등의 취재방법은 정상적인 취재 관행을 일탈하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인권침해"

라고 주장하고 있다.

(『新聞協會報』, 2001. 6. 19.)



**방송국이 집단폭주 장면을 연출해
촬영했다는 정황은 없으나
교통법을 위반하면서
취재한 것은 부적절**

-일본 지방재판소 판결-

텔레비전 방송국의 취재요청으로 연출된 집단폭주 행위로 실형판결을 받았다고 전 폭주족그룹 리더가 텔레비전大阪과 동 방송국 제작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2천3백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大阪지방법판소 제24민사부는 “원고는 감독으로부터 집단폭주에 참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폭주에 가담했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집단폭주의 현장을 촬영하고 싶다는 텔레비전大阪의 제작감독의 요청을 받고 스스로 집단폭주에 참가, 텔레비전大阪은 이 장면을 촬영하여 1999년 9월 25일 방영했다. 이 행위에 의해 원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4년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법행위와 제작감독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폭주족과 함께 신호무시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취재를 계속한 것이 집단폭주를 유발·조장한 결과가 되었으며 이것이 적절한 취재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일반 방송사업자로서 범죄행위를 유발·조장

하는 취재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보다 철저히 하는 자세가 특별히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新聞協會報』, 2001. 7. 3.)



**공익성이 없는 사생활 보도에 대해
고액의 배상판결 내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제16민사부는 2001년 7월 5일, 주간지 ‘女性自身’의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여배우 大原麗子씨가 발행사인 光文社를 상대로 5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5백만엔의 지불을 명한 2001년 2월의 1심 판결을 지지. 光文社의 항소를 기각했다.

‘女性自身’은 2000년 3월 7·14일 합병호에 “무슨 일이 있었나?! 大原麗子”, “개와 큰 싸움” 등 제목으로 원고와 인근 주민간에 알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격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나 그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고려한다면 가법계 평가해 온 과거의 재판례의 손해배상액에 구속만는다가, 균형에 구애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기사는 공익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측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경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명예회복에 소요될 비용 등을 감안하면 1천만엔 이하의 손해배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新聞協會報』, 2001. 7. 17.)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라며,
단약 인용할 때는
가조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들의 딸이 서울대에 입학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하버드대에 입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19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1. 이 운 성

2. 신 선 인

피신청인 : 뉴스위크 한국판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1. 6.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뉴스위크 한국판 : (1)『서울대 낙방하고 하버드 간다』 제목(2001년 5월 30일자 표지면)

(2)『국내 대학에 실망 외국 명문대로 떠나는 영재들』 제하의 기사 (2001년 5월 30일자 16~22면)

내 용 : (전략)

한편 서울과학고의 이규영(李珪瑛·18)양은

2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해 말 미국 하버드대와 MIT 조기전형에 동시 합격해 진로를 하버드대쪽으로 결정한 뒤 지난 달 미국으로 떠났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과학고의 경우 국립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교측에 의한 유학반 운영은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각종 유학 관련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11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이양은 지난해 1월 토플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려 6백70점(만점 6백77점)을 받은 데 이어 SAT II의 수학·물리·작문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양은 공부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과학토론방에서 후배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교내 여학생 농구단을 창단해 이끄는 등 활발한 과외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내신 5등급인 이양이 지난 해 설령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서울대에 지원했다면 떨어졌을 거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미국 최고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이양이 서울대 입시에선 낙방이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락을 좌우하는 내신에서 크게 불리한데다 하버드대처럼 다양한 학력 측정을 통한 '진짜 우수생'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양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결심한 데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한 담임교사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뉴스위크 한국판 2001년 5월 30일자 16면~27면에 실린 '국내 대학에 실망 외국 명문대로 떠나는 영재들' 제목의 특집기사 중 18면에 거론된 이규영 양의 부모이며 피신청인의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중재신청한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을 쓴 뉴스위크 기자는 이규영과 인터뷰를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추측 기사를 보도하였다. 즉 이규영이 "서울대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 "낙방이 예상"이라고 썼으나 이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다. 내신5등급이라고 하였으나 서울과학고에서 전교 138명 중 20등 내외였던 이규영의 2학년 성적에 근거해서 부당한 추측 기사를 쓴 것이다. 즉 3학년에 진학하지 않고 조기졸업을 할 목적으로 2학년 때 3학년 과정을 함께 마쳤던 이규영의 성적을 놓고 고교3년간의 성적에 근거하는 서울대 입시 기준에 인용했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2001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조기졸업생을 받지 않았음).

이에 관해 기자는 서울과학고등학교 교부장선생님과 이규영의 2학년때 담임선생님과 전화 인터뷰를 하여 기사를 썼다고 신청인에게 말했으나, 선생님들께 확인한 결과 선생님들은 신청인이 예상되는 정도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담임의 권유로...'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선생님들은 신청인이 처음부터 서울대가 아닌 미국 대학을 목표로 했다고 기자에게 얘기했으며

기자도 그것을 들었음을 부모에게 밝혔다. 그러나 기자는 그 사실을 덮어둔 채 왜곡보도를 하였다. 즉 기자는 선생님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사를 쓴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뉴스위크의 겉표지의 "서울대 낙방하고 하버드 간다"라는 제목이다. 현재까지 하버드에 진학한 학생 중 서울대에 낙방한 경우는 없으므로 이는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 기자는 부모에게 아이비리그 대학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버드를 인용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 것이다. 특히 이규영과 관련한 기사의 내용에서 "서울대 입시에 낙방이 예상"이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쓰고 이를 제목화 함으로써 이 제목이 이규영의 경우를 예로 든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교묘한 왜곡보도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 2001년 5월 30일자판 『서울대 낙방하고 하버드 간다』는 제목의 16-27면의 기사 내용은 하버드대 입학생들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밝히며, 특히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하버드에 입학한 이규영 양과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인 인터뷰에 의한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 그 중에서도 이규영이 내신 5등급이어서 서울대를 지원했으면 낙방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이규영이 미국 대학에 조기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입시제도와는 맞지 않는 조기졸업을 하였으므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이규영 양에게 사과하며 앞으로는 보다 충실하게 사실보도를 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본 문 : 본지 2001년 5월 30일자 『서울대 낙방하고 하버드 간다』 제목의 기사에서 하버드는 미국 명문대학을 총칭한 표현일 뿐이며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에 입학한 이규영 양과 관련된 내용은 본인과의 인터뷰에 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 중에서도 이규영 양이 내신 5등급이어서 서울대를 지원했으면 낙방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이규영 양이 미국 대학에 조기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대 입시제도와는 맞지 않는 조기졸업을 하였으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이 기사로 인해 본의아니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이규영 양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뉴스위크 2001년 7월 18일자 레터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위크 한국판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2001년 7월 18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 외부세력이 관여해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경기중재24

사 건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김 원 근)

피신청인 : 경기일보

접 수 일 : 2001. 6.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일보 : (1) 『오산시 공조직 불협화음 심상찮다』 제하의 기사 (2001년 5월 28일자 17면)

내 용 :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27일 오공직협 출범 후 최근까지 공무원 등 네티즌들이 4만2천여 회에 걸쳐 직협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사이트에 올려진 상당수 E-메일이 저속어와 욕설로 표현된 채 시장 등 특정인을 비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협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실명을 회피한 채 '저승사자', '악의 꽃' 등 위화감을 조장하는 익명으로 시장 퇴진을 물론 저속어와 욕설로 일부 실·과장들을 과격하게 성토했다는 행위가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근무시간 중에 직협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 실·과는 불성실 근무자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공직협이 집행부와 잦은 마찰을 빚으며 공조직 분열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청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이유야 어쨌든 시장이나 간부들을 빔대 3류시장 등을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방한 처사는 이미 공직신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공조직 기강확립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환묵 총무과장은 "실체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이미 외부세력이 직협에 관여해 배후 조종을 감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생각에 주무 부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여 착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공조직 내부·시민들 빈축』 제하의 기사 (2001년 5월 31일자 4면)

오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원근·행정8급) 수뇌부를 주축으로 10여 명의 간부진들이 청·내외에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찬조받아 수련회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조직 내부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빈축.

30일 시와 오공직협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직장협소식에 따르면 직협수뇌부를 비롯한 13명이 지난 2월 3·4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시 소재 화인레스피아에서 제1차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했다는 것.

직협은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회비 및 직협 지원금 65만원, 쌀·닭갈비 등 기타 물품찬조 등 총 107만원의 수입 중 숙박레저비 20만원을 비롯한 버스기사 수고비(연료비) 22만원, 식대 20만원 등 102만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잔액 5만원은 직협 통장에 입금했다고 직장협소식을 통해 공개.

그러나 직협은 찬조금 12만원과 유관진 시장으로부터 격려금 30만원을 받아 경비에 충당하는 한편 쌀과 닭갈비 등 기타 물품을 찬조받아 행사를 가져 직협이 주창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스스로 도덕성을 실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2000년 9월 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오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으로서(이하 '직

협') 공무원의 권익증진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바람직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230여 회원과 더불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오산직협은 앞서나가는 문제제기와 실천적 노력으로 타 직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직협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시는 지난 60-70년대 정권홍보용으로 탄생된 주민계도지를 2000년도까지 시 예산으로 책정하여 주로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오다가 2001년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거부하여 계도지 무료배부가 2001년도 현재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5월초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다시 부활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협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이미 실효성과 명분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예산낭비 및 관연유착의 폐해가 지적되는 주민계도지를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예산 책정안을 폐지토록 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자체 운영 중인 직협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홍보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에 전국의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등 계 단체와 (사)민연련 등 시민단체와 전 국민적인 호응의 글이 홈페이지에 쏟아지며 전국으로 이슈화되었다.

이에 주민계도지 배부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일보 등 5개 지방의 오산시 출입기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동 사항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지면서 지방지 기자들의 일반적 관행과 형태를 비난하는 글들이 게재되면서 반발이 거세어졌고 급기야 게재된 글 내용을 문제삼아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제출하는 등 불만과 반발은 거세져갔다.

5월 19일 지역시민과 단체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시장은 주민계도지 예산책정을 포기함으로써 계도지 부활은 저지되었으나, 직협

적 이해당사자인 5개 지방지 기자들의 직협 흔들기 작업이 시작되면서 언론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 및 사실성을 결여한 일방적 직협 음해와 비난 기사가 4회에 걸쳐 담합된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화 하여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전 공무원과 전 국민적 바람을 무시하고 이를 주도해 가는 직협을 음해 비난 매도 기사로 일관하면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에 더 이상 이를 방기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경기일보가 지난 5월 28일자 17면에 “오산시 공조직 불협화음 심상찮다”제하의 기사에서 “이환복 총무과장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외부세력이 직협에 관여해 배후조종을 감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경기일보가 5월 31일자 4면에 “공직협 내부, 시민들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수뇌부를 주축으로 10여 명의 간부진들이 청·내외에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찬조받아 수련회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조직 내부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빈축 ... 직협은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회비 및 직협지원금 65만원, 쌀·닭갈비 등 기타 물품찬조 등 총 107만원의 수입 중 ... 그러나 직협은 찬조금 12만원과 유관진 시장으로부터 격려금 30만원을 받아 경비에 충당하는 한편 쌀과 닭갈비 등 기타 물품을 찬조받아 행사를 가져 직협이 주창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스스로 도덕성을 실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5월 28일자 17면 “오산시 공조직 불협화음 심상찮다”와 5월 31일자 4면 “공직협 내부·시민들 빈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찬조받은 내역은 시장 격려금 300,000원과 회원이 찬조한 120,000원, 쌀, 닭갈비 등이 물품찬조로 밝혀졌으며, 또한,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계도지 폐지를 위해 오산지역 외부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한 사실은 있지만 배후세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 2001년 7월 4일자 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제목(공직협 홈페이지 욕설·비방 난무)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공직협 내부·시민들 빈축’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01년 7월 4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케이블TV 시청률 조사기관인
신청인 회사의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19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티엔에스미디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 경 숙)

피신청인 : 매일경제

접 수 일 : 2001. 6.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케이블TV평가 제대로 하려면 시청자
· 가구수가 중요』 제하의 기사 (2001
년 6월 19일자 10면)

내 용 : 최근 케이블TV 방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청률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
되고 있다.

시청률이 광고영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일부 케이블TV 방송사가 케이블TV 시
청률 통계를 저마다 유리하게 가공해 경쟁적
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케이블 채널들에 대한 시청률 조사가
표본조사 대상도 많지 않고 오차가 큰 만큼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률보
다는 채널별 시청자와 시청가구 비율에 주목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C닐슨의 케이블TV 시청률 조사 허용오
차는 95% 신뢰도 범위에서 상하 2%입니다.
따라서 시청률 차이가 2% 이상 나야 의미를
갖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허용오차 범위가 2%인데 모든 케이
블TV 채널의 시청률이 허용오차 범위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다.

하순철 AC닐슨 부장은 언론사 등에 통계자
료를 제공할 때 허용오차 범위와 허용오차
범위에 있는 현재의 시청률 통계가 불완전함
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 케이블 방송사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AC닐슨의 6월 11일 시청자료는 이

를 잘 말해준다.

1위 1.38%, 2위 0.69%, 3위 0.64, 10위 0.27%
등이며 대부분의 채널은 0.1%이하에 있는 것.
인기있는 기존의 모 홈쇼핑 채널도 0.03%에
불과하다.

김규성 서울시립대 전산통계학과 교수는
“현재 발표되는 케이블TV 시청률은 통계학적
인 자료로 불충분하다”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인 만큼 공개적인 자료로 활용하기는 힘
들다”고 말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케이블TV 시청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물론 표본이 잘못됐었기 때문
이다.

현재 케이블TV 시청률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AC닐슨과 TNS의 경우 당초 지상파 방
송을 위해 패널을 선정했으나 케이블TV가 보
급되고 시청률 조사의 필요성이 생기자 별도
케이블TV 패널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지상파 방송 조사용 패널에 케이블
TV 시청가구를 일부 추가해 기형적인 패널
집단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들 조사기관들은 케이블TV 시청
패널 수가 기관에 따라 300~600가구 정도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케이블TV를 보는 가구는
이의 20~25%인 60~120가구에 불과하다고
실토했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케이블TV의 영향
력과 비중을 알기 위해서는 시청률보다 시청
가구 비율과 시청자 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 자료인 6월 11일자 AC닐
슨의 케이블TV 시청분석 요약자료를 보면
매일경제TV는 하루 시청자수가 24만9000명,
시청가구 비율 역시 6.8%선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MBN보다 시청률에서 앞섰
다고 주장하는 한경와우TV 12만7000명, 시청

가구 비율 2.8%에 비해 시청자수는 약 2배, 시청가구 비율은 2.4배 높은 수치이다.

시청가구와 시청자 수에서 이렇게 뒤떨어지면서도 시청률이 앞서는 것은 물론 가구당 시청시간 때문이다.

시청률은 시청 가구수에 시청시간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의 케이블TV시청률 조사처럼 패널수가 적을 때 한두 패널가가 특정 채널의 시청률을 높일 목적으로 장시간 시청할 경우 해당 채널이 상위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TNS 미디어 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매일경제 2001. 6. 19 일자 10면 『케이블TV 시청률 믿을 만한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케이블TV 시청률 자료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보도내용 전반에 걸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내용을 작성하고, 타 시청률 조사회사의 잘못된 시청률 조사과정을 언급할 시 해당 조사 회사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시청률 조사회사처럼 부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TNS 미디어 코리아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조차 마치 TNS와 관련된 사항인 것처럼 허위보도 하여 TNS 미디어 코리아의 시청률조사사업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실추시켰다.

이처럼 심히 왜곡된 보도로 인해, TNS 미디어코리아는 조사회사로서 중요한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시청률 조사 사업과 관련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도가 매일경제의 자사인 MBN, MKS와 한국경제신문의 자사인 한경와우 사이의 과당 경쟁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TNS 미디어코리아로서는 보도의 부당함을 더욱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매일경제 2001 년 6월 19일자 10면 『케이블TV 시청률 믿을 만한가』 제하의 기사 내용 중 타 시청률 조사회사의 잘못된 시청률 조사과정을 언급할시 해당 조사회사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시청률 조사회사로만 명기하여 마치 TNS 미디어 코리아도 타 시청률 조사회사처럼 부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TNS 미디어 코리아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조차 마치 TNS 와 관련된 사항인 것처럼 보도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TNS 미디어 코리아 시청률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6월 19 일자 기사를 바로잡으며, 이로 인해 TNS미디어 코리아의 시청률 조사사업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실추 시킨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6월 19일자 10면 『케이블TV 평가 제대로 하려면-시청자·가구수가 중요』 기사 중 "일부 케이블TV 시청률 조사회사가 별도의 케이블TV 패널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 지상파 방송 조사용 패널에 케이블TV 시청가구수를 일부 추가해 기형적인 패널집단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TNS미디어(대표 민경숙)는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TNS미디어는 "현재 TNS의 패널 304 가구 중 10분 이상 케이블을 시청하는 가구는 전체 케이블 가입인구 중 80.6%에 달하고 있

어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10면에 2001년 7월 9일자 이전에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고침』 제하의 기사(2001년 7월 7일자 3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 버스조합의 특혜로 버스카드 이용권리를 무료로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198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국심트리
(대표이사 김 학)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1. 6. 26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2001년 6월 10일 21:45)

내 용 : ▷진행자 : 토론이 없어지고 버스카드가 도입된지 올해로 4년이 지나면서 버스카드 기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화폐시장 등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조합 무능력으로 수입금은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한푼도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앞에 목돈은 챙기지 못하고 요금인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이 버스업체 부도위기는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지금까지 발행된 카드는 350만장. 카드회사는 버스기능을 쓴 대가로 모두 45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협약서 내용 화면방영) 협약서를 1부 확보했습니다.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옷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계약당사자는 버스카드시스템을 개발한 인텍크와 카드납품한 회사로 버스조합은 빠져있습니다. (중략)

▷기자 : 인텍크는 신용카드사를 끌어들이 사업을 한만큼 당연히 이득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텍크에게 버스조합이 버스카드 시스템 독점운영권을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이득분배 협약이 맺어진 4년 전에는 버스조합은 이런 이득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다만 신용카드로도 버스를 탈 수 있다는 데 만족했던 것입니다. 조합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합전무 : 우리조합이 3자간 입회하에 계약이 됐다면 당연히 얼마간의 우리 몫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를 제쳐놓은 자기들 당사자간에 얘기를 할 때 인텍이 자기몫을 키우기 위해서야 조합이 얼마간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조합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자: 결국 버스업체들은 눈을 뜨고도 많은 수익을 남의 손에 넘겨주고 만 꼴입니다.

▷기자 : 충전된 카드전자학생증입니다. 전자학생증은 학생 등에게 큰 인기입니다. 학생카드는 매점이나 식당이용이 다 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다 해결되기에 편합니다. 버스카드

는 전자화폐기능이 추가되면서 대학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학생증 기능을 개발한 이 벤처업체(심트라)는 매년 매출액이 두배로 늘었고 올 목표는 15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버스조합은 이 벤처기업에게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버스카드 이용권리를 공짜로 독점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 협약서 자막 : '심트라는 교통카드 학생증에 대해 독점적 활용권을 갖는다.' 버스조합의 이런 특혜배경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 심트라 등기부등본 방영 : 이사 이○○ 2000년 3월 20일 취임 버스조합의 임원부인이 이 회사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결과 이 임원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 3만주를 4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입당시 벤처열풍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2001년 6월 10일 방영된 MBC-TV 「시사매거진 2580」의 '집중해부 버스카드'에 대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MBC측이 취재차 방문했을 때 취재동기를 5월 27일자 조선일보의 "서울시 교통카드를 기업체 및 대학교 ID카드에 그 기능을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하여 신청인 회사에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신청인 회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9년동안 정상적으로 성장한 회사를 서울시 버스조합의 특혜로 성장했다는 보도로 전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회사 이미지가 생명인 벤처기업에 MBC의 이

러한 보도행태에 보도내용의 정정 또는 MBC측의 사과를 요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본 방송의 지난 6월 10일 "집중해부 버스카드-남는 돈은 많다는데"의 방송내용 중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벤처기업에게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버스카드 이용권리를 공짜로 독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내용, 버스조합의 임원 부인이 이 회사의 이사로 올라가 있다는 내용, 전자학생증 기능을 개발한 이 벤처기업은 매년 매출액이 두배로 늘었고 올 목표는 15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심트라측에서는 "버스카드 이용권리를 공짜로 독점했다는 보도에 관해 3년 여의 연구개발 끝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학생증의 다기능화를 제안하였고 이에 버스조합에서도 교통카드확대보급 및 조합부담의 카드비용절감 등이 기대되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심트라에서 발급장비, 단말기, 연구인력 등의 막대한 투자를 하였기에 일정기간 시장보호를 위하여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방송 이전인 2001년 5월 28일 독점적 지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조합의 임원 부인에 대한 이사등재문제는 회사모양을 갖추기 위해 명분뿐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이고 방송에서는 마치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만 방송 이전인 2001년 4월 4일부로 본인의 사외표명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전자학생증 개발로 매년 급성장 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심트라는 교통카드매출은 2000년 매출기준으로 15%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전자화폐솔

루선 및 전국 운전면허 발급시스템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써 마치 버스조합의 특혜로 회사가 급성장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6월 10일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집중해부 버스카드」 제하의 보도에 대해 전자학생증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심트라는 버스조합과의 계약 당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이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으며, 방송 이전인 5월 28일에 독점적 지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시사매거진 2580」프로그램 (2001년 7월 22일 22:3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203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양경규)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1. 6. 2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불법파업엔 정부 강력 대응해야』 제하의 기사 (2001년 6월 13일자 2면)

내 용 : 나라 전체가 가뭄 걱정으로 뒤덮이면서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제 총파업을 강행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사상 초유의 항공사 동시 파업에 돌입해 항공(航空)대란이 일어나는 등 1백25개 사업장에서 5만 5천여 명이 연대파업에 들어갔다. 또 오늘은 서울대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12개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 '의료대란'도 시작된다. (중략)

물론 지금의 시국을 감안해 단체교섭에 성실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을 것이고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들과의 기세싸움에서 밀리면 설 자리가 없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따가운 국민 시선과 중대 고비에 직면해 있는 경제를 감안했다면 지금은 기세싸움을 위한 파업을 해선 안된다.

또 우리는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재벌과 금융개혁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영거주춤한 자세를 취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시장원칙에 위배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파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엔 단호히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0만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으로서 중앙일보 6월 13일자 『불법파업엔 강력대응해야』라는 제하의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신청한다.

사실은 조종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며, 현재 대부분의 관례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즉 이번 대한항공조종사의 파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재판을 거쳐야 판가름나는 사안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6월 13일자 『불법파업에는 정부 강력 대응해야』라는 제하의 사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재판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6월 13일자 사실 및 6월 15일자 ‘취재일기’와 5면 『불법파업 악순환 끝내자』 기사에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로 보도한 것에 대해 공공연맹(위원장 양영규)측은 관례 등에 비추어 불법으로 미리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1년 7월 7일까지 2면 「바로잡습니다」란에 게재하되,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확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 제하의 기사 (2001년 7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시의회 의원겸 수편집배원인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빙자해
수편집배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전북중재 1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장복수

피신청인 : 전북도민일보

중재부 : 전북중재부

접수일 : 2001. 6. 2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시의원인가, 집배원인가?』 제하의 기사 (2001년 5월 29일자 15면)

내 용 : 남원시의회 J의원이 의정활동을 빙자해 본업인 우편집배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동료 집배원들의 원성

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감독관청인 남원우체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

남원시 주생우체국에서 별정2종 집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원시의회 J의원(46)은 연간 80일간의 회기는 물론 해외연수, 의원총회, 의원세미나 등 각종 의회 활동을 구실로 매월 1백60여 만원의 월급을 받는 우편집배 업무는 아예 뒷전이고 의정활동에 따른 공가 이외에도 기타 명목으로 결근을 반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J의원의 집배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1월에 16일, 2월에 15일, 3월에 17일, 4월에 15일밖에 근무하지 않는 등 월평균 근무일이 보름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정활동에 따른 공가, 연가, 일요일을 제외한 결근일수가 매월 4~5일씩인데도 문책 한 번 받지 않고 우체국 월급을 전액 수령,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J의원은 또 작년과 올해동안만 유럽해외연수 10박11일, 중국 염성시 방문 5박 6일을 포함 국내·외 연수 명목으로 집배근무를 한 달 가량 빠진 것으로 밝혀져 동료집배원은 물론 감독기관인 남원우체국이 불만과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

한편, 전북채신청 관계자는 "J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가 처리는 적법하나 무단결근, 근무불성실 문제 등 복무관리는 해당 우체국장 소관이다"며 답변을 피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북도민일보가 2001년 5월 29일자 15면 "시의원인가, 집배원인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남원시우체국 산하 별정 2종 집배원으로 근무하

고 있으면서 남원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법과 규정에 따라 집배활동 및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기 동료집배원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신청인은 의정활동 수행시에는 남원시의회 의장의 협조공문에 의거 근무상황부에 법과 규정에 의거 공가를 득한 후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 결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공가 이외의 사적인 일을 수행시에는 연가를 득하였다. 관계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셋째, 2001. 1. 1부터 4월말까지의 근무일수 63일은 사실과 다르며 공휴일·연가·공가를 제외한 69일을 근무하였다.

넷째, 남원시우체국산하 집배원 39명 모두는 전국최초로 집배원으로서 지방의원에 선출된 본인이 남원시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동료집배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위 사실과 같이 내용이 과장된 추측성 보도로 신청인과 동료집배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기에 명예회복을 위하여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전북도민일보는 2001년 5월 29일자 15면에 『집배원인가, 시의원인가?』 제하의 기사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남원우체국산하 집배원 모두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은 채 작성된 기사임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장복수 시의원과 남원우체국산하 집배원 모두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본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남원시 장복수 시의원 집배업무 소홀한 적 없어

· 내 용 : 남원시 장복수 시의원은 지난 5월 29일자 15면 『시의원인가, 집배원인가?』 제하의 보도에서 '남원시의회 J의원이 의정활동을 빙자해 본업인 우편집배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동료 집배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의정활동 수행시에는 남원시 의회 의장의 협조공문에 의거 공가를 득한 후 의정활동을 실시하였고, 공가 이외의 사적인 일을 볼 때는 연가를 내어 활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과 집배원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집배원출신의 지방의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준 동료집배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도민일보 : 『남원시 의회 장복수 의원 집배업무 소홀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2001년 7월 9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퇴보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증재21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성 삼 제

피신청인 : 한국일보

증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1. 7.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국사교육, 개혁인가 개악인가』 제하의 기사 (2001년 6월 26일자 6면)

내 용 : 일본에서 문제 많은 왜곡 역사교과서가 나와 인기리에 시판된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국에선 국사교육이 퇴보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어 거둬들인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중·고교 역사교육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과정은 국사교육의 골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일찍부터 국사 선생님들이 걱정했지만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고교 국사교과서를 두 권으로 편찬, 1학년은 조선후기까지 필수로 가르치고, 근현대사 부분은 2, 3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한 마디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시책이다.

한 한국사 전공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일제타협세력이 주축이 된 분단국가건설과 개발독재를 지나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의 길을 제시하는데 평가가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국민에게 가르치는 근현대사교육을 크게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것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다. 개혁을 명분으로 집권

청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 한국근현대사부분을 선택 과목으로 정하고 있어 국사교육을

한 정권이 개악을 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7차교육과정 실무대책반장과 일본 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실무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국일보 2001년도 6월 26일자 '메아리' 『국사교육, 개혁인가 개악인가』 칼럼에서 “국민의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중·고교 역사교육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과정은 국사교육의 골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일찍부터 국사 선생님들이 걱정했지만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고교 국사 교과서를 두 권으로 편찬, 1학년은 조선후기까지 필수로 가르치고, 근현대사 부분은 2, 3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한 마디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시책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그 체제와 운영이 다른 교육과정으로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동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서는 국사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전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 국어교과의 경우 고등학교 2, 3학년과정에서는 국어라는 과목은 없고,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고, 수학교과의 경우에도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등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차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서의 고등학교

1학년 국사과목에서는 고대사·중세사뿐 아니라 근·현대사도 다루고 있다. 선택과목에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뿐 아니라 '음악사', '미술사', '무용사'를 비롯하여 6차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던 '문학사', '연극사', '사진사' 등의 과목이 신설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넓어져 결코 7차 교육과정의 역사교육이 6차 교육과정보다 약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의 동 칼럼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잘못이 있다. 사실과 다른 동 칼럼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국사교육이 필수과목에서는 근·현대사를 다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2001년도 6월 26일자 '메아리' 『국사교육, 개혁인가 개악인가』칼럼에서 “국민의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중·고교 역사교육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과정은 국사교육의 골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일찍부터 국사 선생님들이 걱정했지만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고교 국사 교과서를 두 권으로 편찬, 1학년은 조선후기까지 필수로 가르치고, 근현대사 부분은 2, 3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한 마디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시책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1학년 국사과목에서는 조선후기뿐 아니라 근·현대사 부문도 다루고 있어 위의 칼럼 중 해당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성삼재

합의사항

- 제목 : 고침
- 내용 : 본지는 6월 26일자 6면 『국사교육, 개혁인가 개악인가』 칼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 중 고교 역사교육 개편안은 '고교 1학년은 조선후기까지는 필수로 가르치고, 근현대사 부분은 2, 3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은 고교 1학년 국사과목에 조선후기를 포함하여 근현대사까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오피니언면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1년 7월 14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명예퇴직을 결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전북중재 1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김 병 기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1. 7.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일보 : (1) 『학력 허위 기재 사실 들통 고창경찰서장 명예 신청』 제하의 기사 (2001년 6월 22일자 19면)

내 용 : 고창경찰서 김병기 서장(50)이 인사기록 카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 이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던 김서장의 명예배경은 최근 본청 감사결과 김서장이 고교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지적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장은 경찰 인사기록카드에 '광주 S공고 69년 졸업'으로 기재했지만 본보 취재확인결과, 김서장이 졸업했다는 S공고 졸업자 명단에 김서장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서장은 지난 66년 정읍 H고등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 3학년때 광주의 S실업공고(현 S공고)로 전학, 그 해 9월께 제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명예퇴직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서장은 "5년여 전 친구와 함께 공동투자사업을 벌였으나 불미스런 일로 송사(訟事)가 이어져 명예퇴직을 결심했다"며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한 명예퇴직 사실을 숨겼었다.

(2) 『보협사기 가담·학력위조·조직내부 마찰 전북경찰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2001년 6월 23일자 19면)

'경찰개혁'이라는 경찰내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경찰이 각종 물의를 일으키면서 경찰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보협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학력허위를 기재한 고위간부가 퇴직하는 일이 드러나 경찰에 대

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전북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친구와 싸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금을 타낸 익산 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35) 등 5명에 대해 보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중략)

고창경찰서 김병기 서장은 또 고교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최근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장은 "개인적인 송사에 휘말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말하지만 학력 허위기재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경찰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 도민들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등 기강이 매우 해이해진 것 같다"며 경찰의 근무기강확립이 새롭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고창 경찰서장으로서 전북일보 6월 22일 사회면 "학력 허위기재 사실 들통 고창경찰서장 명퇴신청"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고창경찰서 김병기 서장이 인사기록 카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 이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인사기록카드 상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바도 없으며 사퇴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명퇴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신청인은 인사기록카드에 경찰 임용당시 정읍 농림고 3학년 졸업, 유도대학 1년 졸업으로 기재하였다가 2000년 말 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2001

년 1월5일 정읍 호남고 2년 중퇴, 광주 송신고 3학년 재적으로 정정하였으므로 현재는 인사기록카드상 허위 기재가 아님에도 허위기재한 것으로 허위 보도하였다.

또한 학력 허위기재로 인한 명예퇴직사실을 숨겼다고 보도하여 신청인을 파멸시킨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자회견에서 설명한대로 경찰고급 간부로서 송사가 이어져 조직에 누가 될 뿐 아니라 정신적 압박도 받아 명퇴신청을 하였을 뿐인데도 학력 허위기재로 지적되어 사퇴압력을 받아 명퇴신청을 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6월 23일 사회면 박스기사에서도 "전북경찰 왜 이러나" 제목의 기사에서도 보험사가담, 학력위조, 조직내부파찰 등의 소재목으로 보도하면서 또 다시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를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허위보도반으로도 부족하여 익산경찰서 이모 경장, J파출소 윤모 경위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보도하면서도 유독 신청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론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음을 물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6월 22일자 사회면에 "학력 허위기재 사실 들통 고창경찰서장 명퇴 신청" 제하로 "고창경찰서 김병기 서장(50)이 인사기록 카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 이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던 김서장의 명퇴배경은 최근 본청 감사결과 김서장의 고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지적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장은 경찰 인사기록카드에 '광주 S공고 69년 졸업'으로 기재했지만 본보 취재결과, 김서장이 졸업했다는

S공고 졸업자 명단에 김서장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서장은 지난 66년 정읍H고등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 3학년때 광주의 S실업공고(S공고)로 전학, 그해 9월 제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명예퇴직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서장은 "5년여 전 친구와 함께 공동투자사업을 벌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송사(訟事)가 이어져 명예퇴직을 결심했다"며 학력허위기재로 인한 명예퇴직 사실을 숨겼었다." 그리고 6월 23일자 사회면에 "전북경찰 '왜 이러나' 보험사기 가담, 학력 위조, 조직내부 마찰" 제하의 기사에서는 "고창경찰서 김병기 서장은 또 고교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최근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장은 '개인적인 송사에 휘말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말하지만 학력허위기재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고창경찰서 김병기 서장은 경찰청 인사기록카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인사기록카드를 정비한 사실은 있으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학력 허위기재로 인한 본청 감사를 받았던 사실도 없었으며 퇴직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김병기 서장은 개인적인 송사가 행여 조직에 누가 될까 두려워 명예퇴직을 결심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고창경찰서장 명퇴 허위 학력과 무관"
- 내 용 : 본보 지난 6월 22일자 19면 『학력 허위기재 사실 들통, 고창 경찰서장 명퇴신청』, 6월 23일자 19면 『전북경찰 '왜 이러나'』제하의 각 보도에서 "고창경찰서 김병기 서장이 인사

기록 카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 최근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서장은 경찰청 인사기록카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인사기록카드를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퇴직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서장은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된 것은 경찰고위 간부로서 개인적인 송사에 휘말려 전체 경찰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이 기사와 관련 김서장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1년 7월 12일자 19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크기는 중재대상기사(2001년 6월 22일자)의 제목(학력 허위기재 사실 들통...)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고창 경찰서장 명퇴 허위 학력과 무관"』 제하의 기사 (2001년 7월 21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효성울산공장 노동조합의 파업당시 사노맹과 한총련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22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전국민주화학섬유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길성)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1. 7. 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잇단 분류…경기 회복세 찬물”』
제하의 기사 (2001년 6월 5일자
13면)

내용 : (전략) 재계는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6월 12일 총력 투쟁과 한국노총의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계기로 전국의 산업현장이 활화산으로 변할 것이란 걱정이다. 특히 효성울산공장이 지난달 29일 사노맹과 한총련의 개입으로 외부와 단절되고, 국내 에틸렌 생산의 4분의 1을 맡고 있는 여천 NCC공장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불법파업 방치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정부가 사태를 계속 방치하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노조가 총파업 참여를 위협 중이다. 또 6월 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대형 사업장의 노사 협상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올 들어 노동위원회에 쟁의(爭議)조정 신청을 낸 사업장이 378개에 달하며, 이 중 140개 업체에서 쟁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노동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손낙구 민노총 교육교육선전실장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게 6월의 투쟁의 목표”라며 “파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

식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도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경기 후퇴는 정부와 기업책임”이라며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잇단 노동관련 입법 논의도 노사 분류에 약재(藥材)다. 6월 임시국회에선 모성(母性) 보호관련 법률이 신설·개정될 예정이고, 가을 정기국회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비(非)정규직 보호 문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효성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며 위임받은 사람은 화학섬유연맹 선전국장으로서 조선일보 6월 5일자 13면(경제면) 『총파업 철회 요구 재계 ‘성명서’ 배경/ “잇단 분류…경기회복에 찬물”』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특히 효성울산공장이 지난달 29일 사노맹과 한총련의 개입으로 외부와 단절되고, 국내 에틸렌 생산의 4분의 1을 맡고 있는 여천NCC 공장 파업사태가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불법파업 방치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노맹이란 단체는 이미 오래 전에 해체된 단체이며 한총련은 조직적으로 효성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이 노조의 집회에 지원을 오기는 하지만 노조의 모든 행동은 노조에서 결정한다. 피신청인의 기사가 있지도 않은 사노맹이란 단체를 거론한 것은 ‘사노맹’이란 단체가 갖는 국민적인 거부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며, ‘한총련’을 거론한 것은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투쟁성을 부각시킴으로서 두 단체와 관계없는 노조를 마치 폭력무장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답고 있다. 신청인은 위의 기사로 인해 폭력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노조의 투쟁이 외부세력들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오해를 사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6월 5일자 13면(경제면) 『총파업 철회 요구 재계 '성명서' 배경/ "잇단 분규...경기회복에 찬물』제하의 기사에서 "특히 효성울산공장이 지난달 29일 사노맹과 한총련의 개입으로 외부와 단절되고, 국내 에틸렌 생산의 4분의 1을 맡고 있는 여천NCC 공장 파업사태가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불법파업 방지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사노맹은 이미 해산한 단체이며 한총련도 조직적으로 효성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기사로 인해 마치 폭력세력인 양 매도당하는 피해를 입은 효성노조와 효성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5일자 13면(경제면) 『총파업 철회 요구 재계 '성명서' 배경/ "잇단 분규...경기회복에 찬물』제하의 기사에서 "특히 효성울산공장이 지난달 29일 사노맹과 한총련의 개입으로 외부와 단절되었다는 경총측의 회견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측은 "사노맹은 이미 해산된 단체이므로 효성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

하는 조선일보 경제 2면에 상자기사로 7월 14일까지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20급 고딕으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1년 7월 13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정부와 유착하여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24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성 유 보)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1. 7.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김영배 칼럼-또 하나의 권언유착』 제하의 기사 (2001년 7월 3일자 6면)

내 용 : 언론세무조사 결과라는 것을 국제청이 발표하던 날 같은 시각에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팽과리를 울리며 언론개혁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발표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이제 검찰이 나서서 비리 언론사주를 구속하고 언론사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은 시각에 짜맞춘 듯 벌이고 있는 이 두 개의 행사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새로운 권언유착(權言癒着)의 함축적 의미를 보여주는 듯했다. 언론의 가장 큰 금기(禁忌)는 권력과의 유착이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직업수칙이다. 우리 언론사(言論史)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부터가 바로 그런 원칙을 외면하는 풍토가 만연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권언유착은 신문개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들이 부르짖고, 정부가 포괄적 세무조사를 벌이고, 방송을 비롯한 친여 매체들을 동원해 압박하는 이 신종 권언유착 현상을 개혁하기 위한 권언유착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략)

시민단체들은 언론개혁의 이유를 제도언론의 수구성 때문으로 몰아붙인다. 언론의 색깔은 보수·진보·중도로 다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해야 한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구로 몰아붙이고 또 그 이유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당의 '선전 선동' 기능쯤으로 여기는 사회주의적 언론관이나 진배없다. 언론세무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신문재편설이 끈질기게 나돌고 있다. 일부 탈법신문의 소유구조를 바꾼다는 소문이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보수신문들이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령 소유구조가 바뀐들, 그 신문의 논조가 '진보'로 바뀐들, 그것을 받아주고 말고는 독자들의 몫이 아닌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진보적인 신문들이 독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마치 기존 신문판매망의 배타적인 운영이나 과도한 관측비용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들 '진보

적' 신문의 구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비판기능을 상실한 그들의 친여적(親與的) 보도 행태 때문인지, 판매망 때문인지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진보적 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진정 언론개혁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언론에 대한 권력의 과도한 개입만큼은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을 불러들이고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을 찬양하니 5공시절의 '땡선뉴스'를 다시 듣는 느낌이다. 행여 정부가 그들의 좌파적 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탓을 '보수언론'에 돌리거나, 또는 내년 대선에서 지지성향을 변조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식의 언론개혁에 맞장구친다면 그것은 큰 착오다. 만약 정부 내의 진보파와 시민단체들이 이런 언론개혁을 의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언론개혁이랄 수 없다. 그것은 권력의 힘을 빌린 인위적 언론재편이며, 소름끼치는 민심 조작 기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바로 2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것이 단순한 음모론일 뿐인가. 신종 권언유착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우리는 독자들과 함께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지난 3월 30일 전국의 16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연대하여 신문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민주적 개정과 신문시장정상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독자주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에는 신문개혁국민행동 주최로 한국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개혁 6월 선언' 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발표와 사주 고발은 당일 연합뉴스와 방송사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입장을 성명어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6월 29일 신문개혁국민행동 행사가 국세청 발표와 같은 날 벌어졌다고 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왜곡하여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신청인 신문개혁국민행동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제도언론의 수구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신문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홍보물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한국신문의 불공정 편파 보도 문제와 무가지 및 경품 제공, 강제 투입으로 인해 독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선거 때면 일부 언론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여 편파 시비를 불러 일으켜 왔고, 97년에는 외국언론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경고했으나 이를 외면함으로써 사회 환경감시기능을 방기하여 IMF 사태를 불러오는데 책임이 있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나 시민단체들의 사회개혁 요구에 관한 보도는 축소됨으로써 한국 신문들이 정부와 자본의 편에서 보도하는 태도를 비판해 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언론개혁의 이유를 제도언론의 수구성 때문이며 언론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당의 선전선동 기능쯤으로 여기는 사회주의적 언론관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다.

또한 신청인 신문개혁국민행동은 불공정 편파보도의 책임은 국민과 기자들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났듯이 언론사의 사주와 경영진의 간섭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유력 신문사들의 경우 족벌사주가 경영권을 대대로 세습하며 편집, 경영, 인사권을 장악하여 지면을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문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편집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혼탁한 신문시장질서로 인해 독자들인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또한 신청인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권언유착을 근절하여 언론이 정치권력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 감시함으로써 권력과 언론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권력을 불러들여 권언유착을 찬양하고 있다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2001년 7월 3일자 6면에 “김영배 칼럼 또 하나의 권언유착”에서 시민단체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중앙일보는 2001년 7월 3일 『김영배 칼럼 - 또 하나의 권언유착』 제하의 기사에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되던 날인 지난 6월 29일 시민단체가 별인 행사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국세청 발표내용을 미리 알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짜맞춘 듯 행사를 벌였다는 것은 사실과 틀리며, 이날 행사는 신문개혁국민행동 주최로 가진 ‘언론개혁 6월 선언’ 행사로서 이미 6월초에 계획된 행사였고, 행사 시작 전 국세청 발표 내용은 알지도 못했으며, 행사 중간에 연합뉴스와 방송사의 보도를 보고 성명을 작성하여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는 언론개혁의 이유가 제

도언론의 수구성 때문에 개혁을 통해 언론을 획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시민단체들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면서 권력을 불러들이고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을 찬양했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근거없이 훼손한 내용으로써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신청인 :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국민행동 대표 성 유 보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7월 3일자 6면 『김영배 칼럼-또하나의 권언유착』에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되던 날인 지난 6월 29일 시민단체가 벌인 행사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발표내용을 미리 알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은 시각에 짜맞춘 듯 행사를 벌였다고

했으나 당일 시민단체행사를 주최했던 신문개혁국민행동은 “당일행사는 이미 6월초에 행사를 계획한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시민단체들이 신문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제도언론의 수구성 때문이 아니라 신문들의 불공정 편파 보도와 불공정한 신문시장질서로 인해 독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7면에 2001년 8월 2일 이내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1년 7월 28일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1. 8. 30.자 결정 (2000헌바36)

사실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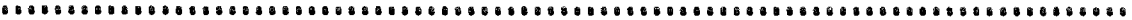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001년 8월 30일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방송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재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부패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검열금지의 원칙을 모순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

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민·형사책임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굳이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민·형사책임의 추궁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



후보도의 청구는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훼손된 명예의 회복 등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이에 가처분에 의한 사전 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회와 이○○은 문화방송이 제작 중이던 <PD수첩>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와 여자신도들간의 성추문 관련부분의 방영을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자, 문화방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 건 : 2000헌바36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김○배
 소송대리인 : 변호사 한상호, 최정수, 이석연, 박성하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99나27783 방영금지가처분
 주 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MBC TV로 방영되는 시사교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하여 1999. 4. 15.경부터 ○○○대한연합성결교회○○○○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와 그 대표자인 당회장 이○록에 대한 이단성 문제, 당회장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및 도박문제 등을 방영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는데, ○○○교회와 이○록은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999. 4.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카합1131호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1. 이○록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관련부분의 방영을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99나27783호로 항소하면서, 같은 해 12.경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99카956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 바, 2000. 4. 20.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되 이○록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관련 부분은 방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위 신청도 기각되자, 같은 해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0. 5. 8.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2000다22980호로 상고하였고 현재 계속 중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를 포함한 같은 법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의 목적】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박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기 전에 그 방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방영되기 전에 그 방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결국 법

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처분에 위와 같은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1헌바20. 판례집 7-1, 615, 626; 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51-252 참조).

5. 본안 판단

가. 사안의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①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같은 법조 제2항)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때문에 현재 채권자가 겪고 있는 생활관계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그 해결시까지 기다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형성하거나 그 사실적 실현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실무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인 부작위의 가처분은 민사

소송법 제7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구하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와 동일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그 유형으로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금지 또는 단순한 부작위의 가치분,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에 착안점을 두어 채무자가 여기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수인의무를 지움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해금지의 가치분, 채무자가 이루려는 법률상 절차의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려는 절차정지의 가치분 등이 있고,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가치분은 바로 금지 또는 단순한 부작위의 가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TV 방송 역시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이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 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따로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이다.

다만, 여기서의 “검열”은, 개인이 사상이나 의견 등을 발표하기 이전에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바26, 판례집 4, 362, 370-371;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9-760;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2-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5-126).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방영금지가치분을 포함시켜 가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

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한계 이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에 따른 제한도 가능하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처분제도가 언론의 자유만을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의거, 방영금지가처분이 가능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민·형사 책임이나 반론 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굳이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공적 이해에 관계된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도, 논평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성명권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해와 같이 타인의 법익 내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바로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우리 법에 있어서 인격권의 보호수단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와 제313조의 신용훼손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있고,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절차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및 추후보도청구권(제20조)과 방송법 제91조의 반

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민·형사 책임의 추궁이나 반론 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는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훼손된 명예의 회복 등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억제,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가 허용된다 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이외의 다른 간접적 방법에 의한 의사표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가처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특히 금지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충돌하는 두 법익(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 등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전금지 가처분의 허용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위 가처분의 필요성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 또한 충족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인격권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익 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그 심사기준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인격권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7), 본건에 있어서 ○○○교회 대표자 이○록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바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인격권의 내용 및 그 침해 정도, 두 가치 사이의 비교·형량 등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적 인물과 사인간에 심사기준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근거로 주장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치분에 방영금지가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희

〈별지〉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치분에 관한 규정으로서, 만약 방영금지가처분이 이에 포함되어 TV를 통한 방영 전에 법원이 그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면, ①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에 법원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방영내용을 사전 억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방송, 방영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②방영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당사자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상 처벌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의 허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개별적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방영금지청구권 등 사법상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심리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한다 하여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가치분제도의 특성상 다소의 불명확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논리라면 모든 가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된다.

(2) 가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① 사전억제 내지 검열 금지의 원칙은 부당한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립된 이론일 뿐,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 피해를 수용한 다음 사후구제조치를 취하려는 의미의 원칙이 아니고, 가치분제도는 임시적, 잠정적 조치로서 최종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사후방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사전억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② 또한, 방영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보호되는 당사자의 인격권과 비교할 때 위 가치분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

판결 2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1. 7. 26.자 판결 (2000나2574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

판사)는 2001년 7월 26일 조영선 전직 검사가 문화방송과 소속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 있는 공중파 TV방송의 정규뉴스는 특히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방송의 표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다소 지나친 것이기는 하나 공인의 공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6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문화방송이 1999년 3월 6일과 3월 21일 「MBC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과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검사인 원고가 전과조회만 하였다 라면 조모 씨가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전과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처벌받아 형이 확정된 소외 조모 씨를 또다시 기소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중기소는 명백히 검사인 원고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모 씨가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검찰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조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였다는 내용 등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0나2574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조영선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9의 10 3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강호성, 손석봉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중배

2. 이용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00의 302 (16동 3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류용현

변 론 종 결 : 2001. 5. 24.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28. 선고 99가합2207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1. 부터 200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의 1, 2, 강제3호증의 1 내지 14, 23 내지 26, 강제4호증의 1 내지 8, 강제5호증, 강제6호증의 1 내지 13, 강제7호증의 1, 2, 강제8, 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이병수, 양동암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 이용마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3.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초임발령을 받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방송보도 후인 1999. 8. 31. 경 사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용마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

(1) 피고 회사는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하에 조남환에 대한 검찰의 이중기소사실을 보도하였다. 당시 앵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고 이용마가 조남환(이 사건 방송에서는 성남시 하대원동에 사는 조모 씨로 익명보도 됨)이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 반이 지난 1998. 9.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다니 두 사람이 웃더라구요…”라고 하는 조남환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후 피고 이용마 기자가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기본적인 전과조회를 실시하였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검찰 참여계장의 부정적인 답변을 방송하였다. 다음 피고 이용마 기자는 조남환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풀려났다가 한 달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자 검찰이 그를 횡령죄로 이중기소하였다고 설명한 후 담당검사는 사건이 고소인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되어 있었기에 조남환이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한다면서 “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무슨 잘못을 할 수 있겠나. 잘못 났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날 것 아닌가”라는 내용의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고, 위 이용마 기자가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1999. 3. 21.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

목 하에 명예훼손 혐의로 조남환을 구속한 검찰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당시에 앵커가 검찰의 이중기소에 대한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검찰이 사과는커녕 조남환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하여 보복수사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한 후 피고 이용마 기자가 조남환이 성남지청 조영선 검사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검찰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남환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문제가 된 이 사건 제1방송에서의 조남환과의 인터뷰 부분을 보도한 후 피고 이용마 기자가 검찰은 조남환이 조사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면서 검찰을 비방하기 위해서 문화방송측에 허위 제보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중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논평한 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후, "검찰의 명예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설명으로 보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

다. 방송의 경위

(1) 박상정은 1994. 10. 13. 조남환과 김창근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자 이를 할인한 후 그 돈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조남환과 김창근을 성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경찰보

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 28. 성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은 병합되지 아니한 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고소사건도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는 위 박상정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4년 말경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박상정의 소재가 발견되자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은 1996. 12.경 재기되어 조남환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위 법원은 1997. 3. 21. 위 조남환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2) 한편, 박상정은 1998. 9. 3.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있던 경찰고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성남지청에 재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 원고는 같은 달 24. 조남환을 소환하여 박상정과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나, 위 조남환은 조사를 받는 동안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줄 것을 호소하였을 뿐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자신이 같은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조남환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후 5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동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동인을 일단 긴급체포한 후 청내 경찰관실에 1시간 가량 대기시켰다가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는데, 위 조남환이 합의기간을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인 점을 참작하여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긴급체포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조남환을 귀가

조치하였다.

(4) 그러나 그 후 조남환이 약정한 기간까지 박상정과 합의도 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자, 원고는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상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따로 제2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이후 위 조남환에게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8. 10. 23. 위 조남환을 횡령죄로 성남지원에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조남환은 그 공판기일인 1999. 2. 5.경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같은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합의를 위한 시간만을 요청하여 다음 공판기일이 1999. 3. 12.로 지정되었다.

(5) 한편 조남환은 1999. 3. 2. 피고 회사 성남지국 사무실로 피고 이용마를 찾아가 제2사건으로 인하여 이중기소되었다고 제보하면서 원고나 참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다니 웃더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6) 피고 이용마는 조남환을 취재한 다음, 1999. 3. 3. 원고를 찾아가 위 조남환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정판결문까지 제시하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변호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불법구금하였다가 그래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자 이중으로 기소하였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조남환이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의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주임검사로서 업무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검사로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서도 이중기소를 할 검사는 없고 그러한 일은 검사로서는 자살행위이다. 오해로 인한 왜곡보도를 삼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이용마는 참여계장과 고소인과의 결탁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 해명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성남지청 형사 1부장실을 방문하였는데 형사 1부장검사로부터도 다시 한 번 진상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해에 기한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으나 원고와의 약 40여분간에 걸친 대화내용을 담은 카메라와 녹음기의 내용을 편집한 후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목록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보도국으로 보냈고, 보도국은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방송하였다.

(7) 위 보도가 나가자 제2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1999. 3. 12. 성남지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성남지청 소속 양보승 검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방송의 제보자인 조남환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긴급체포하여 조남환으로부터 1998. 9. 24. 조사 당시 검사나 참여계장에게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1999. 3. 31. 조남환을 성남지원에 구속 기소하였고, 성남지원은 조남환에 대하여 1999. 5.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그러자 피고 이용마는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2목록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9. 3. 21. 피고 회사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방송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해자의 특정여부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방송에 있어서는 비록 원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중기소된 조남환의 주소를 적시하였고 보도와 함께 나간 화면으로 성남지청 건물을 보여 주어 원고가 성남지청의 검사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기도 하나 원고가 집행하는 검사실의 앞에 걸린 검사실의 호실과 검사명 표시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원고의 해명을 방송한다면서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여, 원고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상당수의 일반인도 조남환을 이중기소한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2방송의 보도에 있어서는 "성남지청 조영선 검사"라고 특정하여 원고의 실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2) 책임의 성부

이 사건 제1방송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검사인 원고가 전과조회만 하였더라면 조남환이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

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전과조회를 아니하여 이미 처벌받아 형이 확정까지 된 조남환을 또다시 기소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은 이중기소는 명백히 검사인 원고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남환은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검찰이 사과하는커녕 오히려 조남환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정하고도 사려 깊게 수사 및 기소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검사인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보도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검사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원고에 대한 악의가 엿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진실성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체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

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방송에 있어서의 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제1방송 중 이용마 기자의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라는 설명 부분 위 표현 중에서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이 조씨가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고, 검찰이 조남환을 구금하면서도 경찰에서 기록을 송부받을 당시에 첨부되어 있던 약 4년이 경과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조남환 본인의 형식적인 진술에 의하여 전과를 확인한 외에 경찰에서의 범죄경력조회 이후에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전과조회를 하고 의문이 드는 전과기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남환을 신문하거나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남환이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임이 인정된다.

한편,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조남환을 구속하겠다고 구금하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남환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았음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긴급체포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조남환을 긴급체포하여 구금한 것을 불법감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이용마가 이 사건 제1방송에서 불법감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이중으로 기소할 수 없음에도 검사가 전과 확인을 게을리 하여 조남환이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 구금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법조인이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 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방송 중 이용마 기자의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설명 부분

이 부분 중 조남환이 동일한 범죄행위로 이미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것과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이중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도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중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원고가 전과확인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조남환을 이중기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부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방송 중 조남환과의 인터뷰 방영부분

언론기관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는 경우에 그것이 그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발언내용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만일 인터뷰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책임은 부정될 것이나 적어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첫째, 조남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 제1방송의 전체 문맥으로 보아 조남환이 검사에게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 그 판결문이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검사나 검찰 참여계장이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서, 조남환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피의 사실을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업무착오를 일으켰다는 원고의 해명과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며, 검사로서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원고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고, 둘째, 이 사건에 대한 취재시에 담당 검사인 원고나 검찰 참여계장이 조남환의 위 진술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음에도 제1방송에서 방영된 조남환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대응하는 원고나 참여계장의 진술부분은

조남환의 진술에 대한 해명이라기 보다는 기자의 설명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방영하였으며, 셋째, 방송의 제목으로 뽑은 “한심한 검찰”과 중간에 덧붙인 조남환을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는 설명, 끝에 부가한 조남환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설명 등과 앞서 본 원고나 참여계장 진술부분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위 조남환에 대한 인터뷰 부분은 피고들의 방송의도에 부합하여 의도적으로 방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남환에 대한 인터뷰 부분에 대한 방영은 조남환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이 위 인터뷰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남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조남환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그 변호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소하였다는 사실은 실수로 조남환의 전과조회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중기소하게 되었다는 사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는 점, 피고 이용마가 원고에 대하여 취재할 당시에 원고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남환의 변호를 묵살하고 이중기소를 하는 경우 조남환이 법정에서 제1사건으로 인한 판결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즉각 면소판결이 선고될 터인데 검사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 다시 기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조남환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합의를 볼 시간만을 간청하였을 뿐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

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제1사건으로 인한 판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변소를 수궁할 수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조남환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 있던 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그의 전력이나 범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기자에게 조남환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던 점, 조남환이 검사 등에게 자신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묵살당하고 이중기소되었다면 기자를 찾아가 그 부당함을 호소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이미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남환으로서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거나 판결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알리려 하였을 것이고, 이는 조남환과 함께 공판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남환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와 검찰 참여계장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남환의 일방적 진술을 믿고 그대로 방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남환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관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제1방송 중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제1방송 중 앞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한 앵커의 설명부분과 조남환이 같은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풀려났다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검찰이 조남환을 횡령혐의로 다시 기소하였다는 부분, 담당 검사가 조남환이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진실에 부합

한다 할 것이고, 컴퓨터 전과조회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계장의 부정적인 답변과 전과조회를 하지 아니한 것이 경미한 잘못이고 잘못 되었다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는 원고의 진술을 방송한 부분도 그것이 비록 전체 진술 중에서 방송의 의도에 필요한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은 당사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제2방송 부분

이 사건 제2방송 부분 중 조남환이 원고에 의해 이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일주일도 안 되어 검찰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남환을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1방송에서 방송된 조남환의 인터뷰 부분을 다시 방송한 부분은 그 전후의 문맥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제1방송에서와는 달리 시청자에게 조남환이 진술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제1방송에서 방송된 조남환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조남환을 명예훼손으로 긴급 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남환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복수사 논란”이나 “이중기소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검찰의 명예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라는 부분은 모두 피고들의 의견의 표명이며, 보복수사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한 변호사의 논

평을 보도한 부분은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그 변호사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피고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두 전제되는 사실, 즉 조남환이 원고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방송이 나간 후 얼마 안되어 검찰이 조남환을 구속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들이 방영한 이 사건 제 1, 2방송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이 사건 제 1방송 중 조남환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2방송 중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전제사실이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의견의 표명 자체가 전제사실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잘못된 의견이라면 면책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조남환에 대한 이중기소에 관하여 “불법감금”,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한심한 검찰”이라고 단정한 것과, 검찰이 조남환의 제1방송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구속한 것을 “보복수사”라고 표현한 것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표현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실수를 빌미로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가한 것으로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논평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은, 원고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공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언론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원고가 피고들의 현실적인 악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책임이 경감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의 공적인 관심 영역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판단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의미와 관련하여 볼 때 사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널리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나아가 원고가 공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상호 비교형량함이 없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책임이 경감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이 있는 공중파 TV 방송의 정규뉴스는 특히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

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방송 시점, 방영 시간, 피고 회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텔레비전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신분,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방송 보도 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공직을 사직한 점, 이 사건 방송이 범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찰이 피의자의 변호마저 묵살하고 피의자를 이중기소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듯한 인상을 주어 범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 점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원고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조남환에 대한 전과확인을 게을리 하여 조남환을 이중기소하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방송의 표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다소 지나친 것이기는 하나 공인의 공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6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방송일인 1999. 3. 21.부터 당

심 판결선고일인 200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6.

재판장 판사 채영수
판사 정진경
판사 권기훈

1. 1999. 3. 6.자 뉴스데스크보도

제 목 : '한심한 검찰'

내 용 : ▷박영선 앵커:형사소송법에는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해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이용마 기자 : 성남시 하대원동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97년 3월,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난 지난해 9월, 조씨는 같은 검찰청의 또 다른 검사에게 다시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모씨 :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

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구요.

▷이용마 기자 :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

▷이용마 기자 : 전과조회는 기본인데, 컴퓨터로 확인했지요?

▷계장 : 아니요, 안했어요.

▷이용마 기자 : 결국 조씨는 횡령한 돈을 갖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씨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자 검찰은 조씨를 횡령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담당검사는 당시 사건이 고소인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담당검사 : 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무슨 잘못을 할 수 있겠나. 잘못 났으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날 것 아닌가...

▷이용마 기자 :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2. 1999. 3. 21.자 뉴스데스크보도

제 목 : '보복수사 논란'

내 용 : ▷권재홍 앵커 :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검찰의 잘못으로 또 한번의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에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을 해서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마 기자입니다.

▷이용마 기자 : 성남시 하대원동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97년 3월,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9월 조씨는 같은 검찰청의 또 다른 검사에게 다시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결국 성남지청 조영선 검사에 의해 이중 기소돼 또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유는 조씨가 본사와 인터뷰한 다음 내용입니다.

▷조모씨 인터뷰 : 검사에게 재판 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

▷이용마 기자 : 검찰은 조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면서 검찰을 비방하기 위해서 문화방송 측에 허위 제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중 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차병직 : 다분히 수사기관의 감정이 개입된 그런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용마 기자 : 검찰의 명예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끝- □

미국판결

불법 도청한 녹음테이프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보도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

Bartnicki v. Vopper
미국 연방대법원 2001년 5월 21일 선고

판시요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대화의 녹음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한 개인과 언론기관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전자 프라이버시 법률에 따른 민사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비록 개인과 언론기관이 그 테이프가 불법적으로 도청되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불법 도청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이익이 사후에 그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들의 언론 자유를 막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이유

이 사건들은 불법적으로 도청된 통신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수정 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연방 법률이 1934년이

래 그러한 공개행위를 금지하여 왔으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¹⁾

이 사건은 불법적으로 도청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휴대폰 통화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공개한 사안이다. 공개한 사람들은 그 도청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도청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만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상위의 보호 이익들 - 한편으로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완전하고도 자유로운 정보의 전파라는 보호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적인 대화 조성이라는 보호 이익 - 사이의 갈등을 담고 있다. 수정 헌법 제1조의 창안자들은 분명 위와 같은 통화, 도청 또는 그로 인하여 소송을 받게 될 이익 상충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항소심 판사들이나 연방 대법관 중 일부에서 이번 사건에 수정 헌법 제1조를 적용하자는 결론에 반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보호 이익들을 고려한 결과,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의 공개행위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굳게 확신한다.

1) 이하는 Stevens 대법관 작성의 판결 이유로서, O'Connor, Kennedy, Souter, Ginsburg, 그리고 Breyer 대법관이 찬동하였다.

1. 1992년과 1993년에 걸쳐서, Wyoming Valley West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표하는 조합인 펜실베이니아주 교육협회(Pennsylvania State Education Association)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단체교섭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인 Kane은 당시 위 조합의 해당지역 조합 대표자이었는데, 그 협상 과정은 논란이 많았고, 따라서 언론기관의 주목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1993년 5월, 조합측 협상 대표자였던 신청인 Bartnicki는 그녀의 차 안에서 Kane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협상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신청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이 이 통화를 도청하였고, 또한 녹음하였다.

Kane과 Bartnicki는 예정된 파업의 시기, 협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적으로 인해 야기된 난점들, 그리고 비타협적인 운영위원회에 대한 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도중에, Kane이 “만약 그들이 3% 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집으로 가야 할거야...현관을 부수 버리러 말아야...그들 중 몇몇에 대해서는 손을 좀 봐야 할거야. (멈춤) 정말, 정말로, 알다시피 이건 나쁜 뉴스이기 때문에 (해독불가)”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

1993년의 초가을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체로 교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과거 조합에 비판적이던 라디오 논평가인 피신청인 Vopper는 자신의 라디오 시사 토크쇼에서 그 도청된 대화 테이프를 방송하였고, 지역 신문들은 그 내용을 기사화하였다.

Bartnicki와 Kane(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함)은 Vopper와 다른 언론기관 대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 전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하여 Vopper가 그 테이프를 조합측 요구에 반대해 온 지역 납세자 단체의 지도자인 Jack Yocum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송에서 피고로 추가된 Yocum은 도청 발생일 직후 자신의 우편함에서 그 테이프를 발견하였고, 그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가 Bartnicki와 Kane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Yocum은 그 테이프의 내용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에게 들려 주었고, 나중에 이를 Vopper에게 전달하였다.

2. 수정된 이 사건 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전자 장비를 이용한 신청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 몰래 도청되었고, Yocum이 그 녹음된 테이프를 입수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고의적으로 이를 다른 사람들과 언론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Vopper에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Vopper와 언론기관 종사자들은 반복적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공표하였다. 수정된 신청서에서, 신청인들은 사적인 전화 통화 녹음이 불법적인 도청에 의하여 입수되었다는 점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법률과 펜실베이니아주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신청인들은 현실적 손해, 법률상 손해, 징벌적 손해, 그리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개시절차를 마친 후, 양측 당사자들은 서로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도청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화는 우연히 도청되었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행동은 불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비록 도청된 대화를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개행위는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법률 조항의 문맥상 정보가 불법적인 도청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다(knows or has reason to know)”면 그 정보

공개자는 전자 통신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공개한 것으로서 연방법률 위반이라면서, 법률 해석에 관한 첫 번째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법률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도청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률 해석에 관한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문제의 도청이 고의적인 것이었음을 신청인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도청된 내용은 고의와 관련하여 순수한 사실 인정(issue of fact)의 문제를 남길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사실 인정의 문제라는 점은 또한 지방법원이 신청인들의 약식재판 신청을 기각한 근거이기도 하였다. 끝으로 지방법원은 그 법률들이 "사전 제한의 징후 또는 언론 자유를 급냉시킬 내용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적용가능성을 지닌 중립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한 피신청인들의 신청도 기각하였다.

그 후 지방법원은 중간항소 신청(motion for an interlocutory appeal)을 허가하였다. 지방법원은, 첫째, 보도 가치가 있는 문제의 테이프가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사주한 바 없는 사람에게 의하여 불법적으로 도청되고 녹음된 것일 때에, 언론기관인 피고들이 그 테이프를 피고들의 라디오 방송 또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도청방지법(wiretapping statutes)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연방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둘째,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여 도청되고 녹음된 테이프를 언론기관인 피고들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위 도청방지법에 따라 Jack Yocum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연방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사안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쟁점이라고 인정하였다. 항소 법원은 그 중간항소 신청을 받아들였고, 신청인의 한 사람인 미국 연방정부도 연방법률의 합헌성

을 지키고자 이 사건에 참가하였다.

세 명의 재판부 판사 전원은, 연방 및 펜실베이니아주의 도청방지법이 '가치 중립적(content neutral)'이고 따라서 '보통의 위헌 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이 적용된다는 신청인들 및 연방 정부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 심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수 의견은 그 법률들이 문제된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심각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항소 법원은 피고들의 약식 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지시와 함께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다수 의견에 반대하여 Pollak 판사는 공개행위의 금지는 불법적인 도청을 하려는 동기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법 도청으로 인해 야기된 폐해가 광범위한 전파행위로 인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결과 그는, 유사한 사안인 *Boehner v. McDermott* 사건에서 나온 다른 항소 법원의 다수 의견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항소 법원 판결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3. 우리가 *Berger v. New York*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교한 방법으로 또는 그다지 정교하지 못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구두 대화 혹은 전화 통화를 의도적으로 몰래 엿듣는 행위가 수 십 년간 주로 법 집행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다. *Berger* 사건에서 우리는 경찰에게 도청 권한을 부여하는 New York주의 광범위한 법률이 수정 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주로 위 판결에 대응하여, 그리고 공중 전화기 외부에 청취 및 녹음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수색(search)에 해당한다는 *Katz v. United States* 사건 판결에 대응하여, 의회는 전자 감시장비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허락함과 동시에

그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최종 결과가 도청 및 전자 감시(Wiretapping and Electronic Surveillance)라는 제목이 붙은 1968년의 종합 범죄 방지 및 치안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제3편이다.

위 제3편의 입법 목적 중 하나는 유선 통화 또는 구두 대화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법 집행이라는 목적을 위한 전자 감시의 허용과 규제에 덧붙여, 제3편은 일반 개인의 행동도 규제하고 있다. 그 규제 조항 중 제2511조 제1항은 10,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위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다섯 가지 유형의 위법행위들을 규정하였다. 그 중 (a)항목은 고의적으로 유선 통화 또는 구두 대화를 도청한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b)항목은 구두 대화를 도청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d)항목은 불법적으로 유선 통화 또는 구두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e)항목은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도청한 내용을 허가 받지 않고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c)항목의 원형은, '유선 통신 또는 구두 대화의 내용을, 그 정보가 이 조항을 위배하여 도청함으로써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서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다른 제3자에게 완전히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하려고 한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1968년 제정 당시 위 제3편은 무선 전송(radio transmissions)의 청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6년에 제정된 전기통신 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에서, 의회는 위 제3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구두 대화와 유선 통신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의

도청도 금지하였다. 이 개정법과 무선 전화 통신에까지 적용한 1994년의 개정법으로 인하여, 제3편은 현재 휴대폰과 무선 전화기를 통한 대화의 도청에도 적용된다.

4. 우리 앞에 놓인 헌법 문제는, 이 사건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적용될 법률들의 유효성이다. 중간항소라는 이 사건의 절차적 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관하여 중요한 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도청이 의도적이었고 따라서 불법적이고, 최소한 피고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신청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Yocum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학교 운영위원장들,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 공개한 행위, 그리고 나아가 피고들이 일반에 공개한 행위는 연방 법률 및 주 법률 위반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 관계에서 이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인지 여부이다.

그 질문에 대답함에 있어, 우리는 사실 관계에 관한 피고들의 세 가지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와 같은 사실들은 이 사건을 그 동안 제2511조 위반이 문제된 대부분의 사건들과 구별시킨다. 첫째, 피고들은 불법적인 도청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도청이 일어난 이후에 도청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도청을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신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둘째, 비록 테이프에 녹음된 정보 그 자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도청된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 정보에 대하여 접근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셋째, 대화의 주제가 공공의 관심사이었다.

5. 우리는 제2511조 제1항 (c)항목과 그와 유사한 펜실베이니아주 법률 조항이 일반적인 적용가능성을 지닌 내용 중립적인(content-neutral)

법이라는 신청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특정한 규정이 내용 기초적(content based)인지 내용 중립적(content neutral)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원칙으로서, 표현된 사상과 견해를 토대로 용인되는 발언과 용인되지 않는 발언을 구별하는 법은 내용 기초적인 것이다. 어느 규정이 내용 기초적인지 아니면 내용 중립적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우리는 규정 뒤에 놓인 목적을 살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의 기본 목적은 유선 통신, 무선 통신, 그리고 구두 대화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법률은 도청된 대화의 내용을 기초로 구별하지 않으며, 그 대화의 내용에 따라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6. 일반적으로, 진실한 정보의 공개를 처벌하는 정부의 행위는 좀처럼 헌법적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어느 신문사가 공공의 중요 관심사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정부 공무원들은 최고도의 요청(a need of the highest order)이 없는 한 그 정보의 공개행위를 합헌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 왔다.

따라서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제3자가 훔친 문서로부터 취득한 매우 중대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언론 기관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판결은, 공개행위의 사전 제한조치를 반대하는 기본 원칙과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이익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법원 구성원들의 관심은 절취된 문서 내용의 성격과 공개될 경우의 결과에 초점이 모아졌다. 신문사가 절취된 문서에서 입수한 정보

를 공개하려 하였다라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Harlan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서 지적된 바 있었지만, 다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 모두 그 사실에 전혀 비중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New York Times v. United States* 사건은 ‘정보가 신문사 또는 다른 정보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에, 정부가 그 불법적인 취득행위 뿐만 아니라 그에 뒤이은 공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하였으나, 그 해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질문은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않은 그 질문보다는 폭이 좁은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처벌받게 된 정보의 공개자가, 문제된 정보를 그 자신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제3자로부터 입수한 경우에, 정부는 뒤따른 정보 공개행위를 흠이 이어졌다는 이유에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우리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2511조 제1항(c)항목의 보호 범익이 언론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연방 정부는 위 법률의 보호 범익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개인간의 대화를 도청하려는 사람들의 동기 유발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대화가 불법적으로 도청되어진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보호범익들이, 제2511조 제1항(a)항목을 위반함으로써 취득한 정보를 그 도청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2511조 제1항(d)항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최초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공공의 관심사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이에

가담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제2511조 제1항 (a)항목에 규정된 처벌이 충분한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처벌은 보다 강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은 제3자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을 준수하여 정보를 보유한 자의 발언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당히 특이한 일이 될 것이다. 비록 특정 당사자의 발언을 막는 법률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려는 보호 법익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상당히 드문 경우들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소송 사건들에서 문제된 제2511조 제1항 (a)항목 위반행위는 금전상의 이득이나 혹은 가정 불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중 사실상 거의 모든 사안에서, 도청을 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다. 게다가 신청인들은 의회에서 도청장치나 감시장치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개행위를 금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공개행위의 금지가 불법 도청행위의 발생 건수를 감소시킨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도 전혀 없다.

비록 이번 사건은 익명의 도청자가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회적 찬양에 대한 기대 없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협을 감수하려 한다는 하나의 우연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사안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을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최고도의 요청'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첫 번째 논거는 충분하지 못하다.

반면 연방정부의 두 번째 논거는 상당히 강

력하다. 통신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법익이고, 제3편의 규제는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간에 사상과 정보가 억제되지 않은 채 교환되는 것을 촉진한다. 게다가 개인적인 대화가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는 염려는 개인적인 발언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익들이 양쪽에 놓여 있다고 보여진다. 그 균형을 고려함에 있어, 우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침해 유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도청행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 결과로서, 불법적으로 도청된 내용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의 공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비록 첫 단계로서 그러한 도청행위의 발생을 막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개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독자적인 논거가 성립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법익이 상거래의 비밀, 가정 내의 잡담, 또는 순수한 사적인 내용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제2511조 제1항 (c)항목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는 대부분의 제2511조 제1항 (c)항목 위반 사안에서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의 문제없이 그 항목이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조항의 적용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헌법 제1조의 핵심 목적에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공의 중요 관심사에 관한 것을 공개하는 이익과 비교 형량해 볼 때,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 공공의 관심사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의 하나가

바로 부수적인 프라이버시의 손실이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에서 우리는 '공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자유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일반적 주장을 정착시킨 많은 선례들을 검토한 바 있다. 그 판례들은 모두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억제되지 않고, 강건하고, 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국민적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실의 오류, 명예훼손적인 내용, 또는 그 두 가지가 충족된 경우일지라도 공적인 행위를 상대로 한 비판에 대하여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제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리의 판결들을 뒷받침한 그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공의 관심사를 상대로 한 발언에 대하여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제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은 명백하다. Wyoming Valley West 고등학교 교사들의 적정 보수 수준에 대한 여러 달에 걸친 협상은 의심의 여지없이 공공의 관심사이고, 피고들은 분명히 그 관심사에 대한 토론에 관여한 것이다.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판결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er 29권 pp.1737-1755

번 역 : 장상균(수원지방법원 판사)



프랑스 판결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관계와 그 당사자의 성명을 보도했다고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B. Cadiot c/ Radio France Gironde

보르도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Bordeaux) 2000년 3월 31일

사실관계

'국영 라디오 프랑스사(la société nationale Radio France)'의 지국인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Radio France Bordeaux Gironde)'가 뉴스 속보시간에 예심사건에 관하여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보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법정변호사(avocat à la cour)인 장-폴 바일(Jean-Paul Bayle)씨는 그의 자동차 안에서 2000년 3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의 뉴스 속보(flash d'information) 시간에 "보르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인 베르나르 카디오(Bernard Cadiot) 여사가 위증교사(subornation de témoin)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보도내용을 청취 하였다. 그리고 장-폴 바일 변호사는 다음날인 2000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 같은 방송사의 뉴스 속보시간에 베르나르 카디오 변호사가 위증교사와 사법통제조치를 어긴 혐의로 수감되었다는 보도도 청취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측(청구인측)은 '라디오 프랑

스 보르도 지롱드'가 보도한 보도내용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도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보르도 지방법원의 판결요지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는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국영 라디오 프랑스사(*la société nationale Radio France*) 만이 법인격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영 라디오 방송사(*la société nationale Radiodiffusion*)'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만, 지방방송국의 법적 지위나 성격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는 보르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장을 비롯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의 법적 소재지는 보르도이다. 따라서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의 국장은 자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의 대표자의 신분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환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동일한 논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관할권은 '국영 라디오 프랑스사'의 소재지인 파리지방법원에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문제를 야기한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가 소재해 있는 보르도 지방법원의 관할사항이다.

그런데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왜냐하면 2000년 3월 27일 오후 7시경에 레이날(Reynal) 씨에 의하여 이미 카디오 여사가 체포되었던 바, 소환장에는 카디오 여사의 사법통제 취소만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가 보도한 속보내용은 이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상 보호권 권리나 공적 질서에 관한 규율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1조에 규정된 예심비밀(*secret de l'instruction*)에 관해서 살펴보면, 언론인(기자)은 예심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심비밀을 탐지할 수도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속보내용은 언론사에서 입수한 정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도 문제의 보도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언론보도 내용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도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그 보도의 중지를 요청하고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심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한 보도의 정보원(*source de l'information*)은 적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기자가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원은 알려지지 않으며(비닉),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예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직업상 비밀을 갖지 않는 자료부터 취득되었을 경우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급속심리법관(*juge des référés*)이 언론의 자유나 언론인의 정보 추구의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에 기초해 있거나 불법적인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민법 제9-1조에서 부죄추정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으로 하여금 예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심리 중인 당사자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에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예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

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바로 당해 예심 사건에 있어서 유죄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앞에서 적시한 보도내용을 통해서도 그 보도의 정확한 내용이 위의 기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단지 카디오 여사에 관한 사건이 심리 중에 있으며, 그녀가 사법통제의 취소에 연이어 체포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유죄로 간주되지도 않으며, 이에 따라 무죄추정의 보호규정의 위배도 없음이 명백하다.

지방신문들을 통하여 보르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보도된 바 있으므로, 문제의 보도내용의 보도 중지요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척되어야 한다.

해설

1. 첫 번째, 논점은 당사자 적격과 관할법원이다. 이 사건은 '국영 라디오 프랑스사'의 지국인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의 보도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방송사의 지국이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국에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되며, 관할법원은 지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다.

2. 두 번째 논점은 정보원비닉권의 보장과 그 한계이다. 사법통제를 받고 있는 개인(변호사)에 관해서 라디오 뉴스에서 보도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은 보도중지를 요구하였던 바, 급속심리법관은 이 보도는 예심비밀의 침해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예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예심비

밀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제11조는 "조사나 예심이 진행 중인 절차는 비밀이며,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변호사·경찰 등은 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이와 같은 예심비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예심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공모나 은닉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1-7조에서 공범자란 "비밀리에 원조나 보조를 통하여 범죄의 준비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나 기부나 약속을 통해서 범죄를 야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가 보도한 내용은 사려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심비밀을 침해한 공범자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321-1조에 의하면 은닉이란 어떤 사항이 범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유폐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심비밀의 침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의 보유나 이용은 이와 같은 형법상 은닉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급속심리법관은 범죄비밀 침해의 공범이나 은닉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보원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비닉), 정보원은 이 사건 예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직업상 비밀을 견지하지도 않은 자료부터 나온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비밀의 침해에 대한 은닉죄와 관련하여 1995년 4월 3일의 파기원(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카나르 은세네(le Canard enchaîné) 신문의 협조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정비밀의 침해로부터 야기된 자크-칼베의 과세의견의 사본은닉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계쟁사건의 문건을 폭로

하였으며, 직업상 비밀의 침해행위 그 자체는 바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연역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유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 정보원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매우 어려운 언론법상의 과제이다(성낙인, 『언론정보법』, 107면 참조). 정보원비닉권을 실정법상 명시적으로 부인한다면 자칫 그것은 언론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보원비닉권을 실정법상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동시에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1991년 1월 21일 판례 : *Fressoz et Roire c/ France*)은 정보원비닉권의 제한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프랑스의 법제도 절차법적으로는 일응 정보원비닉권을 인정하는 듯 하다. 하지만 정보원비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우월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프랑스법원의 판례는 정보원비닉권의 실질적 보장의 한계를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언론중재』 1998년 3월호 프랑스 판례 파리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제1부 1997년 7월 25일 판결 : *Brad Pitt c/ Voici* 참조).

3. 세 번째 논점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 무죄추정의 법리의 적용 한계와 언론의 자유이다. 1993년 1월 1일 법률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민법 제9-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되기 위하여서는 확정판결 이전에 사법절차상 특정인과 관련하여 조사나 예심의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유책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민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할 당시에는 이 규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정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사전적으로 예단을 통한 판단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도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무죄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다.

바로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보건대 급속심리법관은 이 사건에서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가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단지 카디오 여사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체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조사와 관련하여 유책한 것으로 보도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상 무죄추정 조항을 정확하게 평석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4. 이 사건에서 급속심리법관은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가 보도한 내용은 예심비밀의 침해를 야기하지도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정보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문제의 ‘라디오 프랑스 보르도 지롱드’가 보도의 중지요청을 거절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언론보도의 자유 보장과 정보원 비닉권 및 무죄추정의 법리의 조화를 기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출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73호, 2000년 7-8월호(제6호), pp.123-124.

번역 및 평석 : 성낙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호주사례 1

피격당해 숨진 희생자의 비참한 모습을 담은
현장 사진을 1면에 게재한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 Atherton Tableland 농장에서 피격당해 숨진 두 명의 시체 사진을 1면에 게재한 The Cairns Post 지에 대한 신청인들의 불만을 받아들였다.

분제의 사진은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도 그러했다. 해당 신문사는 불만신청이 제기된 후 이러한 불만내용에 동의하는 30통의 편지와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표명한 독자편지 한 통을 게재했다. 신청인은, 잔인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사진은 매우 불쾌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자의 신원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추지할 수 있다며, 신문사의 추악한 취재 보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했다.

불만 신청인 중의 한 명인 Herberton Shire시 시장 Anne Portess씨는 한 희생자의 가족

은 신문에 게재된 희생자의 시신 사진을 본 친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지면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였고 평의회에도 이를 전달했다. 신문사는 “끔찍한 사건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뉴스가치를 지닌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이미 일상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언론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이러한 보도로 인해 선정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신문평의회는 “시신과 관련한 사진의 게재에 관한 불만 신청 사례는 흔한 사안이 아니다. 평의회는 외국에서 발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확실한 희생자의 사진 게재와 희생자들을 잘 알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시체 사진의 1면

게재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피살자나 희생자의 사진 게재를 완전히 금지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첨예한 문제의 경우에 반하여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공익에 반하고 공격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진의 사용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The Cairns Post지가 게재한 이러한 사진의 경우, 그 게재여부에 대해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사실 Portess시장은 신문사에 “이러한 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나 우리의 뒤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험을 인지한다”고 말했다. 신문사가 분제의 사진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요인에는 이런 사건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다.

다른 요인을 언급하자면 사건이 발생한 Ravenshoe는 작은 마을이고, 농장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는 패쇄적인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었다. 지역사회에 관한 독자의 편지로

판단컨대 신문사는 문제의 이 사진게재에 있어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평의회는 불

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요인이 게재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

주장했다. 문제의 기사는 “납세자들은 자물쇠를 부순 것을 인정한 두 명의 시위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는 혐의가 “기각됐다(dismiss)”는 표현 대신 “취하됐다(withdraw)”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왜 신청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Herald Sun지는 문제의 기사는 완벽하게 정확한 기사라고 항변했다. 신문평의회 또한 이 기사내용이 일반적으로 소송에 관한 세밀한 부분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청인들에 대한 혐의가 “기각됐다”라는 용어 대신 “철회됐다”라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

호주시례 2

법원의 결정을 곡해하는 부적절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심각한 오류

신문평의회는 지난해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회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신청인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법정 소송에 대해 보도한 Herald Su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였다.

NSW에 거주하는 Naomi Arrowsmith씨와 Ron Watt씨는 지난 해 Crown카지노 근처에 있는 헬기 착륙장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Victoria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치안판사는 신청인들의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는 기각했지만 이들의 의도적인 침입과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신청인들에게 1년 동안 공공근로봉사명령을 내리고 자물쇠 손실에 대해서 93불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치안판사는 경찰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소송기간 동안의 그들의 임금과 여행

경비 그리고 법정비용을 포함해 3,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보상하라고 명했다.

Arrowsmith씨와 Watt씨는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먼저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려고 했다고 했다. 소송비용과 그 부대 비용은 경찰이 청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

신청인들은 Herald Sun지가 그 사건을 “유죄이나 소송비용 3,000불 지급은 모순”이라는 제목하에 보도하면서 자신들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영국시례 1

범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했으므로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불만내용

영국의 한 지방경찰서의 법

무번호사인 Nigel Cary씨는 1999년 3월 2일자 Daily Mail지에 게재된 “경찰간부가 성폭

행"이라는 머릿 기사가 성폭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을 밝혀 보도실천강령 제12조(성폭력 피해자) 조항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도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를 위배했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지만 PCC는 신문사를 견책하지 않았다. 또한 보도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를 위배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혐의로 경찰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도내용이다. 이 경찰간부는 그 후 석방되었으나 PCC는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Daily Mail지가 피해 여성의 얼굴을 어둡게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진은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고 믿었던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사는 피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절차를 확실히 밟았다고 항변했다. 수천개의 비슷한 유형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촬영한 사진으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녀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녀가 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사진은 피해 여성이 공공거리에서 승용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녀가 사생활을 보호 받을 만한 장소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평 결

PCC는 사진에 대한 불만신청과 관련한 예전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평결에서와 같이 공공거리가 신청인의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 대해 긍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과 이를 게재하는 것은 보도실천강령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평결했다.

문제의 사진으로 성폭행 피

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PCC는 신청인의 주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PCC는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로 인해 그녀의 신원이 부분적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했다고 조언했다.

비록 전면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진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부주의하게 노출된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어긋나지만 PCC는 신문사가 그녀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므로 신문사를 견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진은 피해 여성의 신원을 적어도 그녀의 친지에게 알려질 수 있게 했고 사진을 제외한 채 해당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문제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

영국사례 2

취재원이 취재 중지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

불만내용

Glen Swire씨는 The Mail on

Sunday지 신문기자들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집요한 추적으로 괴롭혀 보도실천강령 제4

조(괴롭힘, harassment)를 어겼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신청인의 딸도 새로운 기사에 그녀 자신이 나온 것을 우연치 않게 알았다. 많은 취재진이 신청인과 그의 딸뿐만 아니라 딸의 친구들에게까지 취재하기 위해 접근했다. 신청인은 기자들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PCC와 접촉을 했다. 2001년 1월 4일 신청인은 the Mail on Sunday의 Paul Henderson 기자에게 취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월 5일 신청인은 이런 요구를 기자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편집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1월 5일 Henderson 기자는 신청인의 딸에게 접근해 그녀가 신문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6일 신문사의 기자와 사진기자가 그녀의 아파트 밖에서 신청인의 딸에게 다시 접근했다.

편집자는 신청인에게 그의 딸이 신문사에서 칼럼 쓰기를 바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신청인에게 표명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것은 중재자의 생각이었고 그녀의 딸의 생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취재기자과 사진기자는 1월 6일 칼럼 집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신청인의 딸이 할 말이 있는지 알기 위해 집

밖에서 기다렸다.

Henderson기자는 취재 중지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편집자는 신청인이 보낸 편지를 주말이 지나도록 열어보지 않았다. 따라서 편집인은 마지막 방문시 보도실천강령의 범위 내에서 취재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나 편집인은 모든 접근이 예의바르게 진행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딸이 여전히 신문사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

평 결

당사자들간에 신청인의 딸이 신문사에서 칼럼 집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그러나 PCC는 신청인이 해당 기자에게 1월 4일 취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5일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는 편지를 신문사 편집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문사가 1월 6일 신청인의 딸에게 다른 기자와 사진기자를 취재차 또 보낸 것은 보도실천강령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CC는 신문사가 그릇된 의도로 행동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신청인의 취재 중지를 요청하는 메시지의 수령 여부를 떠나 신문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다고 평결했다.

신청인은 또한 PCC에게 이번 신청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더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첫 번째는 많은 신문사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도록 한 그녀의 딸에 관한 기사의 상세한 부분을 신문사가 더 이상 게재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PCC는 이 점에 대해서 신청인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합법적으로 공공영역이 된 보도기록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신청인은 PCC에 앞으로 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진 않지만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친구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신문사는 보도실천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지만 PCC는 이 조항은 귀찮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신문사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원하지 않는 접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자의 의견이 게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신청인 혹은 그녀의 딸의 상황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고 기사에 빠졌던 사람 그러나 배경이나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자들이 접근했던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상호 보도됐어도 공공이익 숙선

방송에 상호가 나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법 민사44단독 김연하 판사는 9일 '수입한 꽃게에 납이 들었다'는 보도에서 자신의 상호가 방송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꽃게 수입업자 이모 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가 분명히 드러나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지만 당시 '납꽃게'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의 상호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던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모 방송사가 뉴스를 통해 전달 보도된 수입업자가 아닌 또다른 수입업자를 통해 납이 든 꽃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상점 상호를 그대로 내보내 그 충격으로 입원까지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1. 9. 9.

4개 시민단체, 동아·조선일보 상대로 손해소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지난 30일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시민단체는 정권의 의곡단체"라는 주장을 펼친 한나라당과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원장 박관용 의원, 그리고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한 조선·동아일보가 "탈세 언론사 주들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현 정권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매도,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오늘, 2001. 9. 6(2면)

복식 보도자료를 피해 국가책임 더 커

국가가관이 내놓은 잘못된 자료를 언론사가 추가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해 특정인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와 언론사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이런 경우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지난 91년 1월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해 회사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K사 직원 이모 씨를 구속하면서 피의사실을 요약한 수사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B신문은 '회사기밀유출 건부 구속' 등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고 이어 A신문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씨는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고 국가와 두 신문사를 상대로 피의사실공

표와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B신문 기자는 보도 당시 담당검사에게 추가 확인노력을 기술했지만 A신문 기자는 구속영장 사본만 열람하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B신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와 A신문에 대해서만 "연대하여 3천여 만원을 풀어주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사이의 책임비율이 명확치 않아 국가가 먼저 이 돈을 모두 이씨에게 지급한 뒤 B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70%인 2천100여 만원을 달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 판사는 2일 "A신문은 전체 손해배상금의 30%인 900여 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발표가 이뤄졌고 언론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수사자료를 배포했으며 A신문 기자가 검찰에 추가 취재를 했더라도 기사내용이 달라지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며 "국가와 A신문의 책임 비율은 70대30"이라고 정리했다.

연합뉴스, 2001. 8. 2

헌법, 신문고시 취헌여부 헌소 제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문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신문사간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변은 청구서에서 “무가지, 경품 비

율과 신문공급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문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창의와 자유를 근거로 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은 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변이 문제삼은 신문고시 조항은 유

료신문 판매대금의 20% 이상 무가지 및 경품류 재공을 제한하고 있는 3조 1항 1,2,3호와 신문사에서 지국을 상대로 신문 공급가격을 규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10조 1, 2항 등이다.

한국일보, 2001. 8. 30 (34면)

연예인 낙태설 보도 기자에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1일 유명 여성 댄스그룹 멤버의 낙태설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전문지 기자 최아무개(30)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혼의 여성 연예인이 낙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거짓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연예인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로 신문 판매부수

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에 올랐은 인기 연예인의 낙태설 관련 자료를 편집해 거짓 기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겨레, 2001. 8. 22 (15면)

521개 사립학교재단, MBC 상대로 26억 손해소 제기

해석학원(이사장 김춘자) 등 전국 521개 사립 초·중·고 및 대학 재단은 14일 MBC와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PD 2명을 상대로 26억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BC는 방송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사학재단들의 로비가 큰 힘으로 발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우회적 표현을 썼지만, ‘한 문건은 이 로비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표현. 결국 ‘사학재단들의 로비 등으로

사립학교법이 90년에 개악됐다’는 보도를 한 셈”이라며 “MBC 등은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지난 3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말.말.말-로비에 흔들리는 사립학교”편에서 “지난 90년과 99년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관련 의원의 입김과 함께 막대한 인맥과 자금을 동원한 사학재단들의 로비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90년 4월 발견된 한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시사교양국 백종문 CP는 “MBC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학교를 모두 짜잡아 매도하려 한 것이 아니라 건전재단을 육성하고 비리재단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사립학교법 개정 자체가 공익사업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건전재단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1. 8. 14.

KBS, 조선일보에 손해배상 2억원 청구

KBS는 조선일보의 7월 16일자 기사 ‘기자수첩-잠깐 재해방송’이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보도국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측은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 보도 등 요즘 공영방송들이 신경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재해방송은 혹 깜박한 것이 아닐까’라는 구절 등이 방송을 설치하며 재해방송을 내보낸 보도국 기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공영방송 KBS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16일 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는 23일 “당사자간 협의가 어렵다”며 중재불성립을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1. 7. 30.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안동수 씨 19억 소송

"충성서약 문건" 파문으로 지난 5월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난 안동수 변호사가 14일 "악의적인 비방·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중앙·조선·동아·한국·문화·세계일보와 한겨레 등 10개 언론사 법인과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총 19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았는데도 불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안동수 전 법무장관 아들 불법으로 병면제받은 사실 없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할 것도 요구했다.

중앙일보, 2001. 8. 15(25면)

헌재, 방송금지가처분제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30일 문화방송이 지난 99년 방영하려던 모 종교단체 관련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

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모든 형태의 사전 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방영금지 가처분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 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 적정하

다"며 "사전금지 가처분의 허용으로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이 때문에 제한되는 언론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모 종교단체 고위간부의 이단성 문제 등을 폭로하는 내용의 <PD수첩>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이 종교단체측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헌법소원을 냈다.

'아가동산 사건' 방영금지 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손운하 부장판사)는 28일 '아가동산(대표 김기순)측이 "문성근의 다크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할 예정인 아가동산 관련 내용은 명예와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다른 권리와 충돌 여부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 경우 이미 신청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다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새로 나오지 않은 만큼 보도에 따른 공익적 요구가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이나 재산

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가동산측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8일 '아가동산 사건 그 후 5년'을 방영하려 하자 최근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2001. 7. 28.

한겨레, 조선일보 상대 56억 손해소

한겨레는 지난 5일 <언론권력 시리즈> 연재기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악의적 왜곡보도를 했으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겨레는 '정부서 일부 언론에 특정 신문 공격자료 제공' 등의 제하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조선일보 보도가 한겨레의 공신력을 훼손시키기 위한 악의

적 왜곡보도라고 규정하고 조선일보사 방우영 회장·방상훈 사장·안병훈 편집인·강천석 전 편집국장과 취재기자 4명, 만평가 신경무씨, 그리고 '처참간 사랑싸움' 발언 당사자인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또 '한겨레신문은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란 평' 제하의 <월간조선> 4월호 기사와 관련해 조갑제 발행인, 조남준 편집위원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박일룡 전 안기부 제1차장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연합뉴스, 2001. 7. 28.

중앙일보, 한겨레 상대 손해소송 패소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12일 중앙일보가 지난 99년 홍석현 전 사장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당시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앙일보가 한나라당을 취재원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몰고가며 홍사장의 탈세사실에 대한 반응은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다'는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당시 취재원이 한나라당이었고 중앙일보가 탈세사실에 대한 반응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은 진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1. 7. 12

MBC, 당직변호사제 운영

MBC는 방송내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정확한 보도를 위해 '당직변호사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MBC 당직변호사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 보도국 뉴스편집 1부에 출근, 밤 9시까지 뉴스편집부로 넘어오는 기사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문제점을 담당기자들과 협의하고 밤 9시 메

인뉴스인 '뉴스데스크'를 집중 모니터하고 있다.

그간 MBC 프로그램 자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최정환, 김형태, 박성하, 김성규, 차병직 변호사 등 5명의 당직변호사들이 순번제로 근무한다.

이들은 '뉴스데스크'외에 다른 시간대 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 '100분 토론'과 'PD수첩' 등의 시사고발 프로

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제작진 등의 사전·사후 자문에도 응하고 있다고 MBC가 전했다.

MBC측은 "지난 5월 21일부터 운영해온 당직변호사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 7. 2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씨에 1억 지급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영수 부장판사)는 31일 방송인 백지연 씨가 자신의 이혼배경과 관련한 소문을 보도한 스포츠투데이가 이 신문 기자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연대해서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 주장처럼 취재기자의 전화에 응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용의 보도를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언론이 명예훼손성 소문을 보도해 전파할 경우 소문의 원 진술자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원 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1999년 7월 "스포츠투데이가 이혼 배경과 관련, PC통신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한 기사를 인터뷰 형식으로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포츠투데이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디어오늘, 2001. 6. 28 (2면)

연론 세무조사 정보공개청구소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검찰 고발 내역만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세청은 지난 6월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고발 내역만 공개하고 언론

사별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언론사의 탈세를 감싸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언론사들의 탈세 내역을 비롯해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내규·지침 △23개 중앙언론사와 대주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연론사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과거 5년 동안 언

론사 세무 조사 실시 여부 현황 등 5개 항목의 정보를 청구했으나 지난 10일 거부당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단체는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연맹,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다.

한겨레, 2001. 7. 20

2001년도 정기세미나 성공적으로 개최



위원회는 최근 언론소송에서 제기되고 있는 취재 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2001년도 정기세미나를 중재위원과 언론사 사회부·차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호별 현대(강릉 경포대)에서 개최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유재운 위원(서울지법 부장판사)은 중재신청사례 분석을 통해 명백한 착오 사례, 일방적 취재 사례, 사실확인 불충분 사례 등으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중재 경위 및 관련 판결을 소개하면서 최근 언론중재신청과 소송제기 등 피해분쟁이 급증하고 있어서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방향과 취재기법상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특히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는 형식적 권리이며 피해자의 즉시적인 피해 방지뿐 아니라 언론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인식 아래 긍정적,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권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요건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하고 특히 반론보도문의 분량과 내용에 대하여 균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어서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원 기자(중앙일보)는 실제 취재 현장에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없는 예방적인 기사를 쓰고 완벽한 취재로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법원

의 언론에 대한 기대 수준이 워낙 높아 언론으로서 는 명예훼손을 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마다 법원의 해석이 다르고 아직 통일돼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며, 언론의 취재 현실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선열 위원(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언론계 참석자들은 중재위원이나 사법부가 언론의 취재시스템 등 현실에 대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하며, 언론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몇몇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었다.

언론계 참석자들은 사법부가 언론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불신하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며 법원의 엄격한 상당성 기준은 취재보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운 위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침해의 즉각성, 광범위성, 치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10건의 공공성 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보도에 있어 “단정적인 표현의 금지, 사실확인과 반대 의견 수렴, 익명보도의 원칙”을 제시했다.

간편한 인터넷 홈페이지 세팅 서비스

지난 9월, 새롭게 개편된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선을 보였다.

1999년 12월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한 부분적인 개편만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의 텍스트 위주 내용에 그래픽과 동영상 이미지를 보완하고, 전체적인 홈페이지 디자인과 색상 등을 대폭 변경하였

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재신청 상담을 하고 있는 'On-line 상담실'의 경우, 반복적인 질의응답 내용이 빈번하여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를 신설,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불편을 해소시키고, 'Site map'을 신설하여 홈페이지 검색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사무처 직원 전체연수교육 실시

위원회는 직원의 심신단련과 연대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무주리조트에서 직원집체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28일에는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 후보이자 준 인간문화재인 조통달 명창을 초청하여 "판소리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으며, 조통달 선생의

단가(본격적인 판소리 창을 하기에 앞서 부르는 짧은 노래)와 판소리 한 토막을 직접 듣기도 했다.

이어 축구, 발야구 등의 체육활동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었다.

29일에는 수려한 주변 경치로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32경으로 꼽히는 백련사까지 약 6km에 이르는 덕유산 산행을 하였다.

2001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사무처는 지난 7월 20일 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및 회계규칙 제40조에 의거, '200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건웅(서울제4중재부), 이영조(전북중재부)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위원회 사무처가 집행한 운영

경비, 사업비, 자본예산의 예산집행결과 자료 및 제반 증빙서류에 대해 2001년도 예산서 및 회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실행예산 모두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물품 및 사무실 예치보증금 등의 자산이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생 전문분야실무수습 실시

위원회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제31기 사법연수원생 2명을 상대로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습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외부 전문기관에 파견, 현장에서 법률관련

실무를 수습케 하기 위해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서, 연수생들은 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 담당 업무와 중재심리를 참관하고, 언론피해구제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

경남지역 언론사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박영식 위원장은 지난 9월 7일 창원에서 경남중재부 중재위원과 함께 경남지역 언론사 대표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적극적인 언론피해구제에 대해 논의했다.

- 강준만, 『세계의 대중매체』, 1~3, 인물과사상사, 2001.
- 강진홍, 『한국저널리즘의 쟁점』, 법문사, 2001.
- 메르텐 외, 박준서 외 편, 『미디어의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방정배 외 편역, 『독일언론학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비올라 폴켄베르크, 이현표 역, 『인터뷰이를 위한 인터뷰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유일상, 『언론정보윤리론』, 아침, 2001.
- 언론자유위원회,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중앙M&B, 2001.
- 크리스티안 볼커, 이도경 역, 『미디어에서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한국기자협회 편, 『신문편집』, 한국편집기자협회, 2001.
- 한국언론재단, 『세계언론법제동향』, 2001.
- 구자호, “신문사건의 신뢰성”, 한국편집기자협회 주최, 제38차 전국 일간신문 편집기자 정기세미나, 2001. 7. 13.
- 김관규, “일본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방송21』, 2001년 7월호.
- 김남석, “출입기자단·기자실제도의 형성과정과 현황”, 『관훈저널』, 2001년 여름.
- 김대호, “통합방송법에 나타난 위성방송 정책의 마비점과 개선방안”, 〈위성방송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 여의도클럽 주최 토론회, 2001. 7. 13~7. 14.
- 김덕모, “전문기자제 도입 현황과 평가”,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 김우근, “외국의 취재시스템 - 일본 ‘기자클럽’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2001년 여름.
- 김서중, “신문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들”, 화해와 전진 포럼 제4차 토론회 - 정기간행물법개정에 관한 토론회, 2001. 7. 19.
- 김선남, “스포츠 신문의 선정성”, 『신문과 방송』, 2001년 6월호.
- 김우룡, “디지털 시대의 방송산업, 그 현황과 문제점”, 〈디지털 방송과 법-인터넷 방송의 법적, 정책적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주최 심포지움, 2001. 6. 30.
- 김용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광고 규제”, 『방송21』, 2001년 7월호.
- 김유정, “온라인 저널리즘, 그 지평과 현실”, 〈인터넷 시대, 미디어와 시민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2001. 6. 28.
- 김은미, “외국의 공공채널 운용사례”, 『방송21』, 2001년 6월호.
- 김재협, “망각권은 인정될 수 있는가”, 『신문과 방송』, 2001년 6월호.
- 김재협, “기업보도 어디까지 가능한가”, 『신문과 방송』, 2001년 7월호.
- 김주연, “기자단,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관훈저널』, 2001년 여름.
- 김창룡, “기자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관훈저널』, 2001년 여름.
- 김택수, “기자실의 배타적 사용은 위험인가”, 『관훈저널』, 2001년 여름.
- 류한호, “다매체경쟁시대 매체간 위상정립방안”, 방송제도·산업·기술분야의 정책과제 초안에 대한 토론회, 2001. 7. 11~7. 13.
- 문중대, “한국 언론의 정정기사 보도현황 분석”,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 박준순, “방송통신융합시대 규제기구 정비방안”, 방송제도·산업·기술분야의 정책과제 초안에 대한 토론회, 2001. 7. 11~7. 13.
- 방정배, “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 - 언론의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한반도재단주최토론회, 2001. 7. 19.
- 연민호, “신문의 외신보도 오역과 왜곡보도”, 『신문과 방송』, 2001년 7월호.
- 연상운, “신문시장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 방향”,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신문시장의 제도적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2001. 7. 20.
- 왕상한, “디지털 방송과 방송법”, 〈디지털 방송과 법-인터넷 방송의 법적, 정책적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주최 심포지움, 2001. 6. 30.
- 우현석, “신문사진 편집의 기능적 문제들”, 한국편집기

- 자협회 주최 제38차 전국 일간신문 편집기자 정기세미나, 2001. 7. 13.
- 유의선, "의무전송채널 운영에 관한 법적 해석", <디지털 방송과 법-인터넷 방송의 법적, 정책적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주최 심포지움, 2001. 6. 30.
- 이광범,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 이동근, "언론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신뢰도",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 이민규, "기획·탐사보도의 현황과 전망", <기획·탐사보도(Feature Photo) 어떻게 할 것인가>, 제8회 보도사진 국제학술포럼, 2001. 6. 21.~6. 23.
- 이상희, "정부의 인터넷 규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1. 6. 26.
- 이은호, "공공채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방송21』, 2001년 6월호.
- 이재진,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와 쟁점과 현안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법적인 책임을 중심으로", <인터넷 시대, 미디어와 시민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2001. 6. 28.
- 이재현,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1. 6. 26.
- 이해원,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 <디지털 방송과 법-인터넷 방송의 법적, 정책적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주최 심포지움, 2001. 6. 30.
- 이효성, "미국언론 들여다보기 6 / 온라인 저널리즘 현실과 전망", 『신문과 방송』, 2001년 6월호.
- 이훈규, "코디네이터로서의 편집기자와 사진기자", 한국편집기자협회 주최 제38차 전국 일간신문 편집기자 정기세미나, 2001. 7. 13.
- 임용규, "디지털 방송과 형사·민사 책임-언론의 자유, 음란성 기준 포함-", <디지털 방송과 법-인터넷 방송의 법적, 정책적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주최 심포지움, 2001. 6. 30.
- 전영완, "신문사진을 읽는다", 한국편집기자협회 주최 제38차 전국 일간신문 편집기자 정기세미나, 2001. 7. 13.
- 정상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한국방송학회·지역방송연구회 세미나, 2001. 6. 22.
- 정연규,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실태 및 정상화 방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신문시장의 제도적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2001. 7. 20.
- 차형근, "헌행법 체포현장 보도와 초상권 침해 논란",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 최영목,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한국방송학회·지역방송연구회 세미나, 2001. 6. 22.
- 최영훈, "언론 상대의 명예훼손소송 추세와 대책", 『관훈저널』, 2001년 여름.
- 함석천,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 허현주, "기획사진 보도에 관한 소고", <기획·탐사보도(Feature Photo) 어떻게 할 것인가>, 제8회 보도사진 국제학술포럼, 2001. 6. 21.~6. 23.
- 홍성태, "인터넷 내용등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1. 6. 26.
- 황성기, "인터넷 자율규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1. 6. 26.
- 황용석, "온라인을 이용한 언론매체의 새로운 역할 모색", <디지털시대의 지역언론 활로>,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주최 제12회 기자포럼, 2001. 6. 29.
- 황치성, "선진국의 신문판매 법제와 역사적 배경", 『신문과 방송』, 2001년 6월호.
- 황치성, "신문기업 투명성에 대한 유럽의 법제", 『신문과 방송』, 2001년 7월호. □

On-Line 중재상담실



모 스포츠신문에 제 얼굴이 실려

지난 7월 27일, 코리아○○○이라는 인터넷 성인방송 녹화 도중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라의 몸과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포착되어 일간지인 모 스포츠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촬영되었으며 저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하게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진이 사전 허락 없이 게재되어 초상권에 침해된 경우라면,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 일간지의 편파보도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모 지방 일간지 기사에 "콜밴" 불법영업 극성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시 뒷자석에 탄 승객들은 보험처리가 안돼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콜밴은 화물용 차량으로 등록돼 승객을 1명만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승차할 경우 버스나 택시 등 일반 대중교통수단과는 달리 대인보험 혜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승객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

다. 그래서 항의 끝에 7월 25일자에 정정보도를 하였지만 그 5일 동안에 신문 보도내용이 퍼져서 손님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지방 언론계를 대표하는 신문사에서 정확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저의 업주들을 궁지에 몰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업주들은 ○○일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분위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일보가 이미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였다면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동안의 피해를 금전적인 형태로 보상할가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허위 보도에 대하여 개인도 중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해병대를 제대한 지 10여 년이 지난 예비역 해병대 병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모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병영 내 구타사건에 대하여 방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내용 중 구타사건이 일어난 곳은 해병부대 내에 위치한 해군의 파견부대인 항공대에서 일어난 일로 해당 군인들은 해군장교였

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를 해병장교라고 방송하여 모군을 사랑하는 80만 해병대예비역들과 현역 해병대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해병대 출신인 개인의 자격으로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 보도에서 문외하신 분의 개인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중재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보도로 인해 해병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전체 해병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장면을 보도

모 방송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이와 무관한 장면을 방영하였습니다. 작년말 한 케이 불법방송에서 외국인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하는데 캐나다 사람으로 합법적으로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없나 해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선생님 두 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미망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 회사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자상파 방송이 불법체류자들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 모자이크 처리하여 저와 선생님들을 불법 체류자 및 범법자로 취급하여 방영하였습니다.

회사가 상주해 있는 건물임구가 나오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옆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라 표현은 하지 않고 외국인이 와서 세금 한 푼 안내고 돈을 가지고 간다는 식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남게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건물이나 직원들의 초상이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만일 회사 건물이나 직원들의 초상이 방영된 부분과 해당 보도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을 저희 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비리 고발 기사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얼마 전 몇몇 목사님께 반대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물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한 자료를 준비해 ○○이라는 잡지에 고발했는데요. 그런 경우 그 잡지 사람들이 현장 답사를 나와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잡지에 게재해야 하지 않나요? 그 잡지사 기자는 그들의 자료만 보고 이단이라고 단정짓고 겉표지에 대문짝만하게 선전하더라고요.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보가 들어 왔을 때 한쪽 얘기만 듣고 잡지에 실을 수 있는건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지 않나요? 부당한 그들의 행동에 저희 교인 몇명이 그 잡지 기사판에 해명하라고 글 올렸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없이 저희 교인들의 의견만 삭제하였습니다.

 잡지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일으켰다면 피해 당사자인 교회 혹은 목사님의 이름으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론보도 청구는 법원에 직접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셔야 합니다. 중재신청서, 고찰차 등은 저희 홈페이지 [중재신청 관련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02-732-6031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및 기사화와 관련하여

방송국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찾아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양 우기면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을 경우 인터뷰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만일 거부를 하였는데도 목소리와 사무실 집기등이 방영되었을 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요.

끝으로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및 범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지를 정확하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재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취재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며, 원하지 않는 취재의 결과로 보도가 되어 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법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언론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보도를 할 수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 방송된 호주유학생 실태를 다룬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제 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호주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인터뷰 요청을 하자 동생이 거절하니까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까지 시켜 준다는 약속 하에 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생은 지금 신문에 위협을 느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PD에게 전화해 알아봤더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당시 동생에게 인터뷰 요청한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와 관련 이렇다 저렇다 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만약에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면 될거 아니냐며 큰소리만 칩니다.



보도된 인터뷰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동생분의 명의로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초상이나 음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보도된 사실 자체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저희 중재위원회가 직접 도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사전고지에 대한 문의

어떤 사건에 대해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기사화 되어 사무실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기사화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나눈 이야기를 녹취하고 있다던가 나중에 기사화할 예정이라든가 하는 인터뷰 사전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터뷰 사전고지와 관련된 언론 관련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언론관계 특별법 조항은 없습니다만, 취재원이 승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하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례(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 1. 12. 선고 93가합3572판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된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기간에 대하여

지난 3월초, 모 일간지에 저희 회사가 K사의 광고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저희 회사가 K사의 광고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K사가 광고를 조작하여 저희 회사를 모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모 신문사를 방문하여 K사가 광고를 조작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정정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K사에 확인한 후 정정기사를 보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K사는 지금까지 광

고조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내용증명 1회 발송(3월 22일), R 신문사를 2회 방문, 전화통화 10여 차례 등을 통해 정정기사 보도를 촉구하였으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고, 방문이나 전화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곧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사가 기사보도 사실을 안 것은 물론 1개월 이상 지났지만, 그동안 저희가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신문사가 정정기사의 보도를 약속하고서도 그 실행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회사가 중재신청을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보면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를 하신 경우에는 언론사가 9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났다면 언론사와의 협의가 불성립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3월 22일자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하셨는데 4월 1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4월 15일까지는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문 4컷만화에 대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이 구속된 이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4일 모 경제신문에 김영길 총장을 유죄로 단정하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는 4컷 만화가 실렸습니다.

4컷 만화에 대해서도 일반 보도 내용과 같이 사과문이나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만화나 만평의 경우에도 그 내용중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화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한동대학교 총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문의하신 분께서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한 기사를 고발합니다

사생활을 침해받은 30대 주부입니다. 비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모 기간지가 아무런 양해도 없이 기사화하였습니다. 여성전용사이트의 은밀한 얘기들이란 제목으로 남편과의 성에 대해 고민을 토로한 저의 글이 아이디어와 함께 한자도 틀림없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당황스러워서 해당 주간지에 전화를 수없이 하여 해당 기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기사 작성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저보고 왜 화가 났는지를 되물어기가 막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어야 할 기자가 남의 글이나 훔쳐서 은밀하니 어쩌니 하는 따위의 사생활 침해나 하면서 여자 사생활 엿보기식의 글을 쓰다니,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라도 사생활은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긴 하나,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되어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원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실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 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소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㉓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98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㉕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4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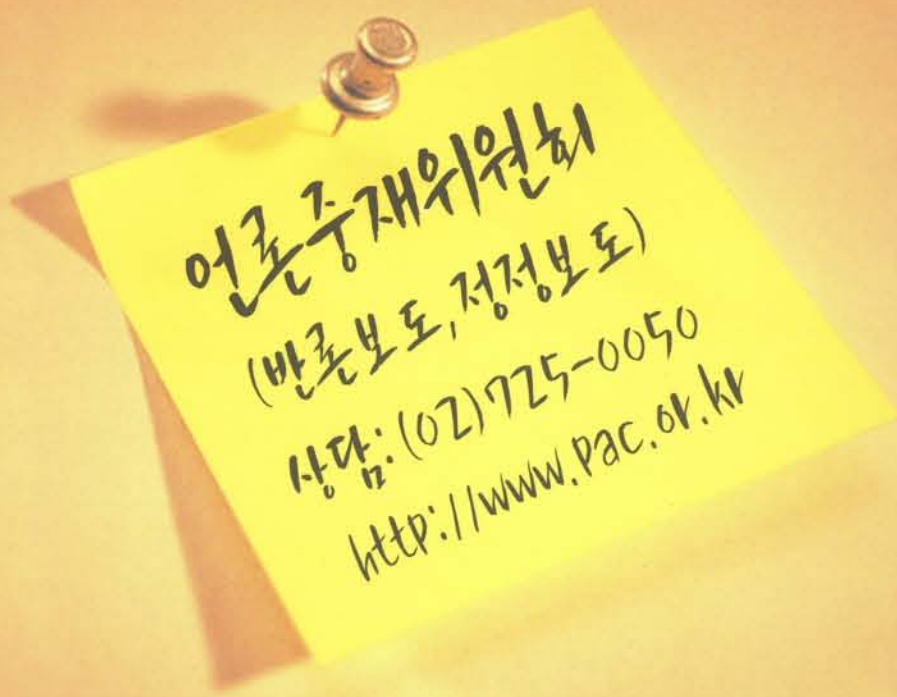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